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33호

2025. 1. 2.(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5-13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

[행정예고]

제2025-1호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안 행정예고(미래한강본부) ····· 10

◈ 고 시

제2024-65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15

제202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 17

제2025-2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18

제2025-3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21

제2025-4호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41

제2025-5호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45

제2025-6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 52

제2025-7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 ····· 55

제2025-12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업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5

제2025-13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업 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특별계획구역 ③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4

제2025-14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102

제2025-15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137

제2025-16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154

◈ 공 고

제2024-35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 161
제2024-3570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169
제2025-1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170
제2025-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 172
제2025-4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173
제2025-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175
제2025-9호 정비사업 사업성 보정계수 산출을 위한 2024년 서울특별시 평균 공시지가 (재건축/재개발) 공고 ····· 176
제2025-14호 시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철거) 영장 공시송달 공고 ····· 177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 례]

제940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9
제9409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1

◈ 구 고 시

제2024-4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광진)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광진구) ····· 184
제2025-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취소 고시(도봉구) ····· 185
제202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노원구) ····· 188
제2025-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 195
제2025-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송파구) ····· 198

◈ 구 공 고

제2025-1호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광진구) ····· 200
제2025-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중랑구) ····· 203
제2024-2537호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강서구) ····· 204
제2025-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구로구) ····· 222

◈ 사업소고시

제2024-40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27

제2024-4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28
제2024-4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28
제2024-40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29
제2024-4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0
제2024-4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1
제2024-4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1
제2024-4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2
제2024-4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2
제2024-4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3
제2024-4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3
제2024-4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4
제2024-4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4
제2024-4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5
제2024-4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5
제2024-4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6
제2024-4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236

◈ 기 타

제2024-57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237
제2024-57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238
제2024-57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246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3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탄천물재생센터 테니스장 조명사용료 징수 기준을 신설하고,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라 편익시설 감면지역 명칭을 변경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탄천물재생센터 테니스장 조명사용료(5,000원/1시간) 부과 규칙 신설
나.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라 탄천물재생센터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지역 명칭을 “일원2동”에서 “개포3동”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재생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시설과(전화: 02-2133-3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1) 이 메 일: co78@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재생시설과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제2호 중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 사용시간, 사용료(제2조1항 관련)

1. 서남물재생시설의 편익시설 중 테니스장, 탁구장 및 파크골프장

구 분				기준 및 사용료(원)	비 고
테니스장	개 인 사용료	1면 1시간 기준	평일	5,000원	
			토,일,공휴	6,500원	
	전용 사용료	1면 1일 8시간기준	평일	40,000원	
			토,일,공휴	52,000원	
	조 명 사용료	1시간 기준		5,000원	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
탁구장		월정기회원 (1개월, 1일 2시간 기준)		20,000원	
		일일이용자 (1일, 1면 2시간 기준)		3,000원	
사물함 임대료		원/월		4,000원	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
파크골프장		사용료 (9홀 기준)	월	휴 무	매 주
			화~일	3,000원	평일/휴일 동일적용
		골프용품대여료		1,000원	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

2. 탄천물재생시설의 편익시설 중 마루공원 주차장, 테니스장

구 분			기준 및 사용료	비 고
주차장	1회주차 (10분당)		200원	
	월정기권 (비주거자)	전일	70,000원	
		주간	50,000원	
		야간	20,000원	
테니스장	조명사용료	1시간 기준	5,000원	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사용료 징수 등) 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 중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제2조(사용료 징수 등) ① ---------- 별표 1----------.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5조의2제3항 및 조례 별표3 에 따라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사용료 감면) ① ---------- 별표 3---------- 별표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세부 운영지침) 편익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세부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장---------.
[별표 1]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 사용시간, 사용료(제2조1항 관련)	[별표 1]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 사용시간, 사용료(제2조1항 관련)

2. 탄천물재생시설의 편익시설 중 마루공원 주차장

구 분			기준 및 사용료	비 고
사용료	1회주차 (10분당)		200원	
	월정기권 (비주거자)	전일	70,000원	
		주간	50,000원	
		야간	20,000원	
<신 설>				

[별표 2]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지역(제3조1항 관련)

2. 탄천물재생시설의 편익시설 감면지역

: 일원1동, 일원2동

2. 탄천물재생시설의 편익시설 중 마루공원 주차장, 테니스장

구 분			기준 및 사용료	비 고
주차장	1회주차 (10분당)		200원	
	월정기권 (비주거자)	전일	70,000원	
		주간	50,000원	
		야간	20,000원	
테니스장	조명사용료	1시간 기준	5,000원	사용료 감면 적용 제외

[별표 2]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지역(제3조1항 관련)

2. 탄천물재생시설의 편익시설 감면지역

: 일원1동, 개포3동

[행정예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5-1호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을 변경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개정이유
- 한강버스 선착장 조성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규제사항으로, 서울시민의 보행권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한강본류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지정이 필요함.
- 다수 시민 이용시설인 수상시설물(유선상의 카페, 편의점, 오리배시설물 등) 분포지역 인근 낚싯대 설치 및 미끼 투척등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함.
- 보행로 인접 낚시구역으로 시민과 마찰, 위험제기 민원 다수발생구역, 호안 급경사 등의 위험지역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제한 시기 조정

나.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금지구역 확대

- 조정내역 : 낚시금지구역 구간 연장 및 신규 지정(총 9개 구역 3,820m)

연번	구분	구역	
		변경전	변경후
1	뚝섬 2지역	청담대교 북단 교량 ~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m ~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2	이촌 1지역	중랑천 합류부 ~ 동호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중랑천 합류부 ~ 동호대교 북단 하류 3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3	망원 2지역	망원동 성산대교 북단 교량 ~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성산대교 북단 상류 600m ~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4	잠실 지역	잠실5동 잠실수중보 ~ 잠실수중보 하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잠실5동 잠실수중보 ~ 잠실수중보 하류 1,3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연 번	구 분	구 역	
		변 경 전	변 경 후
5	흑 석 지 역	한강대교 남단 상류 760m(원불교 회관 앞) ~ 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한강대교 남단 상류 1,360m(한강현대아파트 114동 앞) ~ 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6	여의도 1지역	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 ~ 서강대교 남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 ~ 서강대교 남단 하류 37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7	양 화 2지역	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550m(양화선착장) ~ 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600m ~ 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8	망 원 3지역	신 규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 ~ 당산철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9	난 지 3지역	신 규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 ~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9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전화: 02-3780-0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jmj9999@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1. 규제사무명</td><td>한강본류 내수면 유어 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 고시</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td><td></td><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운영부장 김세정, 환경수질과장 권형택, 담당 정명준</td></tr>
<tr><td>4. 근거법령명등</td><td colspan="5">·내수면어업법 제18조
·하천법 제46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td><td colspan="2">관 련 규제수</td><td colspan="2">2</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 관계자</td><td colspan="9">·피규제집단 : 낚시행위자
·이해관계자 : 한강 이용 시민</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고시일 ~ 2029. 12. 31
※ 2029. 12. 31 이후 금지구역 재조정</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제한 시기 조정
– 변경전 : 2020. 1. 1 ~ 2024. 12. 31
– 변경후 : 고시일 ~ 2029. 12. 31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금지구역 확대
– 조정내역 : 낚시금지구역 구간 연장 및 신규 지정</td></tr>
</table>

연번	구분	구역	
		변경전	변경후
1	뚝섬 2지역	청담대교 북단 교량 ~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m ~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2	이촌 1지역	중랑천 합류부 ~ 동호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중랑천 합류부 ~ 동호대교 북단 하류 3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3	망원 2지역	망원동 성산대교 북단 교량 ~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성산대교 북단 상류 600m ~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4	잠실 지역	잠실5동 잠실수중보 ~ 잠실수중보 하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잠실5동 잠실수중보 ~ 잠실수중보 하류 1,3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5	흑석 지역	한강대교 남단 상류 760m(원불교 회관 앞) ~ 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한강대교 남단 상류 1,360m(한강현대아파트 114동 앞) ~ 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6	여의도 1지역	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 ~ 서강대교 남단 교량 사이의한강 호안 및 내수면	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 ~ 서강대교 남단 하류 370m 사이의한강 호안 및 내수면
7	양화 2지역	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550m(양화선착장) ~ 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600m ~ 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8	망원 3지역	신 규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 ~ 당산철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9	난지 3지역	신 규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 ~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9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한강버스 선착장 조성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규제사항으로, 서울시민의 보행권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한강본류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지정이 필요함.

○ 다수 시민 이용시설인 수상시설물(유선상의 카페,편의점,오리배시설물 등) 분포지역 인근 낚싯대 설치 및 미끼 투척등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함.

○ 보행로 인접 낚시구역으로 시민과 마찰, 위험제기 민원 다수발생구역, 호안 급경사 등의 위험지역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한강 낚시 이용시민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관부서 및 단체, 한강시민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안)을 마련하였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대체수단 및 기존 규제수단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유어행위 금지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에게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 일반 시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산책로확보를 위한 규제사항으로, 서울시민의 보행권 확보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상시설물(유선상의 카페, 편의점 등) 인근 낚시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제사항으로, 수상시설물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강 낚시위험지역에서의 낚시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사항으로, 낚시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최소 50만원의 과태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강 이용시민의 보행 안전과 낚시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 · 절차의 명확성 등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제한을 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유어행위 제한)에 의하면 시장은 한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와 한강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로,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금지구역을 정하는 경우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하천법 제46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등에 따르면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낚시통제구역 등에 대해 규제할 수 있음.

○ 또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기한 내에서 시행할 예정임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기존 미래한강본부 조직·인력을 통해 대체 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금지행위의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민원을 처리할 예정임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5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강남수도사업소 별관 증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02-3146-471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459-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사업의 명칭 : 강남수도사업소 별관 증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공공청사

(단위 : ㎡)

구 분		본 관 (변경없음)	별 관 (변경전)	별 관 (변경후)	합 계 (변경전)	합 계 (변경후)	비 고
연면적	지상	2,175.57	567.00	862.42	2,742.57	3,037.99	별관동 2F→3F 수직증축 (295.42 증가)
	지하	567.90	51.19	51.19	619.09	619.09	
	계	2,743.47	618.19	913.61	3,361.66	3,657.0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강남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459-4)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5. 3. ~ 2024. 1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강남구 도곡동	459-4	대	3,718.4		강남수도사업소	강남구 양재천로 199				

사. 지형도면(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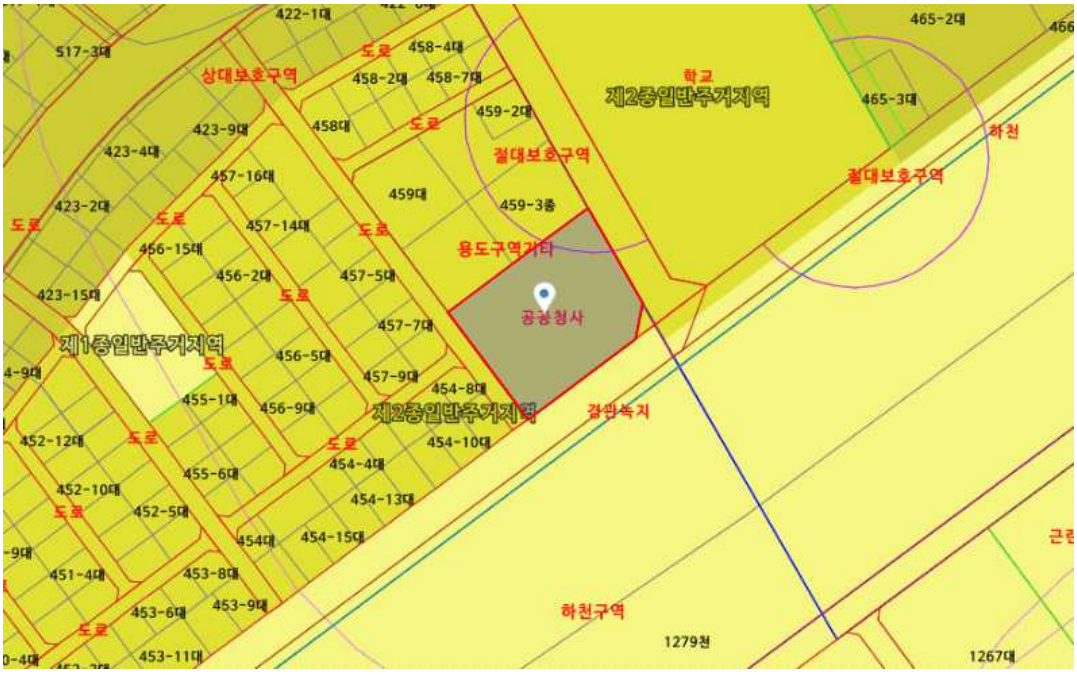

※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하천의 명칭 : 청계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가철도공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점용의 목적
   - 목　　적 : 교각 지지물(신답철교) 지지물 개량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청계천(성동구 용답동 173-1)
   - 면　　적 : 30.0㎡
5. 점용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당초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6. 최초허가 연월일 : 2024. 7. 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구로구 궁동 197-1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구로구	궁동 197-1 일대	14,423㎡	2024. 12. 23.	모아타운 주민제안(안)

2. 권리산정기준일: 2024. 12. 23.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

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1. 구로구 궁동 197-1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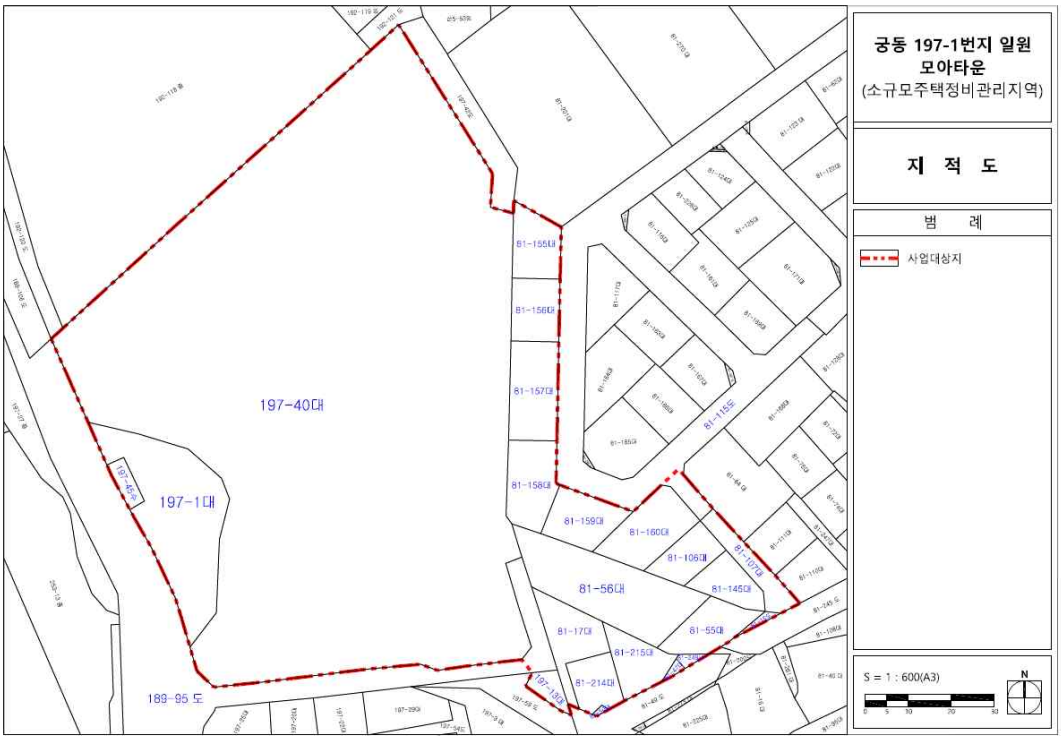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 일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심 우 섭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 외 21필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2,115.00 ㎡	층 수	지하2층, 지상11층
건축면적(㎡)	1,045.84 ㎡	건폐율(%)	49.45 %
연면적(㎡)	8,847.23 ㎡	용적률(%)	293.94 %
주 용 도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주차대수	43대
동 수	1동	세 대 수	78세대

4. 사업기간 : 2019. 10. ~ 2027. 08.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48,255.2	-	548,255.2	100.0	
주거지역	소계		330,060.4	-	330,060.4	60.2	
	제1종일반주거지역		6,248.0	감)23	6,225.0	1.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5,379.1	감)2,092	13,287.1	2.4	
		12층이하	58,827.4	-	58,827.4	10.7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329.5	증)2,115	137,444.5	25.1	
	준주거지역		114,276.4	-	114,276.4	20.9	
상업지역			218,194.8	-	218,194.8	39.8	

※ 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6호(2023.5.25) 신촌지역 마포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대상지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계	2,115	-	2,11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3	감)23	-	1.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92	감)2,092	-	98.9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2,115	2,115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대현동 142-4번지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115	○공공청사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복합화 사업을 통해 도심재생 및 주거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광장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①	신촌역앞 교통광장	교통광장	신촌역전	5,900	감)1,565	4,335	(36.12.26)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신촌역앞 교통광장	○면적변경 - 5,900㎡ → 4,335㎡(감:1,565㎡)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에 따른 교통광장 일부구간 해제

(2) 공 원 :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공시설 : 변경없음

라.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 조서

○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고
가 구	1	범위변경 및 면적증가
	2~97	변경없음

○ 가구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1	○면적증가 - 7,578㎡ → 9,145㎡(증:1,567㎡)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을 위해 교통광장 해제된 부분 및 기정 가구1에서 누락된 대현동 143-6번지 편입

나.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기정		변경		비고
구분	최대개발규모	구분	최대개발규모	
이화여대 일대	600㎡	이화여대 일대	600㎡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해 해제

○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최대개발규모 해제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 최대개발규모 해제

다. 대지의 분할 : 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획지면적(㎡)	위치	비고
1	2,115	신촌동 74-22, 대현동 121-1, 121-7, 121-13, 121-14, 121-15, 121-16, 121-32, 142-4, 142-11, 142-12, 142-13, 142-14, 142-15, 142-19, 142-20, 142-22, 142-29, 143-7, 143-11, 143-12, 143-6	-

○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결정내용	결정사유서
○가구 1번 내 획지 신설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 면적 2,115㎡를 단일 획지로 계획

(2) 필지 결정(변경) 조서

○ 필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필지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1	7,578	9,145	대현동34-75	대현동34-75	18	18	○공동개발지정 : 33-8⊕34-75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3-8	대현동33-8	188	188			
				대현동33-11	대현동33-11	231	231	○공동개발권장 : 33-13⊖33-11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3-13	대현동33-13	86	86			
				대현동33-14	대현동33-14	73	73	○공동개발지정 : 33-14⊕33-16⊕33-17 ⊕34-62⊕34-84 ○공동개발권장 : (33-14⊕33-16⊕33-17 ⊕34-62⊕34-84) ⊖33-15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3-15	대현동33-15	69	69			변경없음 (맞벽건축)
				대현동33-17	대현동33-17	73	73			
				대현동33-16	대현동33-16	7	7			변경없음
				대현동34-62	대현동34-62	7	7			
				대현동34-84	대현동34-84	102	102			
				대현동34-27	대현동34-27	96	96	○공동개발지정 : 34-28⊕34-71 ○공동개발권장 : (34-28⊕34-71)⊖34-27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28	대현동34-28	17	17			
				대현동34-71	대현동34-71	53	53			
				대현동34-29	대현동34-29	99	99	○공동개발권장 : 34-30⊖34-29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30	대현동34-30	76	76			
				대현동34-53	대현동34-53	79	79	○공동개발권장 : 34-54⊖34-53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54	대현동34-54	89	89			
				대현동34-31	대현동34-31	99	99	○공동개발권장 : 34-32⊖34-31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32	대현동34-32	99	99			
				대현동34-52	대현동34-52	83	83	○공동개발권장 : 34-49⊖34-52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49	대현동34-49	86	86			
				대현동34-41	대현동34-41	96	96	○공동개발권장 : 34-33⊖34-41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33	대현동34-33	122	122			
				대현동34-24	대현동34-24	218	218	○공동개발권장 : 34-25⊖34-24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25	대현동34-25	106	106			
				대현동138-11	대현동138-11	93	93	○공동개발권장 : 138-11⊖142-17	○공동개발권장 : 138-11⊖142-17⊖ 142-32	변 경
				대현동142-17	대현동142-17	139	139			
				-	대현동142-32	-	47			
				대현동142-8	대현동142-8	122	122	○공동개발권장 : 142-9⊖142-8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142-9	대현동142-9	96	96			
				-	대현동142-10	-	89	○공동개발지정 : 142-23⊕142-27⊕ 142-28⊕	○공동개발지정 : 142-10⊕142-23⊕ 142-26⊕142-27 ⊕142-28 ○공동개발권장 : 142-16⊖(142-10⊕ 142-23⊕142-26 ⊕142-27⊕142-28)	변 경
				-	대현동142-16	-	26			
				대현동142-23	대현동142-23	91	91			
				-	대현동142-26	-	15			
				대현동142-27	대현동142-27	16	16			
				대현동142-28	대현동142-28	14	14			
				대현동34-90	대현동34-90	13	13	○공동개발지정 : 34-90⊕34-56⊕34-23	좌동	변경없음
				대현동34-56	대현동34-56	152	152			
				대현동34-23	대현동34-23	128	128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필 지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	신촌동74-22	-	76	○공동개발지정 : 142-4⊕142-10⊕ 142-11⊕142-16⊕ 142-19⊕142-26⊕ 142-32 ○공동개발권장 : 142-20⊖(142-4⊕ 142-10⊕142-11⊕ 142-16⊕142-19⊕ 142-26⊕142-32) ⊖142-22	-	변 경
				-	대현동121-1	-	12.9			
				-	대현동121-7	-	657.8			
				-	대현동121-13	-	112.4			
				-	대현동121-14	-	104.8			
				-	대현동121-15	-	55.9			
				-	대현동121-16	-	72.1			
				-	대현동121-32		27.1			
				대현동142-4	대현동142-4	426	426			
				대현동142-11	대현동142-11	50	50			
				-	대현동142-12	-	10			
				-	대현동142-13	-	106			
				-	대현동142-14	-	7			
				-	대현동142-15	-	106			
				대현동142-19	대현동142-19	13	13			
				대현동142-20	대현동142-20	26	26			
				대현동142-22	대현동142-22	33	33			
				-	대현동142-29	-	105			
				-	대현동143-6	-	2			
				-	대현동143-7	-	86			
				-	대현동143-11	-	18			
				-	대현동143-12	-	8			
				대현동142-10	-	89	-			
				대현동142-26	-	15	-			
				대현동142-16	-	26	-			
				대현동142-32	-	47	-			
				대현동33-18	대현동33-18	3	3	-	-	변경없음
				대현동34-15	대현동34-15	688	688	-	-	변경없음
				대현동34-19	대현동34-19	304	304	-	-	변경없음
				대현동34-21	대현동34-21	145	145	-	-	변경없음
				대현동34-22	대현동34-22	143	143	-	-	변경없음
				대현동34-34	대현동34-34	218	218	-	-	변경없음
				대현동34-35	대현동34-35	202	202	-	-	변경없음
				대현동34-36	대현동34-36	149	149	-	-	변경없음
				대현동34-37	대현동34-37	169	169	-	-	변경없음
				대현동34-40	대현동34-40	149	149	-	-	변경없음
				대현동34-44	대현동34-44	99	99	-	-	변경없음
				대현동34-45	대현동34-45	66	66	-	-	변경없음
				대현동34-46	대현동34-46	79	79	-	-	변경없음
				대현동34-47	대현동34-47	79	79	-	-	변경없음
				대현동34-48	대현동34-48	119	119	-	-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필 지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대현동34-50	대현동34-50	122	122	-	-	변경없음
				대현동34-51	대현동34-51	159	159	-	-	변경없음
				대현동34-55	대현동34-55	142	142	-	-	변경없음
				대현동34-57	대현동34-57	99	99	-	-	변경없음
				대현동34-65	대현동34-65	22	22	-	-	변경없음
				대현동34-76	대현동34-76	50	50	-	-	변경없음
				대현동136-10	대현동136-10	109	109	-	-	변경없음
				대현동136-11	대현동136-11	142	142	-	-	변경없음
				대현동 137-2	대현동137-2	142	142	-	-	변경없음
				대현동138-10	대현동138-10	10	10	-	-	변경없음
				대현동142-25	대현동142-25	108	108	-	-	변경없음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가 포함된 가구1번에 한해서 기재
※ 면적은 공부상(토지대장)면적임
⊕는 공동개발 지정, ⊖는 공동개발 권장임

○ 필지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공동개발 지정 변경 및 권장 변경	○대현동 142-4번지 외 21필지내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된 사항을 금회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을 위해 해제하고 당초 본 복합화 사업대상지와 함께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계획된 인접필지는 과소필지 및 맹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필지와 연결하여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으로 계획함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불허용도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A	전층	○단독주택(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신촌로, 양화로, 연세로, 신촌역로 주변
B	전층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C	전층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이화여대 주변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해 확대 지정
D	전층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이화여대 주변
E	전층	○정신병원, 요양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연세대 주변
F	전층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연세대 주변
G	전층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조업소, 교정 및 군사시설	신촌상가 서측 준주거 지역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C : 불허용도 지정범위 확대	○양호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대상지를 추가하여 불허용도 지정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함

(2) 건축물의 권장용도(변경)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기 정	변 경	
A	○A-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학원 ○A-2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A-3 : 관광숙박시설	좌 동	연세대 앞 대학문화권역
B	○B-1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일반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사진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일반업무시설,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B-2 :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B-3 : 웨딩관련 판매시설	좌 동	이화여대 앞 관광·쇼핑권역
C	○C-1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좌 동	서강대 앞 (관광)·대학 지원권역
D	○D-1 : 관광숙박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	좌 동	간선변 상업·업무권역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함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B-1 : 권장용도 지정범위 변경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을 위한 지정용도 계획에 따른 지정범위 변경

(3)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변경)

○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분류)	지정용도		비고
	기정	변경	
1층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판매시설 중 상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판매시설 중 상점	대학문화벨트 연세로변,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주변
전층 (B)	-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함

○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지정용도 신설	○공공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 지정용도 계획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1)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 이하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함

○ 건폐율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건폐율 변경 : 60%이하 → 50%이하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건폐율 변경

(2)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용 적 률			
		기 준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허 용	기 정	허 용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	250%이하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200%이하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함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 기준 없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기준 및 허용용적률 20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이하	○공익목적의 사업으로 공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적용

(3) 건축물의 높이

○ 최고높이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적 용 지 역	높 이 계 획	적 용 지 역	높 이 계 획	
이화여대 주변, 연세로 서측 이면부 신촌로 이면 대현교회 일대, 경의 · 공항선 지상부 공원주변	30m 이하	명물거리 일대, 연세로 북측, 연대 앞 창천교회 서측, 신촌기차역 전면부, 창천 어린이공원 북측,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4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에 한함

○ 최고높이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적용지역 변경 및 최고높이계획 변경 - 30m이하 → 40m이하	○공익목적의 사업으로 공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높이 적용

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변경)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변경) 조서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기 정</th><th colspan="2">변 경</th><th rowspan="2">비 고</th></tr>
<tr><th colspan="2">적 용 지 역</th><th>계획내용</th><th colspan="2">적 용 지 역</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11">건 축
한계선</td><td colspan="2">간선도로변</td><td>3~5m</td><td colspan="2">간선도로변</td><td>3~5m</td><td>신촌로 · 양화로 · 신촌역로변</td></tr>
<tr><td colspan="2">경의 · 공항선 지상부 공원주변</td><td>2m</td><td colspan="2">경의 · 공항선 지상부 공원주변</td><td>2m</td><td>공원 경계로부터
10m 이상 이격: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지정</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2">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td><td>2m</td><td></td></tr>
<tr><td rowspan="4">보 행
중 심
가로변</td><td>대지규모 500㎡ 미만</td><td>2m</td><td rowspan="4">보 행
중 심
가로변</td><td>대지규모 500㎡ 미만</td><td>2m</td><td rowspan="4">대학문화벨트,
연세로변
(단, 미관지구는 최소건축한계선을
3m로 지정)</td></tr>
<tr><td>대지규모 500㎡이상
1,000㎡미만</td><td>3m</td><td>대지규모 500㎡이상 1,000㎡미만</td><td>3m</td></tr>
<tr><td>대지규모 1,000㎡ 이상
2,000㎡ 미만</td><td>4m</td><td>대지규모 1,000㎡ 이상 2,000㎡
미만</td><td>4m</td></tr>
<tr><td>대지규모 2,000㎡ 이상</td><td>5m</td><td>대지규모 2,000㎡ 이상</td><td>5m</td></tr>
<tr><td rowspan="3">이 면
도로변</td><td>대지규모 1,000㎡ 미만</td><td>1m</td><td rowspan="3">이 면
도로변</td><td>대지규모 1,000㎡ 미만</td><td>1m</td><td rowspan="3">-</td></tr>
<tr><td>대지규모 1,000㎡ 이상
2,000㎡ 미만</td><td>2m</td><td>대지규모 1,000㎡ 이상 2,000㎡
미만</td><td>2m</td></tr>
<tr><td>대지규모 2,000㎡ 이상</td><td>3m</td><td>대지규모 2,000㎡ 이상</td><td>3m</td></tr>
<tr><td>벽 면
한계선</td><td colspan="2">경의 · 공항선 지상부 공원주변</td><td>2m</td><td colspan="2">경의 · 공항선 지상부 공원주변</td><td>2m</td><td>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 벽면한계선 지정</td></tr>
</table>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건축한계선 적용지역 신설	○개방감 확보 및 일체적인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내 건축한계선 지정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결정(변경) 조서

○건축물의 형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태	탑상형	○간선가각부 및 간선도로변은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탑상형 건축 - 주거용도의 탑상형 건축물은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의 형태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건축(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3호에 해당시 제외)	변경
	저층부 형태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축 건축물의 1층 높이는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투시벽 설치 : 폭 20m 이상 도로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 ○투시형셔터 설치 : 12m 이상 도로변의 1층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 :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단,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 높이의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등으로 차폐	변경없음
건축물 외관		○건축물의 외벽은 원칙적으로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됨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이용 권장 ○1층에 차양시설의 설치 및 창문부착 광고물을 금지	변경없음
		○1층은 소규모 점포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1층 점포의 입면 폭은 9m 이하로 할 것을 권장	변경없음
기타 사항	옥외 광고물	○가로형간판 - 개수 : 1층은 점포당 1개 이하, 2층은 층별 1개 이하로 제한 - 크기 : 가로는 창호폭 100% 이하, 세로는 80㎝ 이하 또는 상·하부 사이높이×3/5 이하, 한 건물 내에서 일치 권장 - 위치 : 해당 점포 상부면의 중심 - 벽면에서 돌출폭 : 최대 30㎝ 이내, 한 건물에서는 옥외 광고물 바탕면의 두께 일치 권장 ○세로형간판 - 개수 : 점포당 1개 - 크기 · 1층 : 가로 돌출폭 이하, 간판면적 0.36㎡ 이하 · 2층이상 : 가로는 돌출폭 이하, 세로는 층높이 이하 - 위치 : 1층은 점포의 정면 좌측 상부, 최고 G.L에서 3m 위치 - 벽면에서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80㎝ 기준선 준수	변경없음
	야간 조명	○투시형벽면 설치시 내·외부 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조성하며, 특히 이면부의 야간경관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변경없음

○ 건축물의 형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건축물의 형태(탑상형) 변경 - 통합공공임대주택 제외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 내 공동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단위세대 규모 및 단위세대당 계획 인구수 등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반영을 위한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계획내용	적용기준	계획내용	적용기준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5m	좌동	좌동	변경없음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4m	좌동	좌동	변경없음
공개공지	공개공지의 위치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보행결절점 및 전면도로 가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지침도 위치 준수	좌동	좌동	변경없음
	공개공지의 조성	○공개공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공개공지는 소공원(쌈지공원)의 형태로 조성토록 권장	-	좌동	좌동	변경없음
통로	보차혼용통로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성 - 통과도로형 : 4m - 막다른 도로형 : 2~6m · 길이 10m 미만 : 2m · 길이 10m 이상 ~ 35m 미만 : 3m · 길이 35m 이상 : 6m (기 조성된 폭원 5m 현황도로 : 5m)	폭원 2~6m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성 - 통과도로형 : 4m - 막다른 도로형 : 2~6m · 길이 10m 미만 : 2m · 길이 10m 이상 ~ 35m 미만 : 3m · 길이 35m 이상 : 6m (기 조성된 폭원 5m 현황도로 : 5m) -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 : 4m	폭원 2~6m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획 내 용	적용 기준	계 획 내 용	적용 기준	
	공공 보행 통로	○보행자의 편의성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보행통로 조성 - 폭원 : 3~6m	폭원 3~6m	좌동	좌동	변경없음
	현황 통로	○획지 내 유일한 현황통행로가 있는 경우에는 신축 시 그 통로를 유지	-	좌동	좌동	변경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1) 차량출입금지구간 결정(변경) 조서

○차량출입금지구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금지구간	○주 간선가로(신촌로, 양화로, 신촌역로)에서의 차량출입 금지 ○이화여대 앞 찾고싶은 거리 구간에서 차량출입 금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구간에서 차량출입 금지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 전면부 일부구간 차량 출입 금지	결정(변경)도 참조
제한적 차량출입금지구간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내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선을 따라 지정	결정(변경)도 참조

○차량출입금지구간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 사업대상지 해제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차량 통행을 위한 제한적차량출입금지구간 일부 해제

(2)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설정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C (이화여대 앞)	○대지내로의 차량출입이 금지되거나 자율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완화하고, 미 완화분은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 권장용도 준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함	결정(변경)도 참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설정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 사업대상지 해제	○관련기준에 적법한 부설주차장 설치로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대상지 해제

※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40호, 2023.04.13.) 반영

Ⅳ.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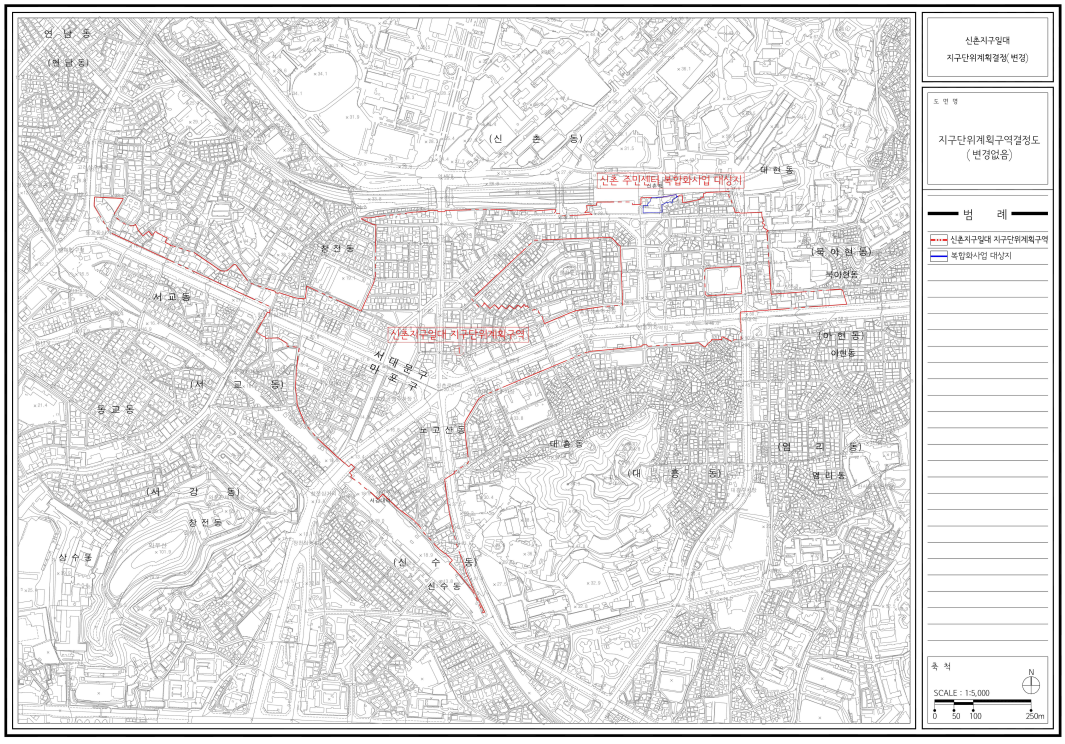

나. 용도지역 · 지구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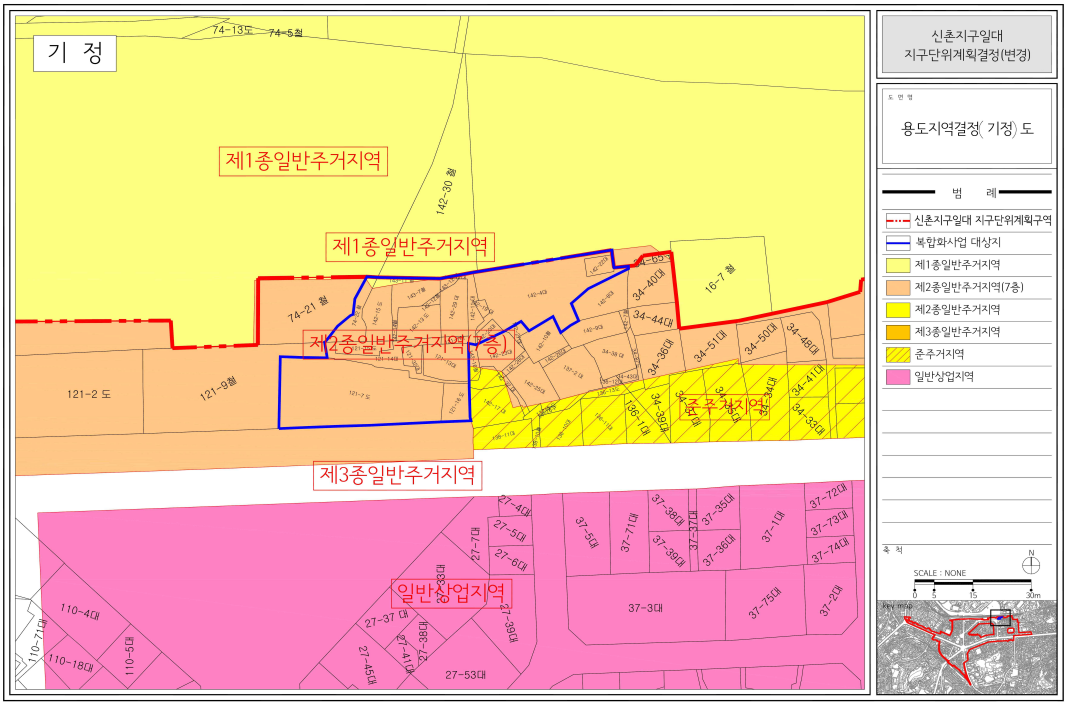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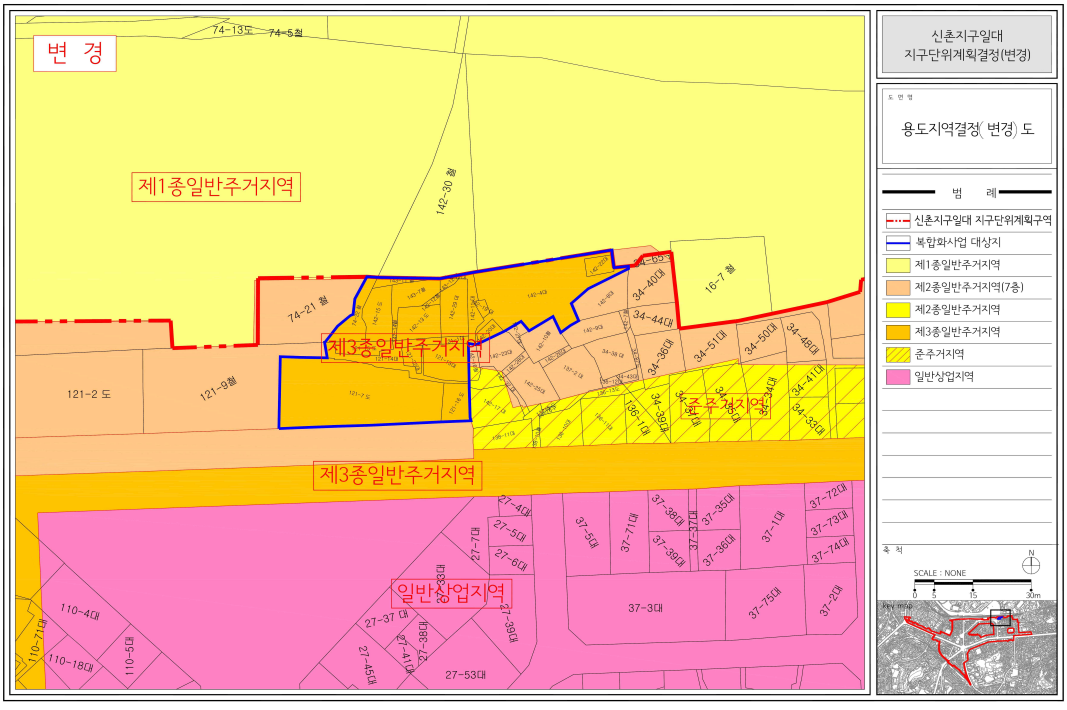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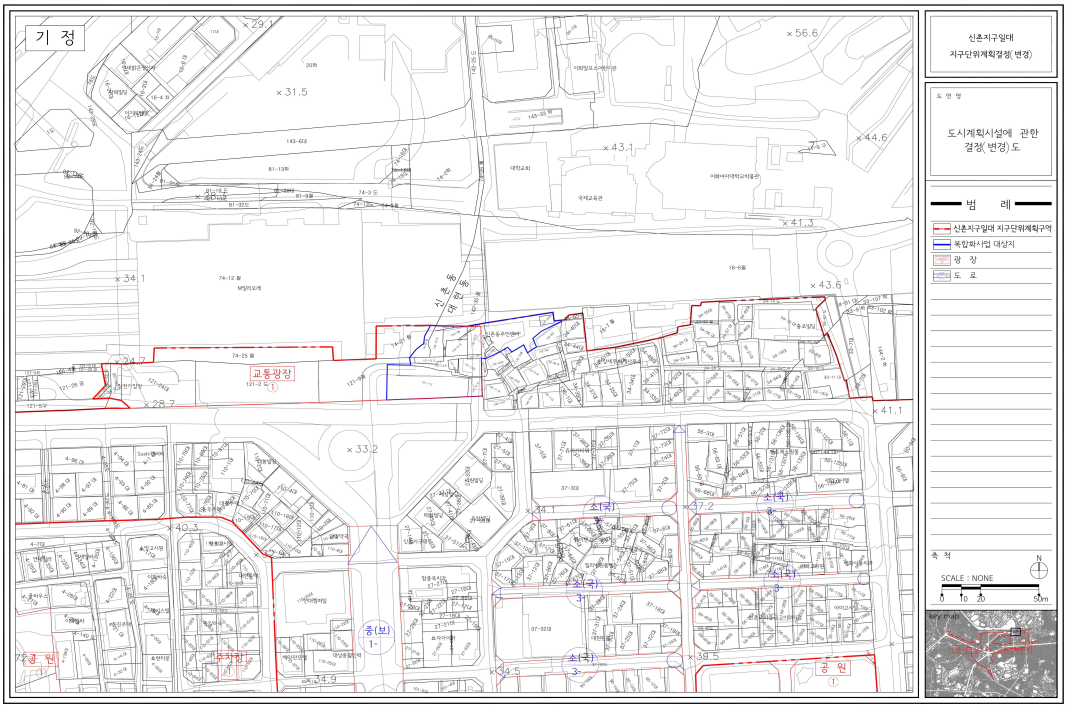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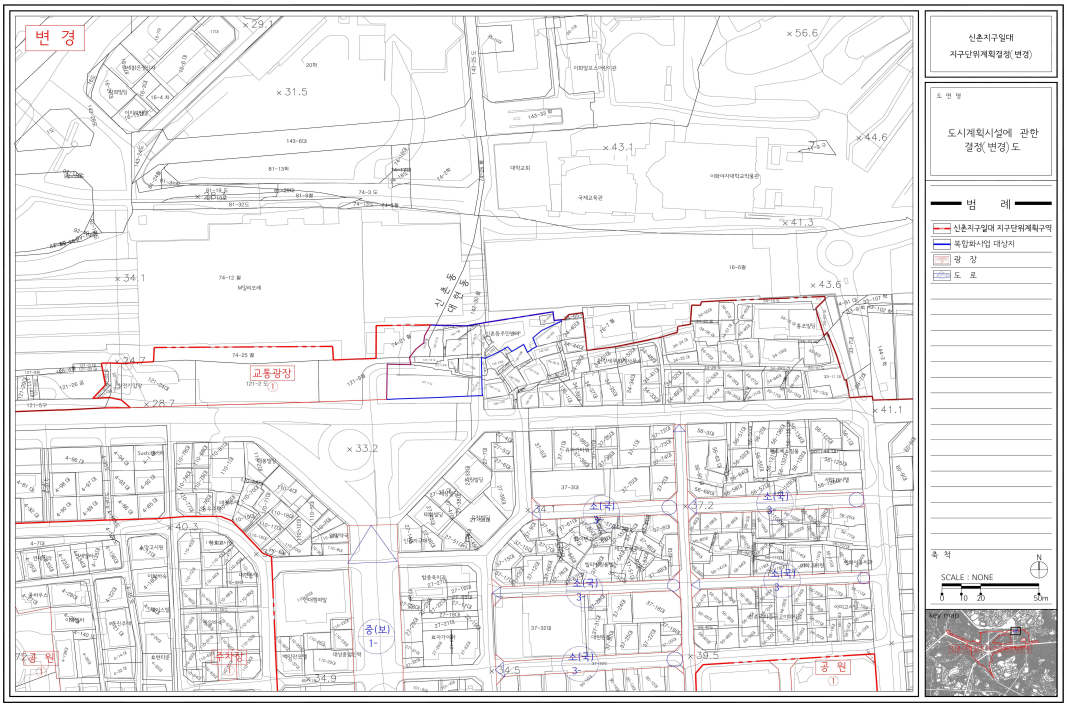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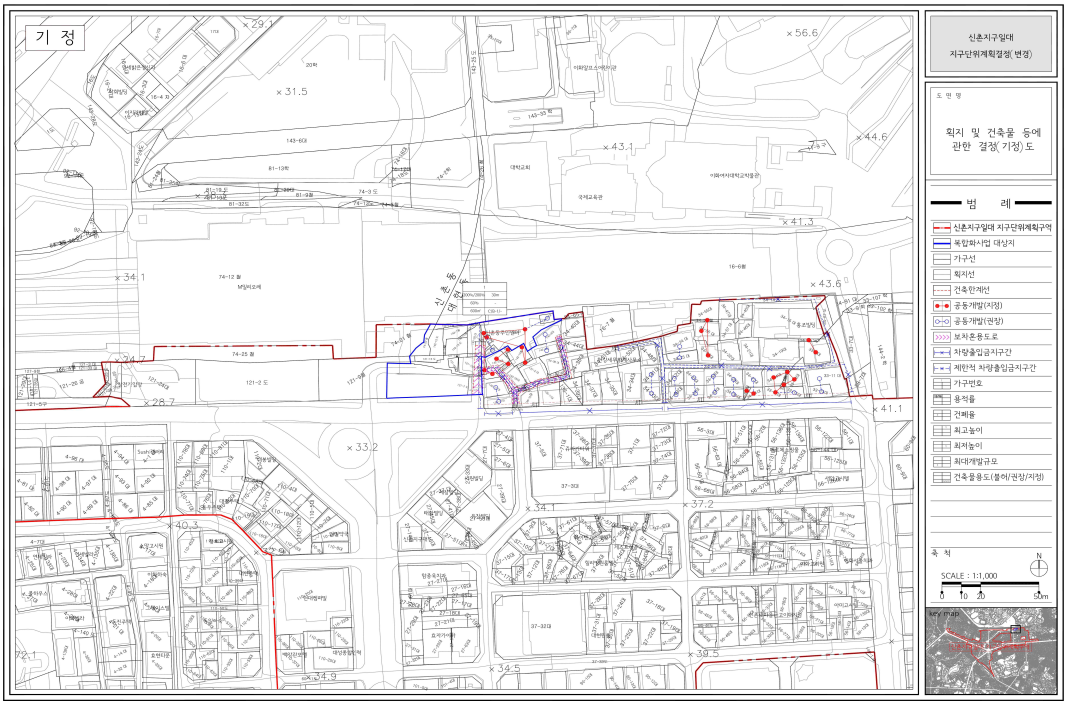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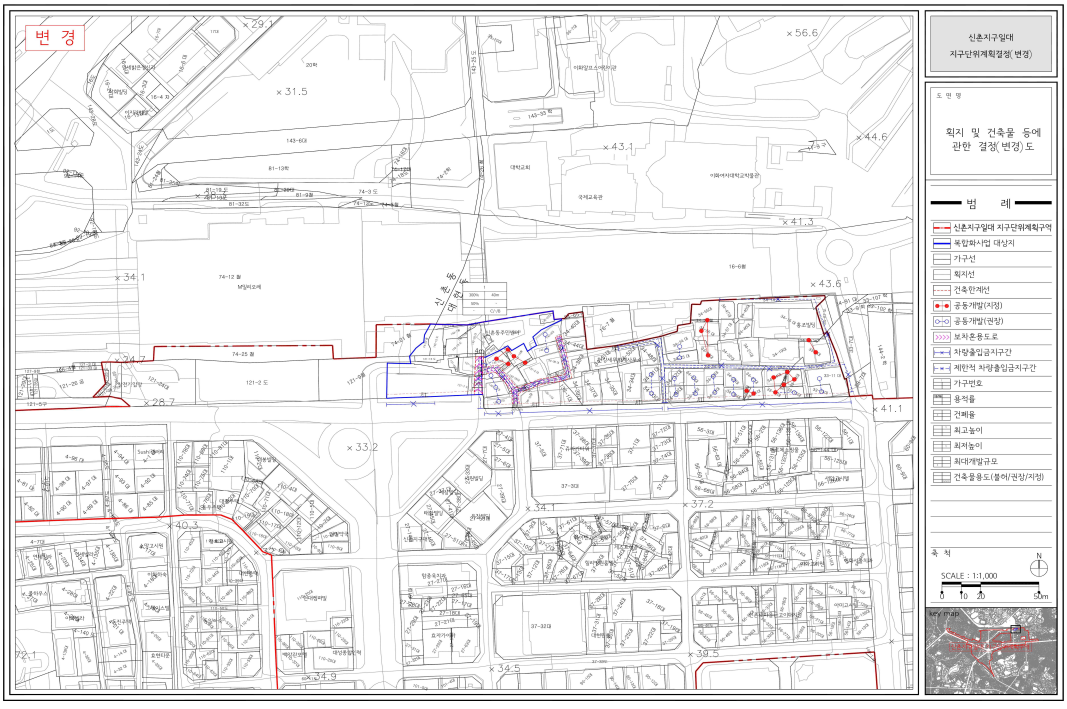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 외 21필지	
② 대 지 면 적 (㎡)			2,115.00 ㎡	
③ 건 축 면 적 (㎡)			1,045.84 ㎡	
④ 건축 연면적 (㎡)			8,847.23 ㎡	
⑤ 건 폐 율 (%)			49.45 %	
⑥ 용 적 률 (%)			293.94 %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개동 / 지하2층 / 지상11층	
	주택 형별	통합공공임대	전용31A 48세대, 전용30B 24세대, 전용30C 6세대	78세대
		계	총 78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9. 10. ~ 2027. 08.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24대(전기차 충전소 2대 포함), 면적 : 1,083.86㎡	
	관리사무소		18.54㎡	
	MDF실		21.74㎡	
	방재실		39.15㎡	
	커뮤니티공간		40.33㎡	
	공용면적		396.39㎡	
⑩ 공공 업무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9대(전기차 충전소 2대 포함), 면적 : 518.52㎡	
	민원실		289.70㎡	
	작은도서관		43.97㎡	
	주민자치센터		36.45㎡	
	동대본부		54.54㎡	
	동장실		35.10㎡	
	식당		43.24㎡	
	강당 및 부속시설		263.76㎡	
	직원휴게실		22.76㎡	
	임산부휴게실		23.89㎡	
	공용면적		727.46㎡	
⑪	지하주차장		지하 5대, 면적 : 241.94㎡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문화 및 집회시설	다목적룸	142.66㎡	
	문화센터	114.03㎡	
	스튜디오룸	74.02㎡	
	창고 및 공용	204.22㎡	
⑫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1대, 면적 : 62.63㎡	
	근린생활시설 및 공용	123.93㎡	
⑬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지하 2대/옥외 버스주차 2대, 면적 : 44.69㎡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⑭ 단위세대 면적	통합공공임대	78세대	31A1	32	31.22	23.29	54.51	5.44	59.95	
			31A2	8	31.22	24.50	55.72	5.44	61.16	측세대
			31A3	8	31.22	24.50	55.72	5.44	61.16	측세대
			30B1	8	30.30	23.78	54.08	5.44	59.52	
			30B2	8	30.30	24.67	54.97	5.44	60.41	측세대
			30B3	8	30.30	24.67	54.97	5.44	60.41	측세대
			30C1	4	30.69	23.58	54.27	5.44	59.71	
			30C2	1	30.69	24.93	55.62	5.44	61.06	측세대
			30C3	1	30.69	24.93	55.62	5.44	61.06	측세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번호 : 02-2133-7866)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복합설계부(전화번호 : 02-3410-794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호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8-5번지 일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2023.2.24.)호로 사업계획승인 고시하였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오세훈 (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심우섭)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행: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8-5번지
 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붙임 참조
4. 사업시행기간 : 2018. ~ 2027.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866)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복합설계부(☏3410-795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98-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98-5	-
② 대 지 면 적 (㎡)	1,657.10	1,657.10	-
③ 건 축 면 적 (㎡)	1,236.85	1,218.26	감 18.59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④ 건축 연면적 (㎡)			20,675.35	20,590.63	감 84.72
⑤ 건 폐 율 (%)			74.64	73.52	감 1.12
⑥ 용 적 률 (%)			921.44	921.79	증 0.35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통합공공임대주택 아파트1동 132세대 (지하4층, 지상18층)	통합공공임대주택 아파트1동 132세대 (지하4층, 지상18층)	-
	주택 형별	공공임대	30) 전용 30.04㎡형 : 20 세대	30) 전용 30.04㎡형 : 20 세대	-
			31A) 전용 31.14㎡형 : 28 세대	31A) 전용 31.04㎡형 : 17 세대	세대면적축소
				31A-1) 전용 31.04㎡형 : 11 세대	주거약자추가 (세대면적축소)
			31B) 전용 31.11㎡형 : 44 세대	31B) 전용 31.11㎡형 : 44 세대	-
			33) 전용 33.06㎡형 : 10 세대	33) 전용 33.05㎡형 : 10 세대	세대면적축소
			49) 전용 49.71㎡형 : 30 세대	50) 전용 50.03㎡형 : 30 세대	평형대증가
		계	총 132 세대	총 132 세대	-
⑧ 사 업 기 간			2021.09 ~ 2026.06	2021.09 ~ 2027.07	사업기간증가
⑨ 부대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66.58 ㎡	68.56 ㎡	증 1.98
	주민사랑방		39.49 ㎡	- ㎡	삭제
	주민운동시설 (피트니스센터)		190.03 ㎡	193.61 ㎡	증 3.58
	스터디카페		76.09 ㎡	76.00 ㎡	감 0.09
	공용빨래방		43.02 ㎡	82.51 ㎡	증 39.49
	용역원휴게실		38.81 ㎡	40.40 ㎡	증 1.59
	코워킹룸		54.04 ㎡	54.20 ㎡	증 0.16
	스터디룸		32.89 ㎡	33.00 ㎡	증 0.16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다목적회의실	32.89	㎡	33.00	㎡	증 0.11
	스마트포켓	49.55	㎡	-	㎡	삭제
	미디어룸	49.55	㎡	-	㎡	삭제
	계절창고 (공동주택)	-	㎡	100.02	㎡	기타부대복리시설 합계 전: 3,061.29 후: 3,172.30 증 111.01
	MDF,방재실, 재활용쓰레기보관함 (공동주택)	44.35	㎡	46.50	㎡	
	전기실 (공동주택)	73.85	㎡	82.19	㎡	
	발전기실 (공동주택)	31.06	㎡	44.33	㎡	
	기계실 (공동주택)	208.38	㎡	241.93	㎡	
	주차장 (공동주택)	2,703.65	㎡	2,657.33	㎡	
	⑩ 공동저수시설 (공동주택)	48.6	톤	66	톤	증 17.4
⑪ 노유자 시설 (근로 복지 시설)	노동자복지관	7,190.07	㎡	7,075.84	㎡	노유자시설 합계 전: 7,231.47 후: 7,115.05 감 116.42
	MDF,방재실, 재활용쓰레기보관함 (노유자시설)	41.40	㎡	39.21	㎡	
	전기실 (노유자시설)	68.95	㎡	69.31	㎡	기전실 합계 전: 385.51 후: 360.49 감 25.02
	발전기실 (노유자시설)	30.83	㎡	37.39	㎡	
	기계실/연료전지실 (노유자시설)	285.73	㎡	253.79	㎡	
	주차장 (노유자시설)	1,688.95	㎡	1,585.75	㎡	감 103.20
	⑫ 공동저수시설 (노유자시설)	54	톤	101.2	톤	증 47.2
⑬ 제1종	제1종근린생활시설	-	㎡	58.95	㎡	증 59.28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근린생활시설	MDF,방재실, 재활용쓰레기보관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 ㎡	0.33 ㎡	
	전기실 (제1종근린생활시설)	- ㎡	0.57 ㎡	증 2.58
	발전기실 (제1종근린생활시설)	- ㎡	0.31 ㎡	
	기계실 (제1종근린생활시설)	- ㎡	1.70 ㎡	
	주차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 ㎡	4.25 ㎡	증 4.25
	⑭ 공동저수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톤	- 톤	-

구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⑮ 단위세대 면적	공공임대	30	20	30.04	19.78	49.82	24.14	73.96	청년
		31A	17	31.04	20.35	51.39	24.95	76.33	청년
		31A-1	11	31.04	20.35	51.39	24.95	76.33	주거약자
		31B	44	31.11	20.47	51.58	25.00	76.58	청년
		33	10	33.05	21.41	54.46	26.56	81.03	청년
		50	30	50.03	31.99	82.02	40.21	122.23	신혼부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호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1983.09.06.)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1984.08.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0호(2009.05.2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3호(2024.11.21.)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한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조서 및 결정도에 착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정정사유 : 정비계획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오기재 사항 정정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정정없음

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 : 정정없음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정정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정정
1) 도로
< 정정 전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	10	집산도로	89	서린동 121-1	서린동 10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55	서린동 158	서린동 13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60	서린동 62	서린동 59-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48	서린동 44	서린동 6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	13.5~18	집산도로	5,390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 정정 후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89	서린동 121-1	서린동 10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55	서린동 158	서린동 13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60	서린동 62	서린동 59-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48	서린동 44	서린동 62	일반 도로	-		

나. 공간시설 : 정정없음

4. 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 정정없음

Ⅲ.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지정 조서~4.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정정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정정 전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89	서린동 121-1	서린동 10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55	서린동 158	서린동 13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60	서린동 62	서린동 59-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48	서린동 44	서린동 6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	13.5~ 18	집산 도로	5,390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		

< 정정 후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89	서린동 121-1	서린동 10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55	서린동 158	서린동 13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60	서린동 62	서린동 59-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48	서린동 44	서린동 62	일반 도로	-		

나. 공간시설 : 정정없음

6.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 계획 ~ 20.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정정없음

Ⅳ.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정정없음
2. 용도지역 · 지구 결정 조서 : 정정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 정정

1) 도로

< 정정 전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89	서린동 121-1	서린동 10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55	서린동 158	서린동 13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60	서린동 62	서린동 59-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48	서린동 44	서린동 6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	13.5~ 18	집산 도로	5,390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		

< 정정 후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	10	집산도로	89	서린동 121-1	서린동 10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55	서린동 158	서린동 13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60	서린동 62	서린동 59-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48	서린동 44	서린동 62	일반도로	-		

나. 공간시설 : 정정없음

4.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 정정없음

Ⅴ. 관계도면 : 붙임 참조(정정 도면만 게재)

Ⅵ.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02-2133-4647) 및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7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정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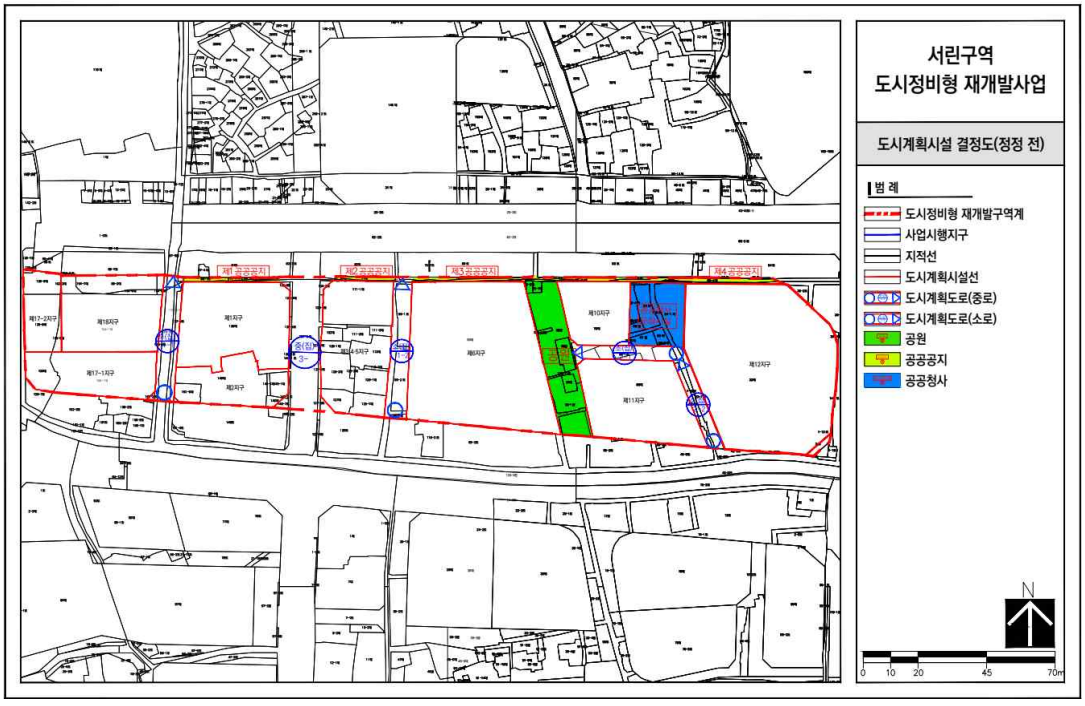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정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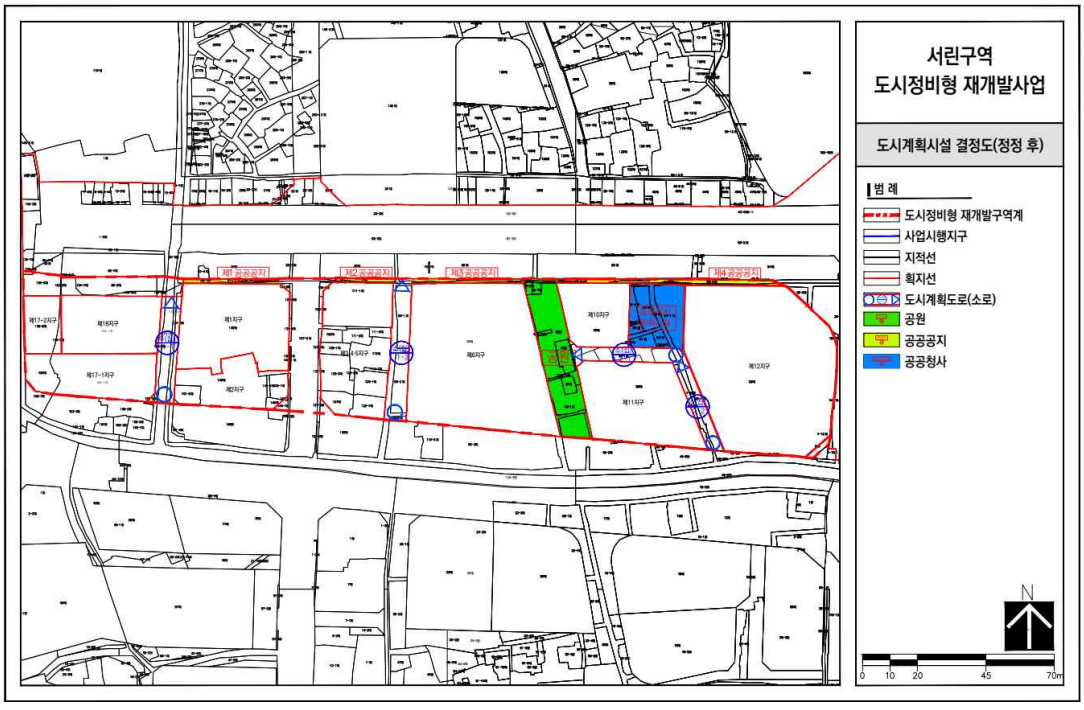

□ 서린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도(정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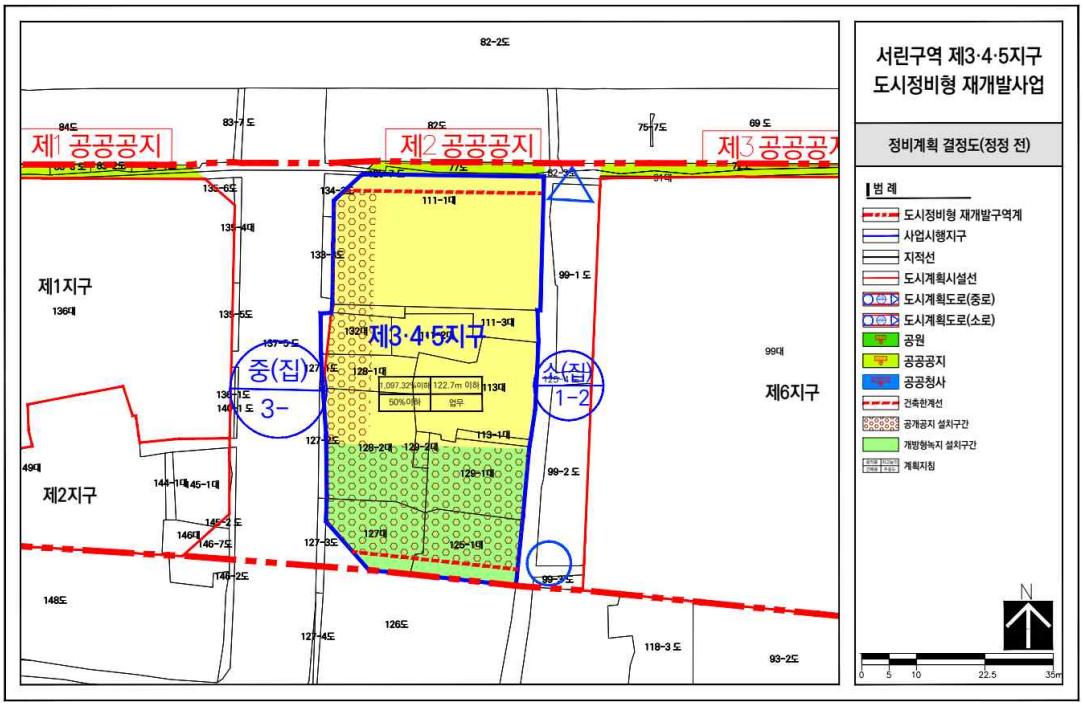

□ 서린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도(정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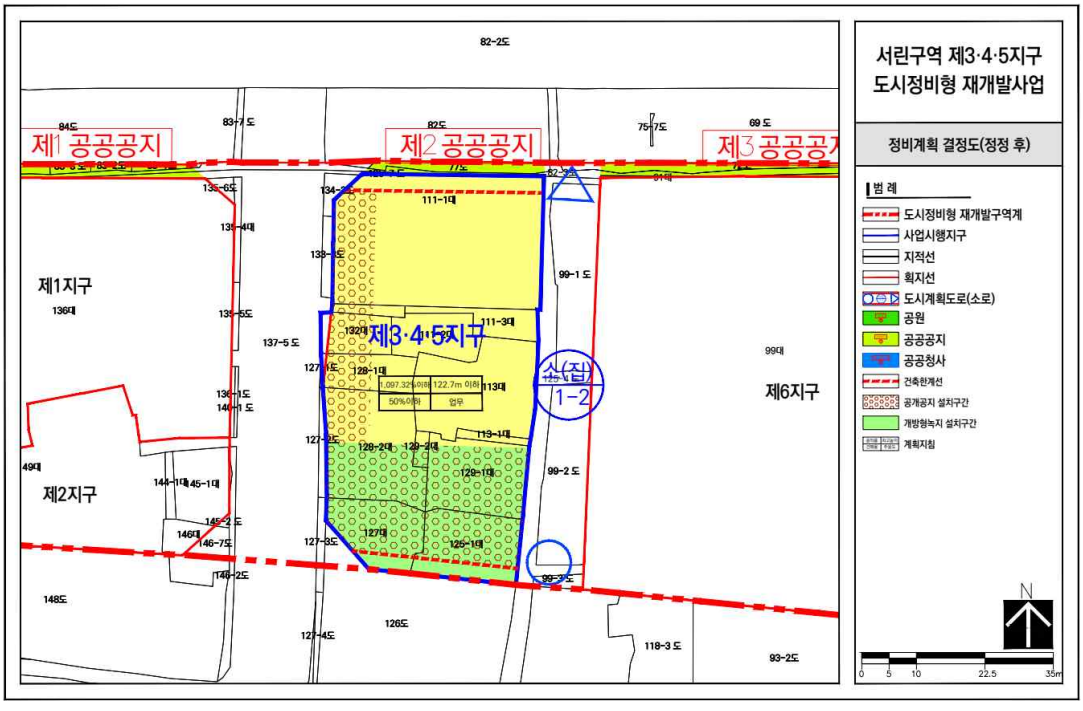

□ 서린구역 제3,4,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정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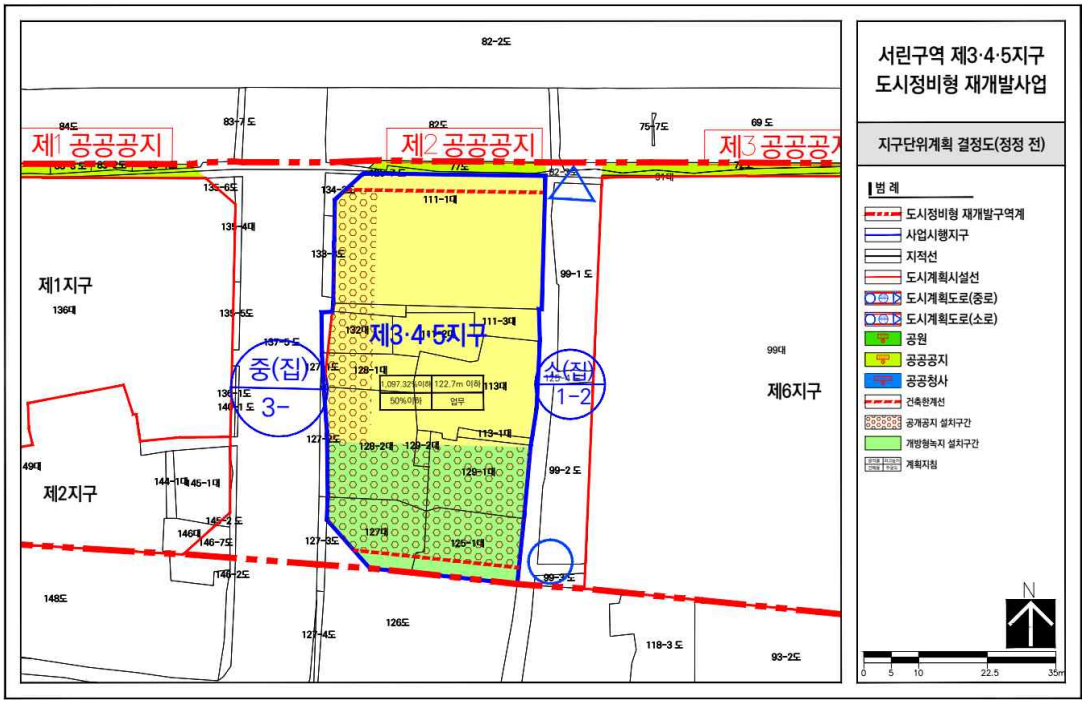

□ 서린구역 제3,4,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정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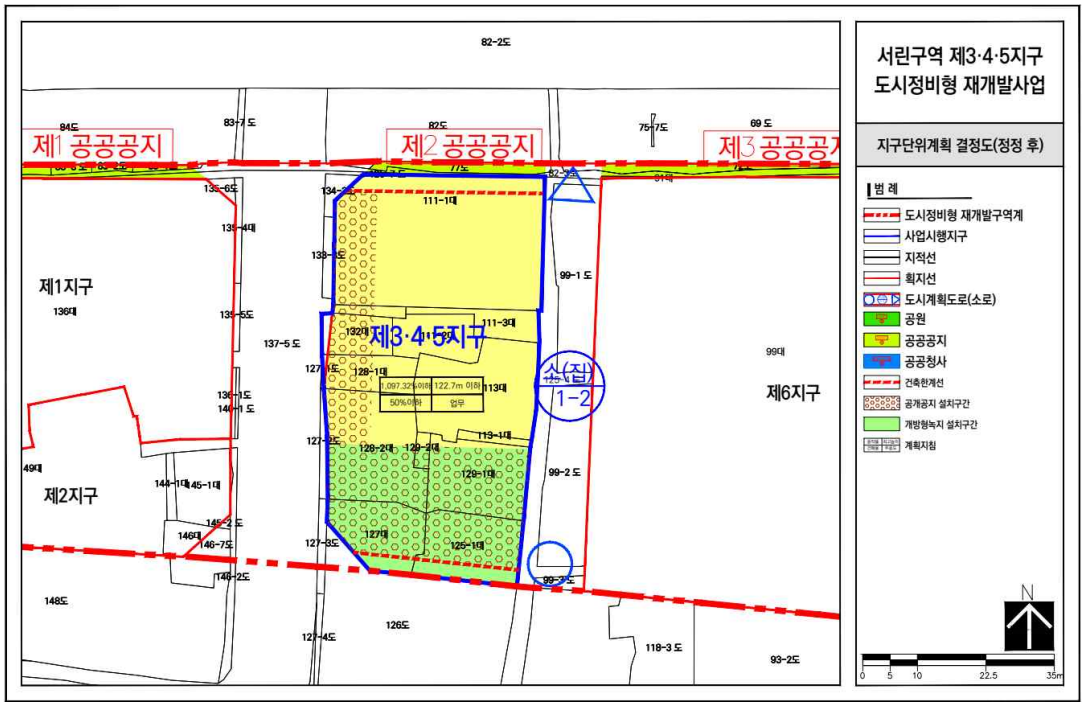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2.08.25.)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8호(’ 22.08.26.)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시흥4동 4번지 일대	67,255	· 서울특별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시흥4동 4번지 일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시흥4동 4번지 일대	99,536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	2021. 12. 30.	67,255	·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1. 12. 30.(기존구역) 2024. 12. 26.(추가구역)	99,536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9) 또는 금천구 주거정비과(☎02-2627-1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시흥4동 4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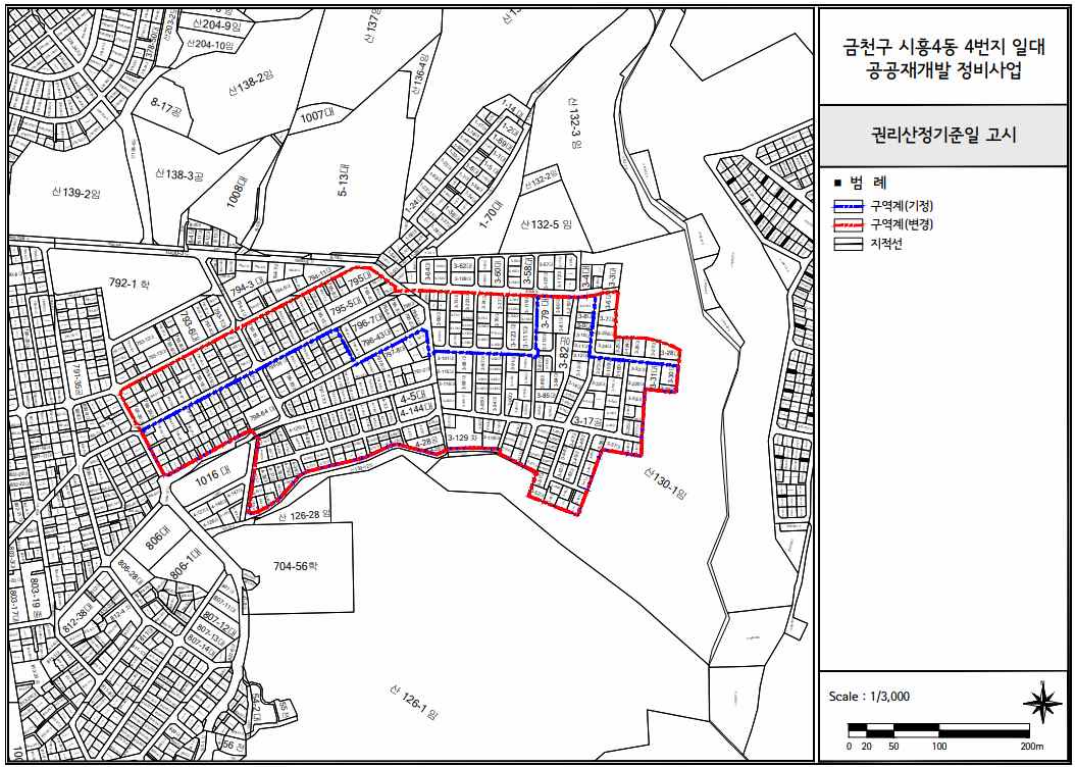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5호, 2023.12.1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1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

등 급	주 거	비 주 거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나]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다]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라]	3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구 분	내 용
전면 대수선[1]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 제2조 기준 적용 ([가]→[나], [나]→[다], [다]→[라], [라]→[라])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제2조제3항의 적용기준인 [라] 등급을 적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

구 분	내 용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전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제2조제3항의 적용기준인 [라] 등급을 적용하며,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2]에 적용

1) 전면 대수선: 건축물의 단열을 포함한 외피 및 설비시스템 전체를 철거 후 성능 개선을 시행하는 공사 (전면 대수선과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전면 대수선으로 적용)
2) 열손실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 외기에 면하는 부위(건축물의 외피로 단열면 또는 단열선을 의미)가 추가 · 삭제 · 이동하는 경우 및 외기에 면하는 부위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설치된 단열재나 창호를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③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용 도</td><td>○「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table><tr><td>주 거</td><td>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td></tr><tr><td>비주거</td><td>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제29호까지</td></tr></table>※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td></tr>
<tr><td>규 모</td><td>○ 주 거: 동별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 · 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td></tr>
</table>

제2조(적용기준)

① 제1조제2항의 [가], [나], [다] 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평가내용</th><th colspan="12">적용기준</th></tr>
<tr><th>대상</th><th colspan="5">주거</th><th colspan="5">비주거</th></tr>
<tr><td rowspan="3">환경 성능</td><td rowspan="3">녹색건축인증</td><td>[가]</td><td colspan="10">우수(그린2등급) 이상</td></tr>
<tr><td>[나]</td><td colspan="10">우량(그린3등급) 이상</td></tr>
<tr><td>[다]</td><td colspan="10">일반(그린4등급) 이상</td></tr>
<tr><td rowspan="3">에너지 성능</td><td rowspan="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td><td>[가]</td><td colspan="10">1++등급 이상</td></tr>
<tr><td>[나]</td><td colspan="10">1+등급 이상</td></tr>
<tr><td>[다]</td><td colspan="10">1등급 이상</td></tr>
<tr><td rowspan="3">에너지 관리</td><td rowspan="3">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①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1]기능
②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③ 데이터 분석 기능
④ 동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⑤ 동별 5종 이상 에너지 용도별[2] 모니터링 기능
⑥ BEMS 설치</td><td>[가]</td><td colspan="5">① + ② + ③</td><td colspan="5">③ + ④ + ⑤ + ⑥</td></tr>
<tr><td>[나]</td><td colspan="5">① + ②</td><td colspan="5">③ + ④ + ⑤</td></tr>
<tr><td>[다]</td><td colspan="5">①</td><td colspan="5">③ + ④</td></tr>
<tr><td rowspan="5">신재생 에너지</td><td rowspan="5">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3),4),5),6)]</td><td colspan="2">년</td><td>’ 23</td><td>’ 24</td><td>’ 25</td><td>’ 26</td><td>’ 27</td><td>’ 23</td><td>’ 24</td><td>’ 25</td><td>’ 26</td><td>’ 27</td></tr>
<tr><td colspan="2">공공</td><td>32%</td><td>34%</td><td>34%</td><td>36%</td><td>36%</td><td>32%</td><td>34%</td><td>34%</td><td>36%</td><td>36%</td></tr>
<tr><td rowspan="3">민간</td><td>[가]</td><td>10%</td><td>10.5%</td><td>11%</td><td>11.5%</td><td>12%</td><td>14%</td><td>14.5%</td><td>15%</td><td>15.5%</td><td>16%</td></tr>
<tr><td>[나]</td><td>9.5%</td><td>10%</td><td>10.5%</td><td>11%</td><td>11.5%</td><td>13%</td><td>13.5%</td><td>14%</td><td>14.5%</td><td>15%</td></tr>
<tr><td>[다]</td><td>9%</td><td>9.5%</td><td>10%</td><td>10.5%</td><td>11%</td><td>12%</td><td>12.5%</td><td>13%</td><td>13.5%</td><td>14%</td></tr>
</table>

1)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은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냉난방, 수도 등)를 대상으로 한다.
2) 5종 선택 : [필수 3] 난방, 냉방, 급탕 / [선택 2] 공조용 팬, 펌프(열원용, 급탕용, 급수용), 전등, 전열, 엘리베이터
3)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고시)을 따르되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을 230kWh/m2y로 반영한다. 또한 별표 1에 따른 대체 비율은 의무설치 비율의 최대 50% 미만까지 인정한다.
4) 연면적의 합계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은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 · 수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설치부지가 부족하거나 지하에 지장물이 있는 등 현장 여건상 의무기준 준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열 · 수열 의무설치 비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태양광 설비는 별표 2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6) 지열 · 수열 설비는 별표 3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②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에는 제1항의 에너지 성능,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를 제외한다.

③ 제1조제2항의 [라]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에너지성능 (A 또는 B 선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A)	[라]	2등급 이상	
	EPI1) 기준 (B)		건축부문 1번(거실의 외벽단열) 0.8점 이상, 2번(지붕단열) 0.8점 이상, 3번(바닥단열) 0.8점 이상, 5번(창 및 문의 기밀성능) 0.9점 이상 각 충족 기계설비부문 1번(난방) 0.9점 이상, 2번(냉방) 0.9점 이상2) 각 충족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EPI)이며, EPI의 점수 및 내용은 별표 4를 따른다.
2) 기계설비부문 1번(난방), 2번(냉방) 설비 평가는 다음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계설비부문 1번 : 전체 난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열식 전기 난방, 지역 난방, 소형가스 열병합 난방,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으로 채택한 경우
- 기계설비부문 2번 : 전체 냉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냉식 전기 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단, 가스히트펌프 방식은 제외), 지역냉방 또는 소형 열병합 냉방으로 채택한 경우
- 기계설비부문 1번 및 2번 : 입주자 공사분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시까지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신설하거나 교체하지 않는 경우

④ 중앙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 이용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저녹스 버너 사용 제품의 적용을 권장한다.

제3조(녹색건축물 인센티브)

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의 적용은「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과「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완화기준 적용 방법
   가. 용적률 완화 : 용적률 × [1 + 완화기준]
   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2. 완화기준 적용 대상 : 제3호 완화 조건을 달성한 건축물
3. 완화기준 : 가~다목을 합산하여 최대 15%까지 적용한다.
   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최대 완화비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6%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최대완화비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5%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3%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다.「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른 최대완화비율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단계별 제출서류)

단계	제출서류
① 심의 ② 인·허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서울형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별지 제3호서식] 서울형 지열·수열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별지 제4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적용 예정 확인서(해당시)
③ 사용승인	[별지 제5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확인서 ※ 사용승인 신청 시 해당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서, 녹색건축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제출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

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종 인·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으로, 기초공사 완료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함에 따라 건축법 제16조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중 4), 6)는 이 기준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는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

(제2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성능
대체비율</td><td>
건축물의 규모별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값보다 1차에너지소요량이 적으면 차이값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완화
(1)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 규모별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값(a) - 대상건축물의 1차에너지소요량(b)

(2)1차에너지소요량 기준값(a) 및 소요량(b) (단위:kWh/㎡·y)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주 거</th><th colspan="3">비 주 거</th></tr>
<tr><th>[가]</th><th>[나]</th><th>[다]</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규모별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값(a)</td><td>90</td><td colspan="2">120</td><td>140</td><td colspan="2">200</td></tr>
<tr><td>대상건축물 1차에너지 소요량(b)</td><td colspan="6">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결과 또는 1차에너지소요량 분석결과</td></tr>
</table>
(3) 성능대체비율 도출 (단위: kWh/㎡·y)
<table>
<tr><th colspan="2">주 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10당 대체비율 0.25% 포인트씩 대체 인정</th><th colspan="2">비주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15당 대체비율 0.5% 포인트씩 대체 인정</th></tr>
<tr><th>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th><th>대체비율</th><th>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th><th>대체비율</th></tr>
<tr><td>10 이상</td><td>0.25%p</td><td>15 이상</td><td>0.50%p</td></tr>
<tr><td>20 이상</td><td>0.50%p</td><td>30 이상</td><td>1.00%p</td></tr>
<tr><td>30 이상</td><td>0.75%p</td><td>45 이상</td><td>1.50%p</td></tr>
<tr><td>40 이상</td><td>1.00%p</td><td>60 이상</td><td>2.00%p</td></tr>
<tr><td>.
.
.</td><td>.
.
.</td><td>.
.
.</td><td>.
.
.</td></tr>
</table>
</td></tr>
<tr><td>대지외부
대체비율</td><td>(1) 설치유형 : 신설(기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미인정)
(2) 설치장소 : 대상건물 대지 외
(3)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 계산서, 설치 전·후 사진 및 도면, 설치관련 계약서(협정서), 활용계획서, 납품확인서 등 증빙서류</td></tr>
</table>

[별표 2]

건축물의 태양광 설비 설계 기준

1. 공통사항
   가. 태양광 설비는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위치와 배치 형태를 결정하고, 색상과 디자인은 도시경관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나. 태양광 설비는 ① PV(최대) → ② BIPV → ③ BAPV 순으로 설치한다.
   다. 모듈의 일조시간은 1일 5시간[춘계(3~5월) · 추계(9~11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옥상 및 지붕 설치 등 수평형
   가. 독립구조형 태양광 패널의 설치 경사각은 발전효율 및 오염(soiling)을 고려하여 40도 이내로 설치하되,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상단부와 하단부의 높이차를 1m이하로 계획한다.
   나.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지면의 eye-level에서 차폐하고 모듈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다. 경사지붕형은 남향에 접한 지붕에 지붕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라. 평지붕 형태의 모듈 어레이 설치 시 경사각도, 단면각도, 모듈 어레이 별 이격거리 등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관리자가 점검 및 유지관리 시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 등의 점검공간을 확보한다.
   바. 태양광 발전과 연계하여 옥상녹화 및 쿨루프 계획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 벽면 및 발코니 설치 등 수직형
   가. 일조환경이 적정할 경우 건물일체형 태양광설비(BIPV)를 최대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나. 발전효율 및 입면 디자인을 고려하여 경사를 주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위세대별로 개별 설치는 불가하며, 동별로 설치는 가능하다.
   라. BIPV, BAPV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시공 시 구조검토 등을 통해 패널 및 부속물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적용 예외
   가. 상기의 기준에 대하여 태양광 생산, 안전, 디자인(미관) 등 특화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심의 등을 통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을 따른다.

[별표 3]

건축물의 지열 · 수열 설비 설계 기준

1. 공통사항
   가. 지열 · 수열 설비는 열 공급효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열원과 열교환 방식을 결정하고, 설계한 열 공급효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지중 조건 등 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열 설비의 형식을 선정하고 토양 환경, 지하수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2. 밀폐형 지열 설비(수직밀폐형, 지중수평형, 에너지파일형)
   가. 시스템의 냉방 COP는 3.75 이상, 난방 · 급탕 COP는 3.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어홀 사이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이어야 한다.

3. 개방형 지열 설비(스탠딩컬럼웰형)
   가. 지하수 산출량이 풍부하고 지열공 무너짐이 발생하지 않는 지반(암석대)으로 건축물의 기초 안정성이 확보되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를 계획한다.
   나. 시스템의 냉방 COP는 3.93 이상, 난방 · 급탕 COP는 3.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지열공 사이의 거리는 최소 10m 이상이어야 하고, 지열공 직경은 상하부 전 구간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라. 지열공 무너짐, 지하수 수위 변화, 순환수 물 넘침, 침전물 퇴적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열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상부 보호장치 설치 등 지열공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을 계획한다.

4. 수열 설비
   가. 시스템의 냉방 COP는 4.38 이상, 난방 · 급탕 COP는 3.29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하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배수관 출구 온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설비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계획한다.
   다. 열펌프의 열교환기 및 취수측 열교환기는 오염 막힘 방지를 위해 교환 또는 세정이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5. 적용 예외
   가. 수열 · 지열의 생산, 안전, 신기술 도입 등으로 위 기준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열 · 수열 의무설치 비율을 완화 또는 면제 적용할 수 있다.

※ 지열 및 수열 설비 설치 관련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을 따른다.

[별표 4]

에너지 성능 지표(EPI)

(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배 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축부문	1.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W/㎡·K) (창 및 문을 포함)		비주거	0.490미만	0.490~ 0.560미만	0.560~ 0.620미만	0.620~ 0.680미만	0.680~ 0.740미만
			주거	0.340미만	0.340~ 0.380미만	0.380~ 0.420미만	0.420~ 0.460미만	0.460~ 0.500미만
	2.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W/㎡·K)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			0.090미만	0.090~ 0.100미만	0.100~ 0.110미만	0.110~ 0.130미만	0.130~ 0.150미만
	3. 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W/㎡·K)			0.120미만	0.120~ 0.130미만	0.130~ 0.150미만	0.150~ 0.170미만	0.170~ 0.210미만
	5. 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h㎡))			1등급 (1㎥/h㎡ 미만)	2등급 (1~2㎥/h㎡ 미만)	3등급 (2~3㎥/h㎡ 미만)	4등급 (3~4㎥/h㎡ 미만)	5등급 (4~5㎥/h㎡ 미만)
기계설비부문	1. 난방설비 (효율%)	기름 보일러		93이상	90~ 93미만	87~ 90미만	84~ 87미만	84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6~ 90미만	84~ 86미만	82~ 84미만	82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2. 냉방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5.18 이상	4.51~ 5.18미만	3.96~ 4.51미만	3.52~ 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계수, COP)	① 1중효용	0.75 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 미만
			② 2중효용 ③ 3중효용 ④ 냉온수기	1.2 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 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지 제1호서식 참조

[별표 5]

서울시 녹색건축물 체크리스트

(별지 제1·4·5호 서식 작성시 참조)

항 목			단계별 검토사항		
			심 의	인·허가	사용승인
환경성능	녹색건축 인증		· 등급확인 (적용예정확인서)[1]	· 적용예정확인서 · 가점수표/계획안 · 예비인증서[2]	· 본 인증서
에너지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 등급확인 (적용예정확인서)[1]	· 적용예정확인서 · 적용사항계획안 · 예비인증서[2]	· 본 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등급확인 (적용예정확인서)[1]	· 적용예정확인서 · 적용사항계획안 · 예비인증서[2]	· 본 인증서
	EPI 기준	외벽 (건축 1번)	· 등급확인 (EPI 가채점표)	· 근거도서 · 점수확인(세움터)	· 이행완료확인서[3]
		지붕 (건축2번)	· 등급확인 (EPI 가채점표)	· 근거도서 · 점수확인(세움터)	· 이행완료확인서[3]
		바닥 (건축 3번)	· 등급확인 (EPI 가채점표)	· 근거도서 · 점수확인(세움터)	· 이행완료확인서[3]
		기밀성 창 및 문 (건축 5번)	· 등급확인 (EPI 가채점표)	· 근거도서 · 점수확인(세움터)	· 이행완료확인서[3]
		난방 설비 (기계 1번)	· 등급확인 (EPI 가채점표)	· 근거도서 · 점수확인(세움터)	· 이행완료확인서[3]
		냉방 설비 (기계 2번)	· 등급확인 (EPI 가채점표)	· 근거도서 · 점수확인(세움터)	· 이행완료확인서[3]
에너지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분석	· 원격검침설비 계통도 · 적용 기능 · 비주거 시설 동별 계량 가능여부 확인도서	· 근거도서	· 이행완료확인서[3]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계산결과	· 계산서	· 이행완료확인서[3]
		태양광	· 태양광 설치위치도, 모듈상세도 · 일조분석결과 · BIPV 구조물 상세도(해당시)	· 근거도서	· 이행완료확인서[3]
		지열	· 설비 수량·용량·효율 · 열원설비 계통도 · 천공배치도	· 근거도서	· 이행완료확인서[3]
		연료전지	· 설비 수량·용량·효율 · 열원설비 또는 급수급탕 계통도 · (열+전력) 사용계획서 제시	· 근거도서	· 이행완료확인서[3]
		기타	· 위에 준하는 증빙자료	· 근거도서	· 이행완료확인서[3]

※ 1) 별지 제4호 서식 제출
2) 예비인증서는 착공시까지 제출 권장
3) 별지 제5호 서식 제출

[별표 6]

건축 기준 완화 적용시 검토서 체크리스트

항 목	단계별 검토사항		
	심 의	인·허가	사용승인
녹색건축 인증	· 등급확인(적용예정확인서) · 가점수표 / 계획안	·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 예비인증서	· 본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별지 제1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1. 사업 개요

<table>
<tr><td>사 업 명</td><td colspan="3">000 신축공사</td></tr>
<tr><td>건 축 주</td><td colspan="3">00건설(주) 대표이사 000</td></tr>
<tr><td>대지위치</td><td colspan="3">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td></tr>
<tr><td>도시계획구역</td><td colspan="3">00지구단위계획구역(제2016-000호)</td></tr>
<tr><td>대지면적</td><td>000.00(㎡)</td><td>냉난방면적</td><td>000.00(㎡)</td></tr>
<tr><td>건축면적</td><td>000.00(㎡)</td><td>건 폐 율</td><td>000.00(%)</td></tr>
<tr><td>연 면 적</td><td>000.00(㎡)</td><td>용 적 률</td><td>000.00(%)</td></tr>
<tr><td>건물규모</td><td>지하 00층, 지상 00층</td><td>최고높이</td><td>000(m)</td></tr>
<tr><td>용 도</td><td>00 시설</td><td>건물동수</td><td>00(동)</td></tr>
<tr><td>용도별 면적</td><td colspan="3">000시설 : 000.00㎡ , 000시설 : 000.00㎡
<table>
<tr><th>구 분</th><th>주거(000세대)</th><th>비주거</th><th>계</th></tr>
<tr><td>연 면 적</td><td>000.00㎡</td><td>000.00㎡</td><td>000.00㎡</td></tr>
<tr><td>주차장 외 연면적</td><td>000.00㎡</td><td>000.00㎡ 1)</td><td>000.00㎡</td></tr>
<tr><td>주차장 면적</td><td>000.00㎡</td><td>000.00㎡ 1)</td><td>000.00㎡</td></tr>
</table></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3">
<table>
<tr><td>제로에너지건축물등급</td><td>00등급</td><td>00등급</td><td>-</td></tr>
<tr><td>에너지효율등급</td><td>00등급</td><td>00등급</td><td>-</td></tr>
<tr><td>녹색건축인증등급</td><td>00등급(그린0)</td><td>00등급</td><td>-</td></tr>
<tr><td>신재생에너지 비율</td><td>00.00%</td><td>00.00%</td><td>-</td></tr>
</table></td></tr>
<tr><td>추진경위</td><td colspan="3">- 2023.00.00.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
-</td></tr>
</table>

※ 1) 예상 에너지 사용량 산출을 위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 구분

구 분	적 용 여 부 (■ 표시)
용 도	□ 주거 □ 비주거
등 급	□ [가] □ [나] □ [다] □ [라]
건 축 행 위 (별첨1)	□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 □ 전면 대수선 □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 용도변경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ZEB 1 □ ZEB 2 □ ZEB 3 □ ZEB 4 □ ZEB 5
신재생에너지	□ 성능대체 □ 외부대체 □ 기타 □ 해당없음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 높이 □ 해당없음

3. 성능 적용 수준

항 목				적용 수준		근거
				적용기준	설계내용	
환경 성능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그린3등급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1++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4등급	
	EPI 기준	외피 평균 단열 성능[2]	외 벽			
			지 붕			
			바 닥			
		기밀 성능[2]	창 및 문			
		냉·난방 열원 설비[2]	난 방			
			냉 방			
에너지 관리	에너지모니터링 및 분석[2]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데이터 분석 기능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데이터 분석 기능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2] (%)			의무설치량: %	5.1%	
	태양광 (kW)				합계: kW PV: kW BAPV: kW BIPV: kW	
	지 열 (kW)				밀폐형: kW 개방형: kW	
	연료전지 (kW)				SOFC: kW PEMFC: kW	
	태 양 열 (㎡)				평판형: ㎡ 단일진공관형: ㎡ 이중진공관형: ㎡ 등	
	집광채광 (㎡)				프리즘: ㎡ 광덕트: ㎡ 실내루버형: ㎡	
	수 열 (kW)					
	기타(목재펠릿, 소형풍력 등)					
	에너지자립률(ZEB대상) (%)				20%	
	인정 방식	성능 대체				
		외부 대체				
		기 타				

4. 건축기준 완화기준

항 목	완화기준	완화적용비율		합계
		용적률	높이	
녹색건축 인증 등급	3~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3~15%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5~15%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구 분	건축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설 계 자	(주)00사사무소 (인)	(주)000사무소 (인)	(주)00종합기술 (인)
	참여기술자 0 0 0	참여기술자 0 0 0	참여기술자 0 0 0
	☎0000-0000	☎0000-0000	☎0000-0000
담당 공무원	홍 길 동	☎ 02-0000-0000	

[별지 제2호서식]

서울형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검토서

건축물	건물(사업)명		주 소	
	층 수		연면적	
검토자	회사명		성 명	
	연락처(☎)		이메일	

설치기준 검토 내용

구 분	내 용	적합여부	비고
1. 공통 사항	가. 태양광설비는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위치와 배치 형태를 결정하고, 색상과 디자인은 도시경관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나. 태양광 설비는 ① PV(최대) → ② BIPV → ③ BAPV 순으로 설치한다.		
	다. 모듈의 일조시간은 1일 5시간[춘계(3~5월) · 추계(9~11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옥상 및 지붕 설치 등 수평형	가. 독립구조형 태양광 패널의 설치 경사각은 발전효율 및 오염(soiling)을 고려하여 40도 이내로 설치하되,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평지붕 옥상의 독립구조형 패널은 상단부와 하단부의 높이차를 1m이하로 계획한다.		
	나.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지면의 eye-level에서 차폐하고 모듈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다. 경사지붕형은 남향에 접한 지붕에 지붕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라. 평지붕 형태의 모듈 어레이 설치 시 경사각도, 단면각도, 모듈 어레이별 이격거리 등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관리자가 점검 및 유지관리 시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 등의 점검공간을 확보한다.		
	바. 태양광 발전과 연계하여 옥상녹화 및 쿨루프 계획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 벽면 및 발코니 설치 등 수직형	가. 일조환경이 적정할 경우 건물일체형 태양광설비(BIPV)를 최대한 설치할 것를 권장한다.		
	나. 발전효율 및 입면 디자인을 고려하여 경사를 주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위세대별로 개별 설치는 불가하다.		
	라. BIPV, BAPV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 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및 부속물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적용 예외	가. 상기의 기준에 대하여 태양광 생산, 안전, 디자인(미관) 등 특화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심의 등을 통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설치 내용

설비종류	□ 고정식 □ 추적식 □ BIPV □ BIPV 그 외					
설치용량	모듈(kW)			인버터(kW)		
태양광 모듈	모델명		최대출력(kWp)		수량(매)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인증번호			
인버터	모델명		정격용량(kW)		대수(수)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인증번호			
연계방식	□ 자가용 □ 상계처리형 □ 발전사업형					
설치위치	□ 옥상 □벽면 □ 지상 □ 기타 :					
설비면적	패널면적	㎡		수평투영면적	㎡	

[별지 제3호서식]

서울형 지열 · 수열 설비 설치기준 검토서

건축물	건물(사업)명		주 소	
	층 수		연면적	
검토자	회사명		성 명	
	연락처(☎)		이메일	

설치기준 검토 내용

구 분	내 용	적합여부	비고
1. 공통사항	가. 지열 · 수열 설비는 열 공급효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열원과 열교환 방식을 결정하고, 설계한 열 공급효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지중 조건 등 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열 설비의 형식을 선정하고 토양 환경, 지하수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2. 밀폐형 지열 설비	가. 시스템의 냉방 COP는 3.75 이상, 난방 · 급탕 COP는 3.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어홀 사이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이어야 한다.		
3. 개방형 지열 설비	가. 지하수 산출량이 풍부하고 지열공 무너짐이 발생하지 않는 지반(암석대)으로 건축물의 기초 안정성이 확보되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를 계획한다.		
	나. 시스템의 냉방 COP는 3.93 이상, 난방 · 급탕 COP는 3.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지열공 사이의 거리는 최소 10m 이상이어야 하고, 지열공 직경은 상하부 전 구간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라. 지열공 무너짐, 지하수 수위 변화, 순환수 물 넘침, 침전물 퇴적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열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상부 보호장치 설치 등 지열공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을 계획한다.		
4. 수열 설비	가. 시스템의 냉방 COP는 4.38 이상, 난방 · 급탕 COP는 3.29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하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배수관 출구 온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설비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계획한다.		
	다. 열펌프의 열교환기 및 취수측 열교환기는 오염 막힘 방지를 위해 교환 또는 세정이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5. 적용 예외	가. 수열 · 지열의 생산, 안전, 신기술 도입 등으로 위 기준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열 · 수열 의무설치 비율을 완화 또는 면제 적용할 수 있다.		

설치 내용

설비종류	□ 수직밀폐형 □ 지중수평형 □ 에너지파일형 □ 스탠딩컬럼웰형 □ 수열에너지 기술					
설치용량	열펌프(kW)		순환펌프(kW)		기타펌프(kW)	
열펌프	모델명		정격용량(kW)		대수(수)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인증번호		인증일자	
순환펌프	모델명		정격용량(kW)		대수(수)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인증번호		인증일자	
기타펌프	모델명		정격용량(kW)		대수(수)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인증번호		인증일자	

[별지 제4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적용 예정 확인서

1. 사업 개요

신청 건축물	사업명	000 신축공사		
	주용도	공동주택	착공예정일	2023. . .
	연면적	000㎡	준공예정일	2023. . .
	주 소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건축주	성 명 (법인명)	0000(주) 대표이사 000		
	주 소			
작성책임자 (설계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자격번호:			

2. 신청 내용

녹색건축인증	신청인은 신청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으로 예비인증을 취득할 것을 확인합니다.
	인증 접수기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신청인은 신청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ZEB[5]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할 것을 확인합니다.
	인증 접수기관 :
신 청 인	성명: (인)

제출기관 : O O O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완료 확인서

1. 사업 개요

사 업 명	000 신축공사	인 · 허가일자	2022. . (제 호)
건 축 주	0000(주) 대표이사 000		
대지위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도시계획구역	00지구단위계획구역(제2016-000호)		
대지면적	000.00(㎡)	냉난방면적	000.00(㎡)
건축면적	000.00(㎡)	건 폐 율	000.00(%)
연 면 적	000.00(㎡)	용 적 률	000.00(%)
건물규모	지하 00층, 지상 00층	최고높이	000(m)
용 도	00 시설	건물동수	00(동)
시 공 자	00건설(주)	착 공 일	2022.00.00
추진경위	- 2022.00.00. : 건축허가 - 2022.00.00. : 허가변경	건축허가시 적용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000호
제출용도	□ 주거	□ 비주거	
건물등급	□ 가	□ 나	□ 다 □ 라
건 축 행 위	□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	□ 전면 대수선	□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 용도변경 등
한전 파워플래너	고객번호: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 높이	□ 해당없음
작성책임자 (시공사)	소속:	직위:	성명: (인)
최종확인자 (감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2. 이행 완료 확인사항

항 목				적용현황	확인결과
환경 성능	녹색건축인증			그린3등급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EPI 기준	외피 평균 단열 성능[1]	외 벽	0.9점(0.500W/㎡K)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 붕	0.9점(0.095W/㎡K)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바 닥	0.8점(0.140W/㎡K)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밀 성능[1]	창 및 문	0.9점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냉·난방 열원 설비[1]	난 방	1.0점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냉 방	0.9점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관리	에너지모니터링 및 분석[1]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데이터 분석 기능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1] (%)			5.1%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태 양 광 (kW)			합계: kW PV: kW BAPV: kW BIPV: kW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 열 (kW)			밀폐형: kW 개방형: kW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연료전지 (kW)			SOFC: kW PEMFC: kW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태 양 열 (㎡)			평판형: ㎡ 단일진공관형: ㎡ 이중진공관형: ㎡ 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집광채광 (㎡)			프리즘: ㎡ 광덕트: ㎡ 실내루버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수 열 (kW)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타(목재펠릿, 소형풍력 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자립률(ZEB대상) (%)			20%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정 방식	성능 대체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외부 대체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 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내용 미기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업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 '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1단지)' 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고시와 함께 같은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1단지
2. 사업 시행자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심우섭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②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2023. 6. ~ 2028.12.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

Ⅰ. 결정(변경) 취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②,③에 대하여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특별계획구역 ①	4,682.6	송파구 가락동 162	4,682.6	업무시설용지
기정	특별계획구역 ②	5,966.5	송파구 가락동 162	5,966.5	신혼희망타운용지1
변경					공동주택용지1
기정	특별계획구역 ③	14,989.8	송파구 가락동 162	14,989.8	신혼희망타운용지2
	특별계획구역 ④	26,483.9	송파구 가락동 162	26,483.9	공동주택용지
변경	특별계획구역 ③	41,473.7	송파구 가락동 162	41,473.7	공동주택용지2
기정	특별계획구역 ⑤	4,250.8	송파구 가락동 162	4,250.8	청소년교육문화 복합시설용지
변경	특별계획구역 ④				
기정	특별계획구역 ⑥	9,506.9	송파구 가락동 162	9,506.9	문화체육복합시설용지
변경	특별계획구역 ⑤				
기정	특별계획구역 ⑦	5,070.0	송파구 가락동 162	5,070.0	주민소통거점용지
변경	특별계획구역 ⑥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특별계획구역 ②	·명칭변경 - 신혼희망타운용지1 → 공동주택용지1	·신혼부부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미혼, 청년층으로 확대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에 따라 공공주택의 다양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
③	특별계획구역 ③	·특별계획구역 통합 및 명칭변경 - 특별계획구역 ③,④ → 특별계획구역 ③ - 신혼희망타운용지2,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2	·송파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2개의 획지로 분리된 특별계획구역을 하나로 통합 ·특별계획구역 ②와 같이 공공주택의 다양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
④,⑤,⑥	특별계획구역 ④,⑤,⑥	·특별계획구역 도면표시번호 변경	·특별계획구역 ③,④ 통합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변경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 용도계획

■ 획지통합에 따른 도면표시 변경만 있으며 계획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음

2) 건축물 밀도계획(변경없음)

3) 건축물 높이계획

■ 기정

도면표시	최고높이	비 고
①, ②, ③, ④	85m 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⑤, ⑥, ⑦	48m 이하	-

■ 변경

도면표시	최고높이	비 고
①	85m 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②, ③	90m 이하	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준수
④, ⑤, ⑥	48m 이하	-

■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 통	· 도면표시번호 변경	· 특별계획구역 ③,④ 통합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변경
②, ③	· 90m 이하로 변경	· 도시 · 건축의 디자인 혁신을 통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높이 조정

4)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제어기준	
배치	건축한계선	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북측 저층주거지 및 획지②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결정도 참조
		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획지③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③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획지⑥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④	•오금로4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가락현대아파트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획지⑥, ⑦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⑤	•중대로2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획지⑥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북측 저층주거지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⑥	•중대로2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획지⑤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획지③, ④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⑦	•중대로20길변 및 오금로4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획지④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①, ②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이 지정된 경우, 대지와 접한 가로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공개공지 제외)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②~④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이 지정된 경우, 대지와 접한 가로 및 획지 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	
	중저층배치구간 (15층 이하)	②~④	•공공보행통로변(폭 23m구간) •획지⑥~⑦ 인접 건축한계선변(폭 20m 구간) •오금로40길 건축한계선변(폭 18m 구간)	
형태	저층부	①	•오금로38길(북측)에 면한 1층부는 투시형 벽 및 투시형 셔터로 처리함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및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	
		②~④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주동의 지상층에 피로티 설치시 최소 2개층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	
		⑤~⑦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및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	
	입면	②~④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동 입면을 구분한다. - 최상층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이내) - 기준층부(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이내)	
외관	재료/색채	전구역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제어기준	
	담장		•커뮤니티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높이차 등 지형상 여건으로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0.8미터 이하 화목류의 생울타리 및 자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외관	측면이격 공지의 처리	전구역	•일반인의 통행이 항시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며 보행 지장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포장은 개별필지의 주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성하나 이웃 필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야간조명		•투시형 벽면설치 시 내 · 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제어기준	
배치	건축한계선	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북측 저층주거지 및 획지②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결정도 참조
		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획지③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③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오금로4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획지⑤, ⑥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④	•중대로2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획지⑤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북측 저층주거지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⑤	•중대로2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획지④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획지③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⑥	•중대로20길변 및 오금로4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획지③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①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이 지정된 경우, 대지와 접한 가로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공개공지 제외)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②~④	삭 제	
	중층배치구간 (17층 이하)	②	•획지④ 인접 공공보행통로변(폭 23m구간)	
	중저층배치구간 (15층 이하)	③	•획지⑤~⑥ 인접 건축한계선변(폭 20m 구간) •오금로40길 건축한계선변(폭 18m 구간)	
형태	저층부	①	•오금로38길(북측)에 면한 1층부는 투시형 벽 및 투시형 셔터로 처리함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및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	
		②~③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주동의 지상층에 피로티 설치시 최소 1개층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	
		④~⑥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및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	
	입면	②~③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동 입면 특화계획 수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제어기준	
외 관	재료/색채	전구역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한다.	
	담장		•커뮤니티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높이차 등 지형상 여건으로 사업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0.8미터 이하 화목류의 생울타리 및 자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측면이격 공지의 처리		•일반인의 통행이 항시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며 보행 지장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포장은 개별필지의 주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성하나 이웃 필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야간조명		•투시형 벽면설치 시 내 · 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 통	· 도면표시번호 변경	· 특별계획구역 ③,④ 통합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변경
건축한계선	· 위치 도면표시번호 변경 · 계획내용 변경	· 특별계획구역 ③,④ 통합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및 계획내용 변경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 ② 구역 삭제	· 도시 · 건축의 디자인 혁신을 통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② 구역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삭제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 삭제	· 도시 · 건축의 디자인 혁신을 통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삭제
중층배치구간	· 신설 · ② 구역 적용	· 준주거지역의 효율적인 건축배치를 유도하고, 도시 · 건축의 디자인 혁신을 통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층배치구간 신설 · 당초 중저층배치구간(15층 이하) 계획을 고려하여 2개층 추가
중저층배치구간	· ② 구역 삭제	· 중층배치구간의 신설로 인한 높이계획 구분
저층부	· 피로티 설치기준 변경 - 최소 2개층 이상 확보 → 최소 1개층 이상 확보	· 피로티를 1개층 높이로 확보하여도 채광 및 통풍 등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공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입면	· 주거동 입면을 구분 → 주거동 입면 특화계획 수립	· 도시 · 건축의 디자인 혁신을 통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동 입면 구분이 아닌 입면특화계획 수립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제어기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전 구역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단, 획지④의 5m 전면공지 일부는 차도부속형(2m) 및 보도부속형(3m)으로 조성) •기존보도 및 차도와 연계하여 단차 없이 조성	
	공개공지	①,⑤,⑥,⑦	•공개공지 면적은 최소 45㎡이상, 폭 5m이상 확보 •전면공지와 중복 가능	지침도 참조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②	•북측 주거지와 남측 공공시설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③	•북측 주거지와 남측 공동주택단지, 학교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④	•북측 주거지와 남측 공동주택단지, 학교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저층주거지와 오금공원 연계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시종점은 유지하되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선형변경 및 연계 조정 가능	
	보차혼용통로	⑥,⑦	•공동주택용지와 저층주거지 보행연계 및 획지⑥과 획지⑦의 주차 진출입을 위한 보차혼용통로(폭 8m) 공동 설치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제어기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전 구역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단, 획지③의 5m 전면공지 일부는 차도부속형 및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기존보도 및 차도와 연계하여 단차 없이 조성	
	공개공지	①,④,⑤,⑥	•공개공지 면적은 최소 45㎡이상, 폭 5m이상 확보 •전면공지와 중복 가능	지침도 참조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②	•북측 주거지와 남측 공공시설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③	•북측 주거지와 남측 공동주택단지, 학교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저층주거지와 오금공원 연계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시종점은 유지하되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선형변경 및 연계 조정 가능	
	보차혼용통로	⑤, ⑥	•공동주택용지와 저층주거지 보행연계 및 획지⑤과 획지⑥의 주차 진출입을 위한 보차혼용통로(폭 8m) 공동 설치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 통	· 도면표시번호 변경	· 특별계획구역 ③,④ 통합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변경
전면공지	· 차도부속형 및 보도부속형 전면공지의 지정 폭원 삭제	·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폭원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정 폭원 삭제
공공보행 통로	· 시·종점 및 선형 변경	· 도시·건축의 디자인 혁신을 통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보행 통로 시·종점 및 선형 변경

2) 교통처리계획

■ 획지통합에 따른 도면표시 변경만 있으며 계획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음

3)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공공기여계획

■ 획지통합에 따른 도면표시 변경만 있으며 계획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음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특별계획구역 ①	송파구 가락동 162	4,682.6	
기 정	특별계획구역 ②	송파구 가락동 162	5,966.5	
기 정	특별계획구역 ③	송파구 가락동 162	14,989.8	
	특별계획구역 ④	송파구 가락동 162	26,483.9	
변 경	특별계획구역 ③	송파구 가락동 162	41,473.7	
기 정	특별계획구역 ⑤	송파구 가락동 162	4,250.8	
변 경	특별계획구역 ④			
기 정	특별계획구역 ⑥	송파구 가락동 162	9,506.9	
변 경	특별계획구역 ⑤			
기 정	특별계획구역 ⑦	송파구 가락동 162	5,070.0	
변 경	특별계획구역 ⑥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특별계획구역 ①(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②(기정:신혼희망타운용지1 → 변경:공동주택용지1)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②	좌 동
면 적			5,966.5㎡	좌 동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좌 동
건축물 용도	불 허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좌 동
	지정	주거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좌 동
		주거외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차량),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좌 동
	1층 권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좌 동
건폐율			•60% 이하	좌 동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허용 280% 이하 / 상한 400% 이하 ※ 先 공공기여계획 이행을 통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120%)는 달성된 것으로 봄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며, 최종 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주거외 용도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	좌 동
건축물 높이			•85m 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90m 이하(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준수)
배치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획지③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좌 동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이 지정된 경우, 대지와 접한 가로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	삭 제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이 지정된 경우, 대지와 접한 획지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	삭 제
	중저층 배치구간		•획지⑤ 인접부 공공보행통로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23m 지정	삭 제
	중층 배치구간	신 설	-	•획지④ 인접부 공공보행통로로부터 중층 배치구간(17층) 폭 23m 지정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 통로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위치지정)	좌 동
교통처리계획			•오금로38길변(북측)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 동
기타사항			•신혼희망타운과 공동주택용지가 하나의 조화 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스카이라인 고려	•공동주택용지1과 공동주택용지2가 하나의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스카이라인 고려

3) 특별계획구역 ③(기정:신혼희망타운용지2, 공동주택용지 → 변경:공동주택용지2)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③	④	③
면 적		14,989.8㎡	26,483.9㎡	41,473.7㎡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좌 동
건축물 용도	불 허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좌 동
	지 정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좌 동
건폐율		•50% 이하		좌 동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허용 220% 이하 / 상한 250% 이하 ※ 先 공공기여계획 이행을 통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30%)는 달성된 것으로 봄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며, 최종 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 동
건축물 높이		•85m 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90m 이하(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준수)
배치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획지⑥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오금로4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가락현대아파트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획지⑥, ⑦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오금로4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획지⑤, ⑥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이 지정된 경우, 대지와 접한 가로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		삭 제
	중저층배치 구간(15층)	•획지⑥ 인접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20m 지정	•획지⑥, ⑦ 인접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20m 지정 •오금로40길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18m 지정	•획지⑤, ⑥ 인접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20m 지정 •오금로40길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18m 지정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폭 8m) 설치 (위치지정)	•북측 주거지와 남측 학교, 공동주택단지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저층주거지와 오금공원 연계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폭 8m) 설치 ※ 시종점은 유지하되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선형변경 및 연계 조정 가능	•북측 주거지와 남측 학교, 공동주택단지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저층주거지와 오금공원 연계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폭 8m) 설치 ※ 시종점은 유지하되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선형변경 및 연계 조정 가능
교통처리계획		•신설도로(8m)변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오금로40길변, 신설도로(8m)변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오금로40길변, 신설도로(8m)변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기타사항		•신혼희망타운과 공동주택용지가 하나의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스카이라인 고려 •신혼희망타운과 공동주택용지 사이는 담장 등으로 막히지 않도록 계획		•공동주택용지1과 공동주택용지2가 하나의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스카이라인 고려

4) 특별계획구역 ④(기정:특별계획구역⑤ → 변경:특별계획구역④)

■ 획지통합에 따른 도면표시 변경만 있으며 계획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음

5) 특별계획구역 ⑤(기정:특별계획구역⑥ → 변경:특별계획구역⑤)

■ 획지통합에 따른 도면표시 변경만 있으며 계획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음

6) 특별계획구역 ⑥(기정:특별계획구역⑦ → 변경:특별계획구역⑥)

■ 획지통합에 따른 도면표시 변경만 있으며 계획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옛 성동구치소 부지 특별계획구역②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5,966.5	-	5,966.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5,966.5	-	5,966.5	100.0	
	준주거지역	5,966.5	-	5,966.5	100.0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가구번호	위치	면적(㎡)	가구번호	위치	면적(㎡)	
특별계획구역	②	가락동 162	5,966.5	②	가락동 162	5,966.5	
	공동주택용지1			좌 동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불허 ·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좌 동	
	지정용도	주거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좌 동	
		주거 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차량),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좌 동	

주) 1층 주차장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의 30%이상 계획해야 함
주) 주거 외 용도는 용적률의 10%이상 계획해야 함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밀도	건폐율	•60% 이하	좌 동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허용 280% 이하 / 상한 400% 이하	좌 동	

(2) 높이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높이	•90m 이하(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준수)	좌 동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배치	건축 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획지③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좌 동	
	중층 배치구간 (17층 이하)	•공공보행통로변(폭 23m구간)	좌 동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기존보도 및 차도와 연계하여 단차 없이 조성	좌 동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좌 동	

(2)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지침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 불허공간	•오금로38길변(북측)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 동	

4.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좌 동	
건축용도	불허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좌 동	
	지정	주거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좌 동	
		주거외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차량),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층 권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좌 동	
밀도	건폐율		•60% 이하	좌 동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허용 280% 이하 / 상한 400% 이하	좌 동	
높이			•90m 이하(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준수)	좌 동	
배치	건축 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획지③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좌 동	
	중층 (17층)		•획지④ 인접부 공공보행통로로부터 중층 배치구간(17층) 폭 23m 지정	좌 동	
대지내 통로	공공 보행 통로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위치지정)	좌 동	
교통처리 계획			•오금로38길변(북측)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 동	
기타사항			•공동주택용지1과 공동주택용지2가 하나의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스카이라인 고려	좌 동	

Ⅲ. 제8차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2024.10.15.)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련도면은 관계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 관련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구역계획 ②에 관한 지침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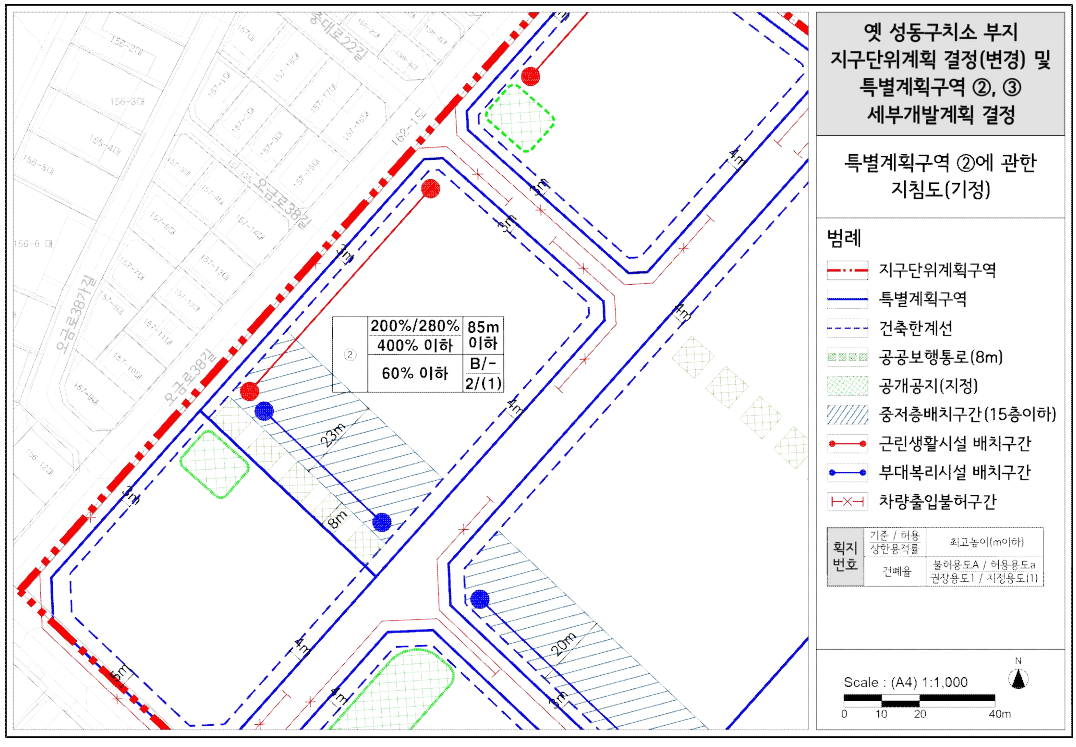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②에 관한 지침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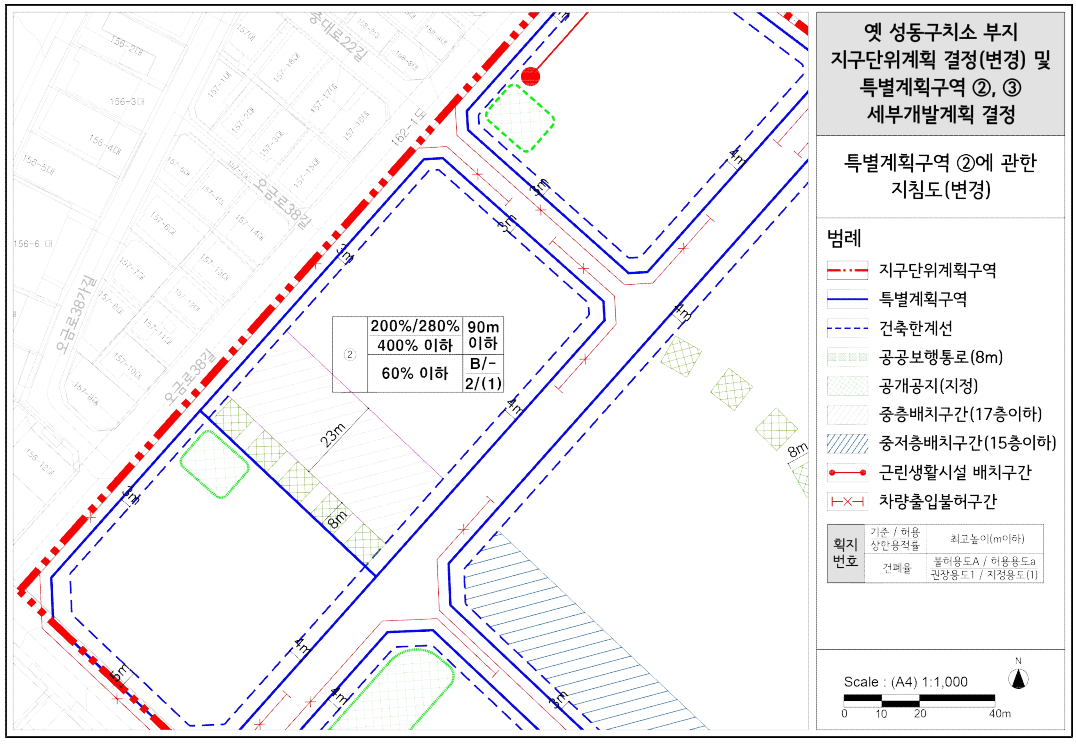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③,④에 관한 지침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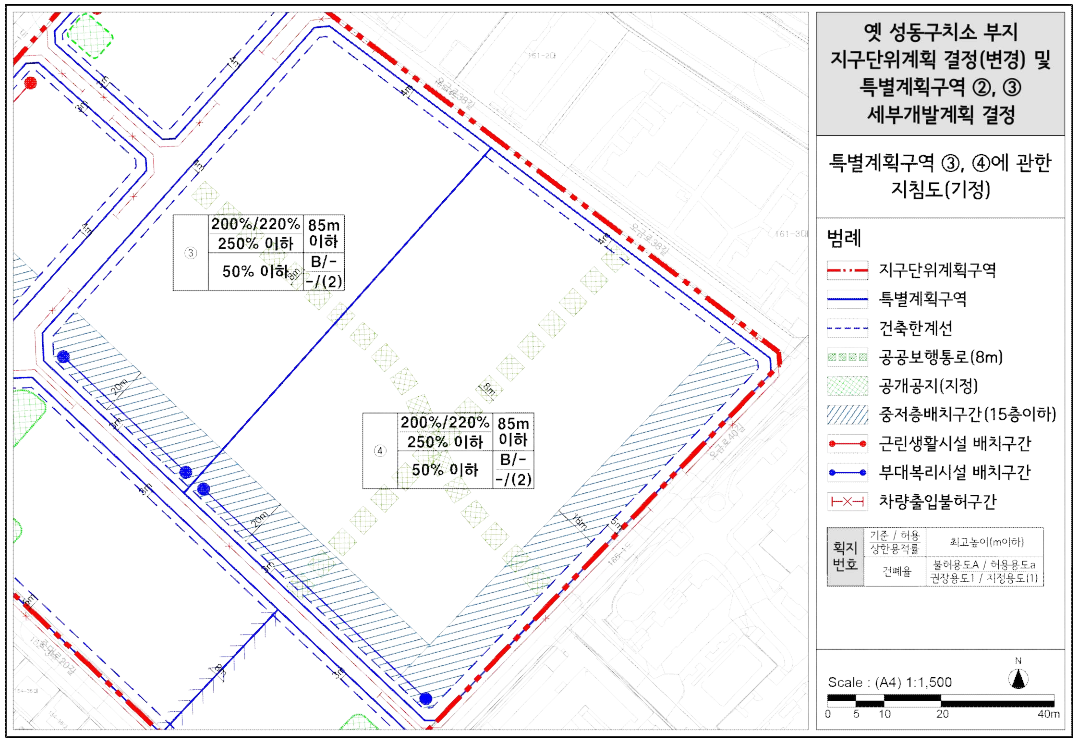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③에 관한 지침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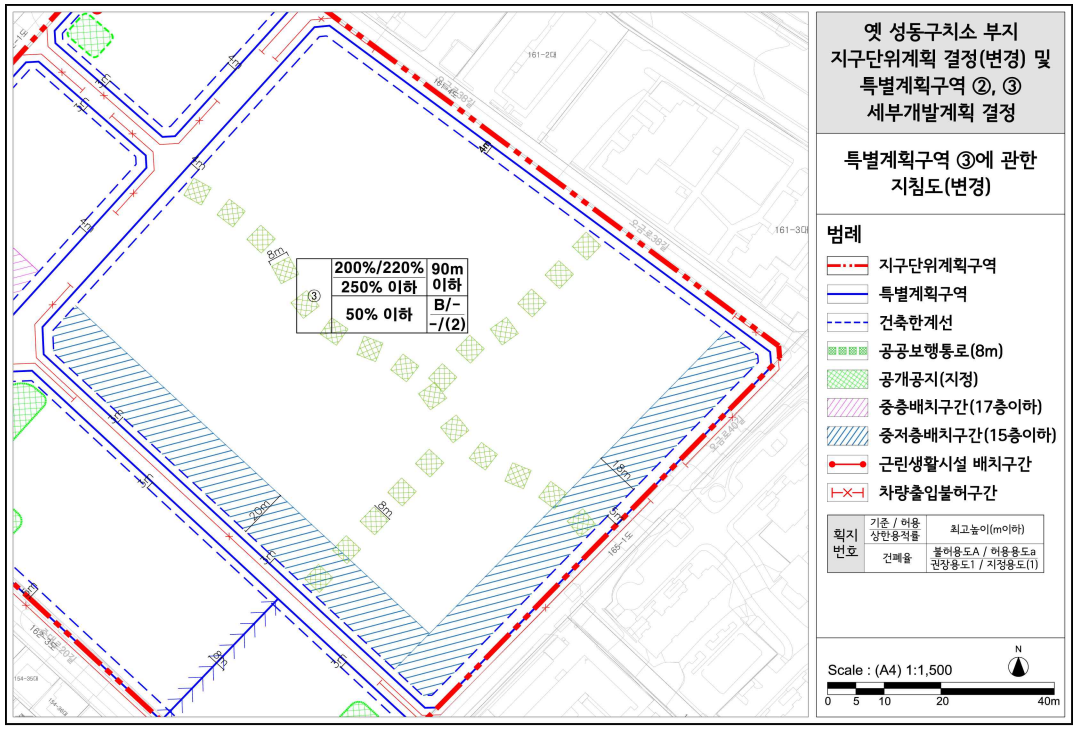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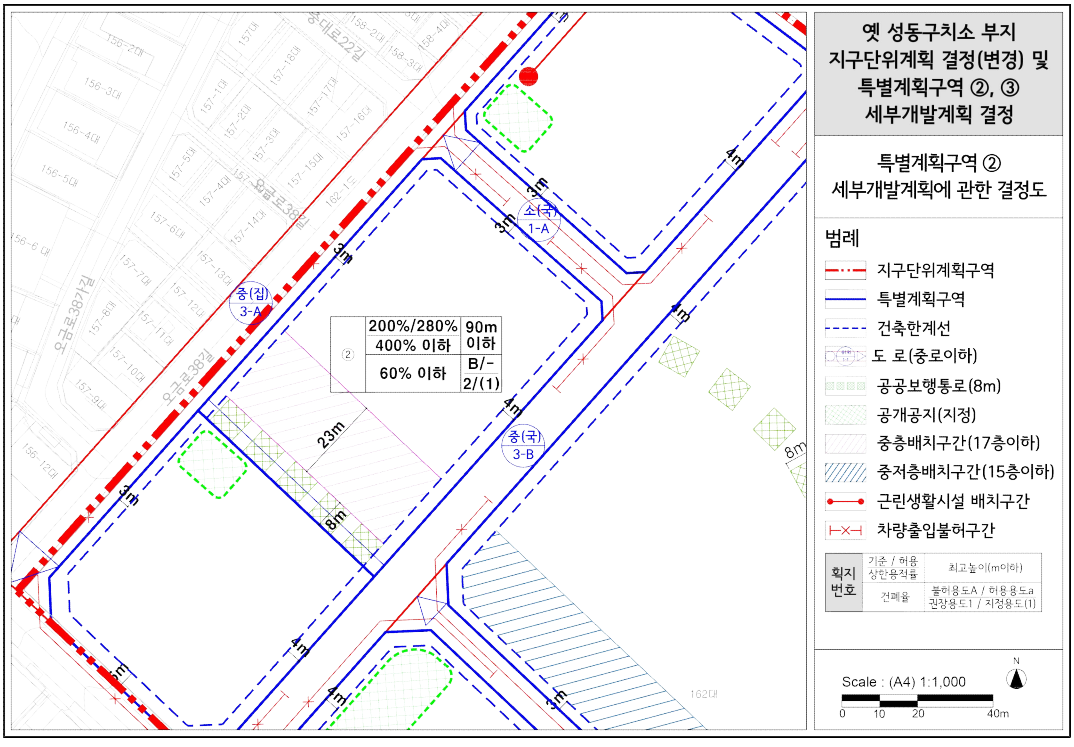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② 대 지 면 적 (㎡)			5,966.50 ㎡	
③ 건 축 면 적 (㎡)			3,050.29 ㎡	
④ 건축 연면적 (㎡)			36,785.50 ㎡	
⑤ 건 폐 율 (%)			51.27 %	
⑥ 용 적 률 (%)			398.56 %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2개동 / 지하3층 / 지상22층	
	주택 형별	공공분양, 장기전세 (Ⅰ·Ⅱ)	49㎡형 : 122대, 59㎡형 : 84대, 84㎡형:35대	241대
⑧ 사 업 기 간			2023. 06. ~ 2028. 12.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297대** (근생주차 20대 포함), 면적 : 10,888.46㎡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89.72 ㎡	
	용역원휴게실		28.68 ㎡	
	경비실		17.01 ㎡	
	MDF실		33.70 ㎡	
	발전기실		32.96 ㎡	
	방재실		43.67 ㎡	
	통신실		19.18 ㎡	
	전기실		181.55 ㎡	
	펌프실		199.38 ㎡	
	신재생에너지펌프실		24.61 ㎡	
	우수저류조		49.23 ㎡	
	정화조/저류조 관리층		78.80 ㎡	
	제연휀룸		56.17 ㎡	
	휀룸		73.98 ㎡	
	쓰레기보관소		128.36 ㎡	
	재활용보관소		51.60 ㎡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계절창고	574.43 ㎡	
	창고	38.36 ㎡	
	경로당	103.23 ㎡	주민 공동 시설
	키즈스테이션	34.13 ㎡	
	피트니스	208.24 ㎡	
	부대복리시설(공용)	181.17 ㎡	
⑩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1,973.87㎡	전용면적
	근린생활시설(공용)	470.60㎡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⑪ 단위 세대 면적	공공 분양, 장기 전세 (Ⅰ·Ⅱ)	241 세대	49A	44	49.25	24.24	73.49	9.20	118.58	
			49B	78	49.01	24.39	73.40	9.16	118.27	
			59A	44	59.30	28.33	87.63	11.08	141.92	
			59B	40	59.30	28.51	87.81	11.08	142.10	
			84A	15	84.91	39.62	124.53	15.87	202.27	
			84B	20	84.28	40.00	124.28	15.75	201.44	

※ 주택형별 세부 공급 유형은 향후 변동 될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3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업 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특별계획구역 ③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 '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2단지)' 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고시와 함께 같은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2단지
2. 사업 시행자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③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2023. 6. ~ 2028.12.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특별계획구역 ③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변경없음)
※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업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호)에 따름

[2] 특별계획구역 ③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옛 성동구치소 부지 특별계획구역③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41,473.7	-	41,473.7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41,473.7	-	41,473.7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41,473.7	-	41,473.7	100.0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가구번호	위치	면적(㎡)	가구번호	위치	면적(㎡)	
특별계획구역	③	가락동 162	41,473.7	③	가락동 162	41,473.7	
	공동주택용지2			좌 동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불허 ·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좌 동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좌 동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밀도	건폐율	•50% 이하	좌 동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허용 220% 이하 / 상한 250% 이하	좌 동	

(2) 높이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높이	•90m 이하(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준수)	좌 동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배치	건축 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오금로4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획지⑤, ⑥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좌 동	
	중저층배치 구간(15층)	•획지⑤, ⑥ 인접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20m 지정 •오금로40길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18m 지정	좌 동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단, 5m 전면공지 일부는 차도부속형 및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기존보도 및 차도와 연계하여 단차 없이 조성	좌 동	
공공보행 통로	•북측 주거지와 남측 학교, 공동주택단지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저층주거지와 오금공원 연계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폭 8m) 설치 ※ 시·종점은 유지하되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선형변경 및 연계 조정 가능	좌 동	

(2)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지침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 불허공간	•오금로40길변, 신설도로(8m)변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 동	

4. 특별계획구역 ③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좌 동	
건축용도	불허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좌 동	
	지정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밀도	건폐율	•50% 이하	좌 동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허용 220% 이하 / 상한 250% 이하	좌 동	
높이		•90m 이하(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준수)	좌 동	
배치	건축 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오금로4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획지⑤, ⑥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좌 동	
	중저층 (15층)	•획지⑤, ⑥ 인접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20m 지정 •오금로40길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18m 지정	좌 동	
대지내 통로	공공 보행 통로	•북측 주거지와 남측 학교, 공동주택단지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저층주거지와 오금공원 연계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 사종점은 유지하되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선형변경 및 연계 조정 가능	좌 동	
교통처리계획		•오금로40길변, 신설도로(8m)변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 동	
기타사항		•공동주택용지1과 공동주택용지2가 하나의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스카이라인 고려	좌 동	

Ⅰ. 제8차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2024.10.15.)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Ⅱ.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련도면은 관계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 관련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계획구역 ③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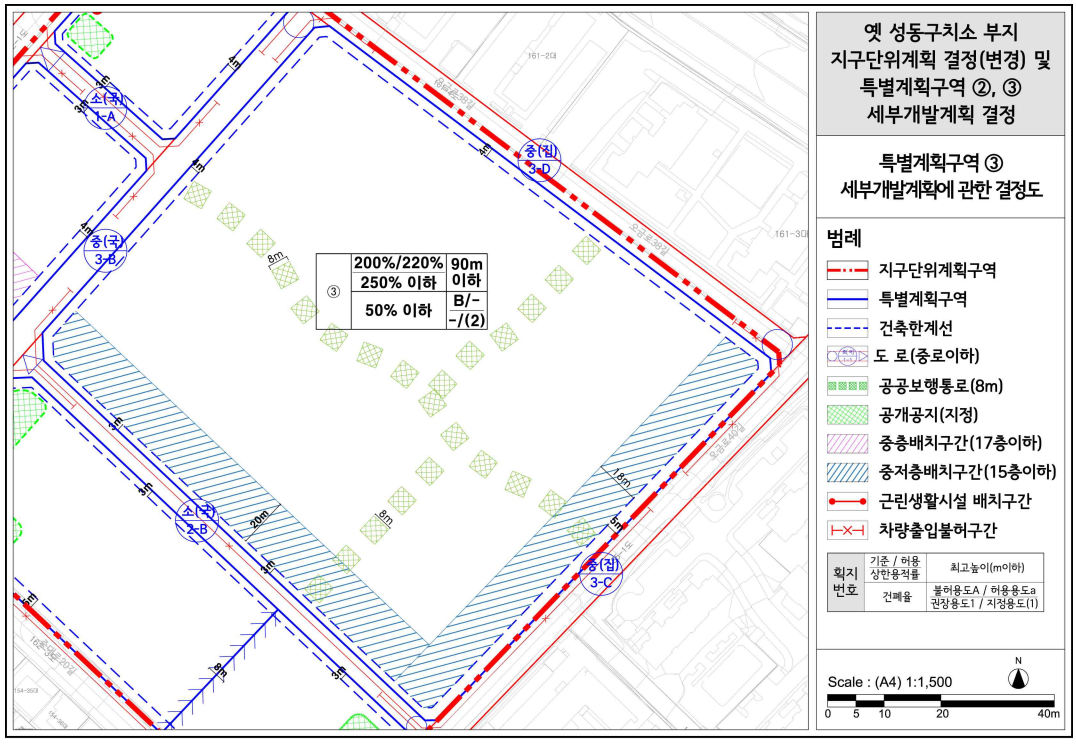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② 대 지 면 적 (㎡)			41,473.70 ㎡	
③ 건 축 면 적 (㎡)			12,233.52 ㎡	
④ 건축 연면적 (㎡)			163,115.47 ㎡	
⑤ 건 폐 율 (%)			29.50 %	
⑥ 용 적 률 (%)			247.25 %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7개동 / 지하3층 / 지상20층	
	주택 형별	공공분양, 장기전세 (Ⅰ·Ⅱ)	49㎡형: 65세대, 59㎡형: 589세대, 84㎡형: 345세대	999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3. 06. ~ 2028. 12.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1,353대**(근생 5대 포함), 면적 : 51,247.56㎡	부대 시설
	경로당		232.18 ㎡	
	경로당(활동실)		98.94 ㎡	
	경비실-1		31.65 ㎡	
	경비실-2		37.11 ㎡	
	공용화장실-1		46.14 ㎡	
	공용화장실-2		35.69 ㎡	
	공용화장실-3		52.64 ㎡	
	공용화장실-4		63.35 ㎡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숙직실		231.91 ㎡	
	발전기실		88.05 ㎡	
	비상 발전기실		121.38 ㎡	
	세대창고		2,357.95 ㎡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어린이집	480.39 ㎡	
	연료전지실	33.48 ㎡	
	용역휴게실	32.98 ㎡	
	우수조관리층	68.27 ㎡	
	작은도서관	162.33 ㎡	
	작은도서관 (열람실)	76.41 ㎡	
	재활용품보관창고	225.88 ㎡	
	전기실	194.56 ㎡	
	펌프실	225.75 ㎡	
	화생방집단보호시설	2,219.63 ㎡	
	피트니스-1	96.42 ㎡	주민 공동 시설
	피트니스-2	82.61 ㎡	
	피트니스-3	100.31 ㎡	
	피트니스-4	272.88 ㎡	
	피트니스-5	111.56 ㎡	
	키즈스테이션-1	63.15 ㎡	
	키즈스테이션-2	56.11 ㎡	
	다목적회의실	42.36 ㎡	
	입주민카페	84.23 ㎡	
	디지털미디어실	74.65 ㎡	
	게스트하우스	73.32 ㎡	
	가족카페	127.33 ㎡	
	다함께돌봄센터	114.45 ㎡	
	주민건강지원실	86.88 ㎡	
	독서실	206.98 ㎡	
	우리동네미술관	75.69 ㎡	
	만남의 광장	223.63 ㎡	
	실내놀이터	152.28 ㎡	
⑩ 근린생 활시설	근린생활시설	760.56 ㎡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⑬ 단위 세대 면적	공공 분양, 장기 전세 (Ⅰ·Ⅱ)	999 세대	49A	65	49.30	22.90	72.20	9.18	118.92	
			59A	69	59.71	27.74	87.45	11.12	144.04	
			59A1	22	59.71	27.74	87.45	11.12	144.04	
			59A2	20	59.71	27.74	87.45	11.12	144.04	
			59A3	6	59.71	27.74	87.45	11.12	144.04	
			59B	123	59.33	27.56	86.89	11.04	143.12	
			59C	4	59.20	27.50	86.70	11.02	142.81	
			59C1	31	59.20	27.50	86.70	11.02	142.81	
			59C2	31	59.20	27.50	86.70	11.02	142.81	
			59D	13	59.44	27.61	87.05	11.07	143.39	
			59E	205	59.00	27.41	86.41	10.98	142.32	
			59E1	29	59.00	27.41	86.41	10.98	142.32	
			59E2	18	59.00	27.41	86.41	10.98	142.32	
			59E3	4	59.00	27.41	86.41	10.98	142.32	
			59E4	8	59.09	27.45	86.54	11.00	142.54	
			59F	6	59.90	27.83	87.73	11.15	144.50	
			84A	43	84.63	39.32	123.95	15.76	204.15	
			84A1	18	84.63	39.32	123.95	15.76	204.15	
			84A2	13	84.63	39.32	123.95	15.76	204.15	
			84A3	16	84.63	39.32	123.95	15.76	204.15	
			84B	156	84.64	39.32	123.96	15.76	204.18	
			84B1	8	84.64	39.32	123.96	15.76	204.18	
			84B2	13	84.64	39.32	123.96	15.76	204.18	
			84B3	33	84.64	39.32	123.96	15.76	204.18	
			84B4	16	84.37	39.20	123.57	15.71	203.53	
			84B5	12	84.73	39.37	124.10	15.78	204.39	
			84C	17	84.66	39.33	123.99	15.76	204.23	

※ 주택형별 세부 공급 유형은 향후 변동 될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4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시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수교육”이란 보유자등이 시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
3. “전승활동”이란 보유자등과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시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 전수교육”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을 “조례 제37조제1항 각 호의”로, “이상”을 “이상 보유자등 본인 주관 또는 시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공개에”를 “공개행사에”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무형유산의 기능·예능 공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서울특별

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앞의 “제2장 공개”를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공개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를 “공개행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행사 시작일”로,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 계획”을 “공개행사 계획”으로, “공개 변경신청서”를 “공개행사 변경 신청서”로, “공개 취소신청서”를 “공개행사 취소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을 “공개행사를 마친 후에는 공개행사 마지막 날”로,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비용 집행 정산서류”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전단 중 “일반시민”을 “일반 시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후단 중 “각각의 공개”를 “각각 공개를 한 것으”로, “일반시민”을 “일반 시민”으로,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공개 예정 보유자등의 종목 외의”로,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로만 인정한다”를 “있으나, 이 경우에는 초청된 보유자등의 공개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실시함을 원칙으로”를 “공개행사를 진행하여야”로, “일반시민”을 “일반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은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등은 공개 기간 중 관람객 질의응답 등 관람객 대응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에는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상물은 10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되, 공정별로 편집하고 설명문을 삽입하는 등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공개”를 “공개행사”로, “이에”를 “공개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유자등의 단독 주관의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될”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유자등이 단독 주관으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로, “시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를 “시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해”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모니터링)”을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공개행사에 대해 점검”으로, “위탁”을 “점검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등교육법」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니터링을 위하여”를 “점검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니터링의”를 “점검 평가서”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공개행사에 대한 점검”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제37조제1항 각 호의 공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전수교육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출결관리일지”를 “출결관리 일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해”를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필요시 규칙 별지 제13의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제출 할”을 “제출할”로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전수교육 비용 지원)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 제2항제1호 중 “공개 모니터링”을 “공개행사 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제4장의 제목 “지원 제한”을 “포상 및 지원 제한”으로 한다.

제4장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보유자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공개 또는 전승활동 실적 등의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지원 제한) 시장은 보유자등이 공개행사 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계획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시	년 월 일 시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 승 교 육 사		
	이 수 자		
	전 수 생		
소요예산	금 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뒤쪽)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 참관 대상자 및 행사 세부일정 등)	
3. 공개행사 소요예산내역	

지출항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비 고 (시비/자부담 등)
합계			

※ 첨부 : 비용 신청서 및 통장사본

○ 첨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비용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신청자</td><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기관명</td><td></td><td>담당자</td><td></td></tr>
<tr><td>대표자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고유번호
(사업자번호)</td><td></td></tr>
<tr><td>신청액</td><td colspan="4">금 원(₩)</td></tr>
<tr><td rowspan="2">총행사비
(단위:천원)</td><td>계</td><td>시비</td><td>자부담</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은행정보</td><td colspan="4">○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td></tr>
</table>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변경 신청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 기재 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취소 신청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시	년 월 일 시		
공개장소			
취소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시	년 월 일 시		공개장소	
출연자	보 유 자			
	전승교육사			
	이 수 자			
	전 수 생			
집행금액	계	시비	자체부담	기타
관람인원	명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뒤쪽)

1.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2.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구 분	인 원	출 연 자 명 단

3.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점검 평가서

【공개개요】

지정번호/명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 』			
조사자	성명		(인)	주관자	
	소속				
기 간		OOOO. . . ~ OOOO . . .		시비 지원액	
장 소					

【확인사항】

항 목		확 인 사 항	유	무
기획	언론홍보	– 인터넷 뉴스 기사로 확인 가능 ※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등의 매체인 경우 (유)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		
	포스터 또는 현수막	– 현수막 1개 설치 또는 포스터 제작 및 관련기관 배포 ※ 공개용 포스터이어야 함		
	리플렛	– 공개행사명 기재 여부 확인		
		– 시간, 날짜, 장소 기재 여부 확인		
		– 해당 종목 소개 기재 여부 확인		
		– 프로그램 순서 기재 여부 확인		
		– 출연진 명단 및 사진 기재 여부 확인		
행사 참여	보유자	– 보유자는 행사 당일 ○○○ 역할을 담당함		
		– 보유자는 행사 당일 ○○시 ○○분을 공연 및 시연함		
	전승교육사	– 전승교육사는 행사 당일 ○○○ 역할을 담당함		
		– 전승교육사는 행사 당일 ○○시 ○○분을 공연 및 시연함		

【평 가 표】

항목	평 가 사 항		평가점수
기획 (20)	사업 계획서 (15)	– 공개행사 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 행사명, 행사의의, 일시, 장소, 참여자 명단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 구분) · 행사기대 효과 **※ 별첨 1 양식에 따라 참석자 기재**	SS(매우탁월,100%) S(탁월,90%) A(우수,80%) B(보통,70%), C(미흡,60%) D(다소미흡,50%) F(매우미흡,40%)
	준비 (5)	– 악기·의물·재료·도구·시설 등의 공개 준비의 적절성	SS(매우탁월,100%) S(탁월,90%) A(우수,80%) B(보통,70%), C(미흡,60%) D(다소미흡,50%) F(매우미흡,40%)
행사 (70)	장소 (10)	– 행사장의 실연 적정성(정성평가) – 핵심기능의 실연에 적정한 장소인가(전승지역 및 종목 특성에 적합한 무대) – 일반인의 접근 및 관람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인가	SS(매우탁월,100%) S(탁월,90%) A(우수,80%) B(보통,70%), C(미흡,60%) D(다소미흡,50%) F(매우미흡,40%)
	실연내용 평가 (60)	**※ 별첨 2의 분야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평가지표에 의함**	SS(매우탁월,100%) S(탁월,90%) A(우수,80%) B(보통,70%), C(미흡,60%) D(다소미흡,50%) F(매우미흡,40%)
호응 (10)	관람객 수 및 관람객의 관심도	– 관람객 수 및 관람객의 호응도 – 관람객의 관심도 평가(정성평가)	SS(매우탁월,100%) S(탁월,90%) A(우수,80%) B(보통,70%), C(미흡,60%) D(다소미흡,50%) F(매우미흡,40%)
100점			
총평	전체 평가	–조사자 총평(서술형으로 작성) ① 전체 실연행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실연 진행/ 실연내용 설명/ 관람객 대응) ② 보유자 및 전승자의 기·예능 실연능력 수준 – 보유자등이 전수교육 및 공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기술 ③ 해당 종목 공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첨부	** 확인사항 증빙자료로 이미지 자료 제출 – 언론보도, 포스터, 리플릿, 공개 사진 이미지 4컷		

※별첨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참석자 현황

구분	성명	성별	기 · 예능	참여 여부 (○,×)	공개행사 내 역할 및 특기사항
보유자					
전승 교육사					
이수자					

※ 별첨 2

분야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평가지표

가. 음악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50점)	창법·연주법의 전통성(5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15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25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공력의 깊이(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나. 무용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점)	춤 동작의 전통성(4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복식의 전통성(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춤의 미적 완성도(50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3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공간과 춤의 어울림(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춤과 음악의 어울림(10점)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다. 놀이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점)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50점)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15점)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라. 연극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점)	연극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50점)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능력(35점)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15점)	등급 / SS (매우탁월) / S (탁월) / A (우수) / B (보통) / C (미흡) / D (다소미흡) / F (매우미흡)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마. 음식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40점)	음식 차림 및 장식의 적합성(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식기구 사용의 적절성 (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2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기능적 숙련도 및 음식의 완성도(60점)	조리기술의 숙련도 및 조리법 묘사 능력(4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및 음식사이의 조화(2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바. 의식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점)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5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악기 연주, 춤,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3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의례 소도구 제작 능력(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사. 무예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40점)	호흡, 형, 투로의 구현 및 이해도 (4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40점)	호흡, 형, 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4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특수성(20점)	공격과 방어, 특수기예와 관련한 특이성(2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아. 공예기술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전통에 근거한 표현여부 (25점)	재료의 적합성(1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공정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15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기능의 숙련도(50점)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50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완성품의 심미성·가치성·기능성 (25점)	완성품의 심미성·가치성·기능성 정도(25점)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

(제 호)

교육구분	정기교육 / 특별교육
교육날짜	년 월 일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지도자	

출 석 현 황

전승구분 (이수자/전수생)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입문일	기예능	출석여부

※ 첨부 : 매회 전수교육증빙자료(사진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제3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 ---------- ------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 ----------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공개”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시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전수교육”이란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시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가르치고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시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수교육”이란 보유자등이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	시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시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3. “전승활동”이란 보유자등과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시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적용 범위) 시무형유산의 기능·예능 공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개	<삭 제>
<신 설>	제2장 공개
제3조(공개 주관) ① 보유자등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해	제4조(공개 주관) ① ---------조례 제37조제1항 각 호의 ----------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그 기능·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 -- 이상 보유자등 본인 주관 또는 시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
② 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 ---------- 전승교육사----- ---------- 공개행사에 ----------.
제4조(공개 절차) ①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능·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절차) ① ---------- ---------- ---------- -- 공개행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행사 시작일 -----이하 ---------- --------.
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공개행사 계획---------- ---------- ----- 공개행사 변경 신청서 - ---------- 공개행사 취소 신청서----------.
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공개행사를 마친 후에는 공개행사 마지막 날--- ----------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비용 집행 정산서류----------.

제5조(공개 방법)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개 방법) ① ----------.
1. 공개 기간: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등이 정하되, 일반시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한다. 다만 기능 종목의 경우 완성된 공예품을 최소 3일 이상 전시하여야 한다.	1. ---------- 일반 시민----------.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개 주체: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다.	3. ---------- 전승교육사 ----------. -- 전승교육사 ----------.
4. 합동 공개: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한다. 다만 공개의 편의 또는 일반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유	4. ---------- ----------. ---------- 각각 공개를 한 것으---------- 일반 시민--- 위해서 필요에 따라 공개 예정 보

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로만 인정한다.	유자등의 종목 외의 ---------- 있으나, 이 경우에는 초청된 보유자등의 공개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공개 장소: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의 일반시민이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 ---------- -- 공개행사를 진행하여야 -- ---------- 일반 시민----- ---------- ---------- -----.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은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등은 공개 기간 중 관람객 질의응답 등 관람객 대응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에는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상물은 10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작하되, 공정

	별로 편집하고 설명문을 삽입하는 등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비용) ① 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통해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시장은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행사규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개 비용) ① ---------- 공개행사 ------- 공개에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개 후원) ① 시장은 종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유자등의 단독 주관의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등과 협의하여 시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공개 장소의 알선, 합동 공개 기획 및 그 진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개 후원) ① ---------- -------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유자등이 단독 주관으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 시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해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모니터링) ① 시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 ---- 공개행사에 대해 점검--- ---------- ---------- ------- 점검을 위탁--.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1. 국가유산 ----------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고등교육법」 제2조------ 국가유산 ----------
② 시장은 공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② ---------- 점검을 위해 ----------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 점검 평가서 ----------
제9조(자료관리) 시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자료관리) ---------- 공개행사에 대한 점검 ----------
제10조(공개 촉구) 시장은 조례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보유자등에 대해서는	제11조(공개 촉구) ---------- 제37조제1항 각 호의 공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않는 ----------

그 공개를 촉구하여야 한다.	----------.
제3장 전수교육	<삭 제>
<신 설>	제3장 전수교육
제11조(전수교육 이행) ① (생략)	제12조(전수교육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 ---------- -------- 출결관리 일지---------- ---.
③ 보유자등은 규칙 제18조에 따라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 ---. 시장은 필요시 규칙 별지 제13의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전수교육 증빙 등의 전자문서) 보유자등은 전수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전수교육 증빙 등의 전자문서) ---------- ---------- -------- 제출할 -------.
	제14조(전수교육 비용 지원)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3조(전수교육 점검) ① (생략)	제15조(전수교육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
1. 공개 모니터링 결과 실연내용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평가된 경우	1. 공개행사 점검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지원 제한	제4장 포상 및 지원 제한
<신 설>	제16조(포상) 시장은 보유자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공개 또는 전승활동 실적 등의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제한) ① 시장은 보유자등이 공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제17조(지원 제한) 시장은 보유자등이 공개행사 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

진행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공개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날짜		공개장소	
출연자	보 유 자		
	전수교육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소요예산	금 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계획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자	년 월 일 시	공개장소	
출연자	보 유 자		
	전수교육사		
	이 수 자		
	전 수 생		
소요예산	금 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목록]

1. 공개 행사명	
2. 공개 세부계획(공개 참관 대상자 및 행사 세부일정 등)	
3. 공개 소요예산내역	

지출항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비 고 (서비/차프림 등)
합계			

※ 첨부 : 비용 신청서 및 통장사본

[목록]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 참관 대상자 및 행사 세부일정 등)	
3. 공개행사 소요예산내역	

지출항목	금액 (근육권용)	산출내역	비 고 (서크/자부담 등)
합계			

※ 첨부 : 비용 신청서 및 통장사본

○ 첨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비용 신청서

신청자	주소			
	기관명		담당자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자번호)	
신청액	금 원(₩)			
총행사비 (단위:천원)	계	시비	지부금	기타
은행정보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특상지(80g/㎡)

○ 첨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비용 신청서

신청자	주소			
	기관명	담당자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고유번호 (사업자군호)		
신청액	금 원(₩)			
총행사비 (단위:천원)	계	시비	자부담	기타
은행정보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특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변경 신청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보존회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 기재 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변경 신청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 기재 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취소 신청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시			
공개장소 취소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문화재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취소 신청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시	년 월 일 시		
공개장소 취소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결과보고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사명			
주관			
주최			
후원			
공개날짜		공개장소	
출연자	보유자		
	조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		

집행금액	계	시비	국비	기금	자체부담	기타

관람인원	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120g/㎡)

(뒤쪽)

2. 공개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2. 공개 출연자 명단

구 분	인 원	출 연 자 명 단

3.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앞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행사명			
주관			
주최			
후원			
공개일시	년 월 일 시	공개장소	
출연자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생		

집행금액	계	시비	자체부담	기타

관람인원	명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백상지(80g/㎡)

(뒤쪽)

1.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2.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구 분	인 원	출 연 자 명 단

3.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모니터링 평가서

【공개개요】

시행번호/명칭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 」			
조사자	성명	(인)	주관자		
	소속				
기 간		0000. . . ~ 0000. . .	사비 사용액		
장 소					

【확인사항】

항 목		확 인 사 항	유	무
기획	언론홍보	- 인터넷 뉴스 기사로 확인 가능 ※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등의 매체인 경우 (유)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		
	포스터 또는 현수막	- 현수막 1개 설치 또는 포스터 제작 및 관련기관 배포, 현수막 세로 3.5 X 가로 3.5m 크기 이상을 1개 설치, 또는 포스터 면 50부 제작 및 관련기관 배포 ※ 공개용 포스터이어야 함		
	리플렛	공개 행사명 기재 여부 확인		
		- 시간, 날짜, 장소 기재 여부 확인		
		- 해당종목 소개 기재 여부 확인		
		- 프로그램 순서 기재 여부 확인		
		- 출연진 명단 및 사진 기재 여부 확인		
행사 참여	보유자	- 보유자는 행사 당일 ○○○ 역할을 담당함		
		- 보유자는 행사 당일 ○○시 ○○분을 공연 및 시연함		
	조교	- 보유자는 행사 당일 ○○○ 역할을 담당함		
		- 보유자는 행사 당일 ○○시 ○○분을 공연 및 시연함		

【평 가 표】

항목	평 가 사 항		평가점수
기획 (20)	사업 계획서 (15)	- 공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 행사명, 행사이유, 일시, 장소, 참여자 명단 (보유자 /전승교육사/이수자 구분) - 행사기대 효과 ※ 별첨 1 양식에 따라 참석자 기재	5점(매우탁월,100%) 4점(탁월,80%) 3점(우수,60%) 2점(보통,40%) 1점(미흡,20%) 0점(나쁨,0%) 가점(다소미흡,50%) 감점(부적절,-40%)
	준비 (5)	- 악기·의물·재료·도구·시설 등의 공개 준비의 적절성	5점(매우탁월,100%) 4점(탁월,80%) 3점(우수,60%) 2점(보통,40%) 1점(미흡,20%) 0점(나쁨,0%) 가점(다소미흡,50%) 감점(부적절,-40%)
행사 (70)	장소 (10)	- 행사장의 실연 적정성(경성평가) - 핵심기능의 실연에 적정한 장소인가(전승지역 및 종목 특성에 적합한 무대) 일반인의 접근편의 등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인가	5점(매우탁월,100%) 4점(탁월,80%) 3점(우수,60%) 2점(보통,40%) 1점(미흡,20%) 0점(나쁨,0%) 가점(다소미흡,50%) 감점(부적절,-40%)
	실연내용 평가 (60)	※ 별첨 2의 분야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평가표에 의함	5점(매우탁월,100%) 4점(탁월,80%) 3점(우수,60%) 2점(보통,40%) 1점(미흡,20%) 0점(나쁨,0%) 가점(다소미흡,50%) 감점(부적절,-40%)
호응 (10)	관객수 및 관객의 관심도	관객수 및 관객의 호응도 -관람객의 관심도 평가(정성평가)	5점(매우탁월,100%) 4점(탁월,80%) 3점(우수,60%) 2점(보통,40%) 1점(미흡,20%) 0점(나쁨,0%) 가점(다소미흡,50%) 감점(부적절,-40%)
100점			
총평	전체 평가	-주사자 총평(서술형으로 작성) ① 전체 실연행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실연 진행/ 실연내용 설명/ 관람객 대응) ② 보유자 및 전승자의 기예능 실연능력 수준 - 보유자등이 전수교육 및 공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기술 ③ 해당종목 공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첨부	※ 확인사항 증빙자료로 이미지 자료 제출 - 언론보도, 포스터, 리플릿, 공개 사진 이미지 4컷		

서울무형유산 공개행사 접검 평가서

【공개개요】

시행번호/명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 」			
조사자	성명	(인)	주관자		
	소속				
기 간		0000. . . ~ 0000. . .	사비 사용액		
장 소					

【확인사항】

항 목		확 인 사 항	유	무
기획	언론홍보	- 인터넷 뉴스 기사로 확인 가능 ※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등의 매체인 경우 (유)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		
	포스터 또는 현수막	- 현수막 1개 설치 또는 포스터 제작 및 관련기관 배포 ※ 공개용 포스터이어야 함		
	리플렛	- 공개행사명 기재 여부 확인		
		- 시간, 날짜, 장소 기재 여부 확인		
		- 해당 종목 소개 기재 여부 확인		
		프로그램 순서 기재 여부 확인		
		- 출연진 명단 및 사진 기재 여부 확인		
행사 참여	보유자	- 보유자는 행사 당일 ○○○ 역할을 담당함		
		보유자는 행사 당일 ○○시 ○○분을 공연 및 시연함		
	전승교육사	- 전승교육사는 행사 당일 ○○○ 역할을 담당함		
		- 전승교육사는 행사 당일 ○○시 ○○분을 공연 및 시연함		

【평 가 표】

항목	평 가 사 항		평가점수
기획 (20)	사업 계획서 (15)	- 공개행사 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 행사명, 행사의의, 일시, 장소, 참여자 명단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 구분) - 행사기대 효과 ※ 별첨 1 양식에 따라 참석자 기재	5점(매우탁월,100%) 4점(탁월,80%) 3점(우수,60%) 2점(보통,40%) 1점(미흡,20%) 0점(나쁨,0%) 가점(다소미흡,50%) 감점(부적절,-40%)
	준비 (5)	- 악기·의물·재료·도구·시설 등의 공개 준비의 적절성	5점(매우탁월,100%) 4점(탁월,80%) 3점(우수,60%) 2점(보통,40%) 1점(미흡,20%) 0점(나쁨,0%) 가점(다소미흡,50%) 감점(부적절,-40%)
행사 (70)	장소 (10)	- 행사장의 실연 적정성(경성평가) - 핵심기능의 실연에 적정한 장소인가(전승지역 및 종목 특성에 적합한 무대) - 일반인의 접근 및 관람이 용이 한 공개된 장소인가	5점(매우탁월,100%) 4점(탁월,80%) 3점(우수,60%) 2점(보통,40%) 1점(미흡,20%) 0점(나쁨,0%) 가점(다소미흡,50%) 감점(부적절,-40%)
	실연내용 평가 (60)	※ 별첨 2의 분야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평가지표에 의함	5점(매우탁월,100%) 4점(탁월,80%) 3점(우수,60%) 2점(보통,40%) 1점(미흡,20%) 0점(나쁨,0%) 가점(다소미흡,50%) 감점(부적절,-40%)
호응 (10)	관람객 수 및 관람객의 관심도	- 관람객 수 및 관람객의 호응도 - 관람객의 관심도 평가(정성평가)	5점(매우탁월,100%) 4점(탁월,80%) 3점(우수,60%) 2점(보통,40%) 1점(미흡,20%) 0점(나쁨,0%) 가점(다소미흡,50%) 감점(부적절,-40%)
100점			
총평	전체 평가	-주사자 총평(서술형으로 작성) ① 전체 실연행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실연 진행/ 실연내용 설명/ 관람객 대응) ② 보유자 및 전승자의 기예능 실연능력 수준 - 보유자등이 전수교육 및 공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기술 ③ 해당 종목 공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첨부	※ 확인사항 증빙자료로 이미지 자료 제출 - 언론보도, 포스터, 리플릿, 공개 사진 이미지 4컷		

※별표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공개 참석자 현황

구분	성명	성별	기·예능	참여 여부 (○, ×)	공개의 역할 및 특기사항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이수자					

※별표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행사 참석자 현황

구분	성명	성별	기·예능	참여 여부 (○, ×)	공개행사 내 역할 및 특기사항
보유자					
전승 교육사					
이수자					

※ 별표 2

분야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평가지표

가. 음악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 (50점)	장법·연주법의 전통성(50점)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15점)								
	장법·연주의 구사력 수준(25점)								
	공력의 깊이(10점)								

나. 무용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점)	춤 동작의 전통성(40점)								
	복식의 전통성(10점)								
춤의 미적 완성도(50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30점)								
	장단과 춤의 어울림(10점)								
	춤과 음악의 어울림(10점)								

※ 별표 2

분야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평가지표

가. 음악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여부 (50점)	장법·연주법의 전통성(50점)								
예술적 완성도 및 기능적 숙련도(5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15점)								
	장법·연주의 구사력 수준(25점)								
	공력의 깊이(10점)								

나. 무용 분야(100점)

구분	조사지표	평가점수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다소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전통에 근거한 표현 정도 (50점)	춤 동작의 전통성(40점)								
	복식의 전통성(10점)								
춤의 미적 완성도(50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30점)								
	장단과 춤의 어울림(10점)								
	춤과 음악의 어울림(10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

(제 ___ 호 _____)

교육구분	정기 교육 / 특별교육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지도자	

출 석 현 황

전승구분 (이수자/전수생)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입문일	기예능	출석여부

※ 첨부 : 대회 전수교육증빙자료(사진 등)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

(제 ___ 호 _____)

교육구분	정기 교육 / 특별교육
교육날짜	년 월 일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지도자	

출 석 현 황

전승구분 (이수자/전수생)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입문일	기예능	출석여부

※ 첨부 : 대회 전수교육증빙자료(사진 등)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5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자”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자”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로, “보유단체”를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로”를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5조제1항과 시행”을 “제35조제1항과”로, “판단되어”를 “판단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심사하여”를 “심사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무형문화재를”을 “시무형유산을”로, “인정하는”을 “인정하고,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시무형문화재를”을 “시무형유산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시행”을 “및”으로, “다음과 같다”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상 개인종목에 한함),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해제된 보유자”를 “시무형유산 인정 해제된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보유자로부터의 전수교육”을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의 전수교육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유단체” 를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무형문화재” 를 “실시할 때는 해당 시무형유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를 “「고등교육법」 제2조”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무형문화재” 를 “무형유산” 으로, “진흥에 관련된” 을 “진흥 관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수심사 평가자” 를 “평가자” 로, “작성시 예산의 범위 내” 를 “작성 시 예산의 범위” 로 한다.

2. 조례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제7조제1항 중 “공고시 당해연도” 를 “공고 시 해당 연도”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으로, “시장에” 를 “시장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자료로서[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발급받아 서울시장” 을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발급받아 시장” 으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을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으로, “발급하여야” 를 “이를 발급하여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유자가” 를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인정” 으로,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득한” 을 “얻은”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이수심사의 항목 및 지표)” 를 “(이수심사의 평가방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등을” 을 “등 별표 1의 항목을” 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한다.

③ 이수심사 시 평가 지표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 3의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분야별 실기능력 조사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이수심사 결과 평가자의 평균 점수가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피평가자는 전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평가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고,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중복되면 중복되는 평가자 1명의 점수만 제외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이수심사 결과 이수한 전수자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

제11조 앞의 “제4장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시 인터넷”을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종합점수를”을 “피평가자 당사자로 한정하여 종합점수 및 평가자 식별정보를 제외한 평가 의견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그 밖에”를 “관한 그 밖의”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이수심사의 기록은”을 “제1항에 따라 이수심사를 기록할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제9조제2항 관련)”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제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신청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2">접수일자</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사진

(3.5*4.5)</td><td>성명
(한자)</td><td>(　　)</td><td>종목 명칭</td><td></td></tr>
<tr><td>생년월일
(성별)</td><td>(남 / 여)</td><td>신청 분야
(기능·예능)</td><td></td></tr>
<tr><td>연 락 처</td><td></td><td>전자우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보유단체·
전승교육사</td><td colspan="4"></td></tr>
<tr><td>전수교육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해당 종목 전승활동
(증빙자료
별도 붙임)</td><td colspan="4"></td></tr>
</table>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이수심사를 응시하는 전수생은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로부터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정함
2. 증빙 서류 제출 누락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첨 부 서 류

○ 신청자 이력서 1부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신청서 작성	→	서울특별시 접　　수	→	신청인에게 심사 7일 전까지 통보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 )		
종목명칭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 입 문 일	년 월 일	전수교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에게 직접 입문일 및 전수교육기간을 확인한 뒤,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자-----------------------------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전수교육”이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2. “전수자”란 조례 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 로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	2. ----------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

유단체로부터 그 종목의 기능·예능을 교육 받은 자를 말한다.	----------.
3. “이수심사”란 조례 제3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전수자의 기량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이수증”이란 조례 제35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4. ---------- 제35조제1항과 ---------- 판단되는 ----------.
5. “이수자”란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5. ---------- 심사받아 ----------.
6. “개인종목”이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는 종	6. ---------- 시무형유산을 ---------- 인정하고, 보

목을 말한다.	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
7. “단체종목”이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7. ---------- 시무형유산을 ---------- ----------.
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조례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이수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 및 ----------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상 개인종목에 한함),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를 말한다.
1.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삭 제>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수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수료한 전수자	<삭 제>
②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기간은 해제된 보유자와 그를 승	② 시무형유산---------- --- 시무형유산 인정 해제된

계한 보유자로부터의 전수교육의 합이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의 전수교육 기간----------.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시무형유산 ----------.
제5조(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
②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대상으로 이수심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이수심사 평가자) ① 이수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이수심사 평가자(이	제6조(이수심사 평가자) ① ---------- 실시할 때는 해당 시무형유산----------

상 “평가자”라 한다)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② ----------.
1.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1. ---------- -- 시무형유산 -------
2.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2. 조례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 ---------- ---------- ----------
4.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무형유산---------- 진흥 관련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이수심사 평가자가 이수심사와 관련된 채점표 및 평가의견 작성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자---------- ---------- 작성 시 예산의 범위-------- ----------.
제7조(이수심사의 시기 및 장소) ① 매년 이수심사 시행계획 공고시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과 함께 심사 시기를 공지	제7조(이수심사의 시기 및 장소) ① ---------- 공고시 해당 연도 ---------- ----------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이수심사의 신청) ① 시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이수심사를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수심사 30일 전까지 시장에 제출한다.	제8조(이수심사의 신청) ① 시무형유산 ----------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 시장에게 ------.
② 이수심사 신청자는 시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발급받아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이수심사 신청자가 해당 서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② ---------- 시무형유산 ---------- ----------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발급받아 시장---------- --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 ---------- 이를 발급하여야 ---------- -------.
③ 보유자가 해제된 경우(개인종목에 한함)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로 시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인정 ---------- ---------- ------- 시무형유산 -------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이수심사 신청자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이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심사 대상자격을 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⑥ ---------- ---------- ---------- ---------- ---------- ---------- ---------- ---- 얻은 ---------- ----------.
제9조(이수심사의 항목 및 지표) ① 이수심사에 따른 평가는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 및 그 기능·예능의 실연능력을 평가하며, 단체종목의 경우 실연능력에 보유단체 회원과의 합동시연능력을 포함한다.	제9조(이수심사의 평가방법) ① ---------- ---------- 시무형유산---------- ---------- ---------- ---------- ----------.
② 평가자는 심사 대상 전수자의 종목 이해도, 그 기능·예능 및 합동시연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점한다.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1]과 같다.	② ---------- ---------- ---------- 등 별표 1의 항목을 --. <후단 삭제>
③ 이수 여부는 평가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경우로 한다. 단, 심사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	③ 이수심사 시 평가 지표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 3의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분야별 실기

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고,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중복 되면 중복되는 평가자 1명의 점수만 제외한다.	능력 조사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수심사 결과 평가자의 평균 점수가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피평가자는 전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평가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고,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중복되면 중복되는 평가자 1명의 점수만 제외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무형유산 ----------.
제10조(이수증의 발급) ① 시장은 이수심사 결과 이수한 전수자에 대하여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0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이수심사 결과 이수한 전수자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이수하는 서울무형문화재 종목의 기능·예능은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	

정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 [별첨 2]의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의 분야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	<삭 제>
<신 설>	제3장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
제11조(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① 이수심사 결과는 이수심사 후 30일 이내에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1조(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① ---------- -------- 서울특별시 ------ ---------- --------.
② 시장이 피평가자의 요청에 따라 이수심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종합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조사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② ---------- ---------- --- 피평가자 당사자로 한정하여 종합점수 및 평가자 식별정보를 제외한 평가 의견을 ---. <후단 삭제>
③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한다.	③ ---------- 관한 그 밖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이수심사의 기록) ① (생략)	제13조(이수심사의 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수심사의 기록은 이수심사 내용, 과정 등에 대하여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문자(원	② 제1항에 따라 이수심사를 기록할 때는 ---------- ----------

고)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 ---.
③ 이수심사와 관련된 채점표 및 평가의견 작성과 별개로 이수심사 기록을 위하여 작성된 원고(개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포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범위----------.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2월 19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 1]

[별표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제9조제2항 관련)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종합)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예능 (개인)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30점	
	실연능력	○ 해당 종목 실연 능력	70점	
	계		100점	
예능 (단체)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30점	
	실연 능력	○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개인)	40점	
	단체협연능력	○ 보유단체 회원과의 협연 - 관련 악기·태역과 협연 능력	30점	
	계		100점	
기능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 종목의 기법	30점	
	시연(제작) 능력	○ 기술의 전통성, 숙련도 재료·도구의 이해 기법의 이해	70점	
	계		100점	

□ 측정 산식

○ 각 항목 및 지표별 배점에 따라 측정기준을 정성평가							
○ 심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약간미흡)	D (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제9조제2항 관련)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종합)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예능 (개인)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30점	
	실연능력	○ 해당 종목 실연 능력	70점	
	계		100점	
예능 (단체)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30점	
	실연 능력	○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개인)	40점	
	단체협연능력	○ 보유단체 회원 대상 협연 관련 악기·태역과 협연 능력	30점	
	계		100점	
기능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 종목의 기법	30점	
	시연(제작) 능력	○ 기술의 전통성, 숙련도 재료·도구의 이해 - 기법의 이해	70점	
	계		100점	

□ 측정 산식

○ 각 항목 및 지표별 배점에 따라 측정기준을 정성평가							
○ 심사척도 : 정성평가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약간미흡)	D (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50%	40%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진 (3.5*4.5)	성명 (한자) ( )		종목 명칭	
	생년월일 (양력) (남 / 여)		신청 분야 (기능·시능)	
	연 락 처		전자메일	
	주 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대학				
전수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 종목 전승활동 (증빙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이수심사를 중복하는 전수생은 보유자 보유단체·전승교육대학에서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함
2. 종합 서류 처음 누락 시 사정에 응시할 수 없음

제 출 서 류
○ 신청자 1부.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신청서 작성	→ 서울특별시 장 수	→ 신청인에게 심사 개별 전화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품질이 같은 종이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진 (3.5*4.5)	성명 (한자) ( )		종목 명칭	
	생년월일 (양력) (남 / 여)		신청 분야 (기능·시능)	
	연 락 처		전자우편	
	주 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				
전수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 종목 전승활동 (증빙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이수심사를 중복하는 전수생은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함
2. 종합 서류 처음 누락 시 사정에 응시할 수 없음

제 출 서 류
○ 신청자 1부.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신청서 작성	→ 서울특별시 장 수	→ 신청인에게 심사 개별 전화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품질이 같은 종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년, 더)
주 소 (연락처)	( )		
종목명칭		보유자 · 보유단체	
전수교육 입문일	년 월 일	전수교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보유단체)에 직전 입문일 및 전수교육기간을 확인한 뒤, 보유자(보유단체)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 )		
종목명칭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전수교육 입문일	년 월 일	전수교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에게 직접 입문일 및 전수교육기간을 확인한 뒤,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6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이수자”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제4항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이수자”란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전수교육”이란 조례 제34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을 보전·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연, 전시, 교육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개인종목”이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고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6. “단체종목”이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7. “지원금”은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우수 이수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장려금”은 우수 이수자에게 전승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나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서울특별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관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우수 이수자 선정

제4조(선정 대상)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종목 중에서 해당 종목의 성격·특성 및 전승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이수자 선정 대상 종목과 선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이수자 선정 대상 종목과 우수 이수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선정 신청)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자는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추천서와 이력서, 입증자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계획서

제6조(추천) ① 시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는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수자를 우수 이수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② 시무형유산 보유단체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우수 이수자 추천에 관하여 법인 정관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우수 이수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우수 이수자로 선정된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우수 이수자 지원 및 관리 등

제8조(장려금) 시장은 우수 이수자에 대하여 선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서 전승활동 지속에 필요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시장은 우수 이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외에 해당 종목 전형의 보전·전승을 위한 우수 이수자의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상황 보고 등) ① 보유자 등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우수 이수자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우수 이수자는 전승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획된 전승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우수 이수자는 제5조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수 이수자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전승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승활동 결과 및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사용 확인)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우수 이수자가 당초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수 이수자에게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수 이수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우수 이수자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이수자가 된 경우
3.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승활동 중단을 알려온 경우
4.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승활동 계획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5.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4항의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우수 이수자가 제출한 제5조제2호의 전승활동 계획서에 따른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수종목	
전수교육주체	
이수인정일	년 월 일(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추천주체		구분	□ 보유자 □ 보유단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수집기관에서 우수 이수자 활동 종료 시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수 이수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계획서

전승자	종목명칭	
	성 명	
	생년월일	
	이수인정일	
전승활동 계획	1. 활 동 명 2. 목 적 3. 개 요 1)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장 소 : 3) 세부내용 4. 기대효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1. 전승활동 세부 계획서 1부
2. 전승활동 계획은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결과보고서

보고자	종목명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주 소	
전승활동 결 과	개 요	
	추진실적	
	성 과	
	기타사항	
집 행 액	금 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1. 전승활동 결과(사진, 홍보물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영수증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

신청자	종목명칭	
	성 명	
구 분	□ 변경 □ 취소 ※ 해당 사항에 표시(V)	
변경(취소) 사유		
변경내용 ※ 변경에 표시한 경우만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5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1. 내무부고시 제449호(1958.11.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8호(1971.04.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147호(1986.04.10.)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강동구고시 제2015-65호(2015.06.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호(2016.01.14.)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강동구 고시 제2017-29호(2017.03.09.)로, 제2022-154호(2022.09.2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4호(2017.06.01.), 제2019-126호(2019.04.18.), 제2019-440호(2019.12.26.), 제2024-92호(2024.02.22.)로 실시계획 변경 작성 고시된「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하기 위해, 같은법 제90조, 제9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산74, 산70(면적변경)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광장)사업
  ○ 명 칭 :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다. 사업의 규모 : 폭원50~93m, 연장 1,940m.(변경없음)
  면적 : (당초) 29,204㎡ → (변경) 29,238㎡ (증 : 34㎡)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사업기간
    - 당초 :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일 ~ 2025. 06. 30.
    - 변경 :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일 ~ 2025. 12. 30.
  ○ 변경사유 : 대사골 진입도로개설공사 및 분할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바.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8)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1부(☎031-790-7828)

아.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토지조서 변경)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광로2-5호선 토지조서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둔촌동	산88-3	임	485	403	산88-3	임	485	40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	둔촌동	산88-2	임	1,186	1,186	산88-2	임	1,186	1,186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3	둔촌동	산91	임	36	36	산91	임	36	36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	둔촌동	산87	임	343	343	산87	임	343	343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	둔촌동	산86-1	임	1,193	1,183	산86-1	임	1,193	1,18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6	둔촌동	산85-1	공	87	69	산85-1	공	87	6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7	둔촌동	558-10	공	1,172	626	558-10	공	1,172	626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8	둔촌동	산78-1	공	285	285	산78-1	공	285	285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9	둔촌동	산78-2	공	258	258	산78-2	공	258	258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0	둔촌동	산77-1	공	754	754	산77-1	공	754	754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1	둔촌동	557-3	공	37	37	557-3	공	37	37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2	둔촌동	557-4	공	93	93	557-4	공	93	9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3	둔촌동	557-5	전	559	559	557-5	전	559	55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14	둔촌동	557-2	전	9	9	557-2	전	9	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15	둔촌동	557-1	전	13	13	557-1	전	13	1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6	둔촌동	산76-1	임	100	100	산76-1	임	100	100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17	둔촌동	산76-2	임	559	559	산76-2	임	559	55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18	둔촌동	산79-1	임	51	51	산79-1	임	51	5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19	둔촌동	산74-1	임	186	186	산74-1	임	186	186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0	둔촌동	산74-3	임	547	547	산74-3	임	547	547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1	둔촌동	산74-2	임	10	10	산74-2	임	10	10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22	둔촌동	산72-1	공	2,127	2,127	산72-1	공	2,127	2,127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3	둔촌동	산71-1	임	251	251	산71-1	임	251	25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24	둔촌동	산70-1	임	309	309	산70-1	임	309	30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25	둔촌동	산69	공	159	159	산69	공	159	15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6	둔촌동	산74-4	임	15	15	산74-4	임	15	15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27	둔촌동	산88-4	임	97	97	산88-4	임	97	97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28	둔촌동	산86-2	임	239	239	산86-2	임	239	23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9	둔촌동	산72-2	공	146	146	산72-2	공	146	146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0	둔촌동	산77-2	공	293	293	산77-2	공	293	29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1	둔촌동	산78-3	공	27	27	산78-3	공	27	27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2	둔촌동	산78-4	공	232	232	산78-4	공	232	232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3	둔촌동	산79-2	임	8	8	산79-2	임	8	8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34	둔촌동	산72	공	81	30	산72	공	81	27	-3	공	서울시				면적변경
35	둔촌동	산74	임	2,973	198	산74	임	2,973	207	9	이성룡	서울시 서대문구 신영동 111-2				면적변경
36	둔촌동	산71	임	33	33	산71	임	33	33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37	둔촌동	산70	임	1,887	296	산70	임	1,887	324	28	윤여현 1,529/2,355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2 신반포7차 아파트 303-503				면적변경
											서기동 826/2,355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16길 43, 102동 401호(구의동 아차산 한라아파트)				
38	상일동	435-1	천	776	46	435-1	천	776	46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9	상일동	359-3	도	19,777	58	359-3	도	19,777	58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0	상일동	367-5	천	1,300	191	367-5	천	1,300	191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41	상일동	443-12	주	634	634	443-12	주	634	634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2	상일동	443-13	주	331	331	443-13	주	331	33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3	상일동	443-14	답	226	226	443-14	답	226	226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4	상일동	442-20	답	233	233	442-20	답	233	233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5	상일동	442-18	대	299	299	442-18	대	299	29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6	상일동	442-8	도	28	28	442-8	도	28	28		공	강동구				변경없음
47	상일동	441-4	도	2	2	441-4	도	2	2		공	강동구				변경없음
48	상일동	441-7	도	49	49	441-7	도	49	49		공	강동구				변경없음
49	상일동	435-10	도	71	71	435-10	도	71	71		공	강동구				변경없음
50	상일동	436-17	도	99	99	436-17	도	99	99		공	강동구				변경없음
51	상일동	436-21	대	33	33	436-21	대	33	33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2	상일동	436-23	대	171	171	436-23	대	171	17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3	상일동	436-22	답	384	384	436-22	답	384	384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4	상일동	431-10	답	167	167	431-10	답	167	167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5	상일동	431-4	대	191	191	431-4	대	191	19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6	상일동	430-7	답	389	389	430-7	답	389	38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7	상일동	428-9	대	194	194	428-9	대	194	194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8	상일동	428-2	답	8	8	428-2	답	8	8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9	상일동	428-10	대	990	990	428-10	대	990	990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60	상일동	432-14	답	65	65	432-14	답	65	65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61	상일동	360-12	도	514	514	360-12	도	514	514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2	상일동	427-13	잡	108	108	427-13	잡	108	108		공	강동구				변경없음
63	상일동	427-10	잡	27	27	427-10	잡	27	27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64	상일동	427-6	도	9	9	427-6	도	9	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65	상일동	425-15	천	852	852	425-15	천	852	852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66	상일동	426-10	천	129	129	426-10	천	129	12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67	상일동	389-3	도	2,777	2,777	389-3	도	2,777	2,777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8	상일동	362-8	답	686	686	362-8	답	686	686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69	상일동	12-10	도	136	136	12-10	도	136	136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0	상일동	443-11	답	21	21	443-11	답	21	21		공	강동구				변경없음
71	상일동	441-6	도	138	138	441-6	도	138	138		공	강동구				변경없음
72	상일동	442-19	도	2	2	442-19	도	2	2		공	강동구				변경없음
73	상일동	442-21	차	2	2	442-21	차	2	2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74	상일동	442-22	답	11	11	442-22	답	11	1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75	상일동	436-24	대	7	7	436-24	대	7	7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76	상일동	436-16	도	67	67	436-16	도	67	67		공	강동구				변경없음
77	상일동	442-17	대	42	42	442-17	대	42	42		공	LH, 하남시				변경없음
78	상일동	436-15	도	130	130	436-15	도	130	130		공	강동구				변경없음
79	상일동	431-5	도	107	107	431-5	도	107	107		공	강동구				변경없음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0	상일동	431-8	대	121	121	431-8	대	121	12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81	상일동	431-7	도	7	7	431-7	도	7	7		공	강동구				변경없음
82	상일동	431-6	도	36	36	431-6	도	36	36		공	강동구				변경없음
83	상일동	431-9	대	18	18	431-9	대	18	18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84	상일동	430-6	도	27	27	430-6	도	27	27		공	강동구				변경없음
85	상일동	8-4	도	1,625	1,625	8-4	도	1,625	1,625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86	상일동	427-12	잡	77	77	427-12	잡	77	77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87	상일동	432-16	답	5	5	432-16	답	5	5		공	하남시				변경없음
88	상일동	432-15	답	138	138	432-15	답	138	138		공	하남시				변경없음
89	상일동	428-6	대	122	122	428-6	대	122	122		공	하남시				변경없음
90	상일동	360-8	잡	24	24	360-8	잡	24	24		공	하남시				변경없음
91	상일동	360-3	잡	496	496	360-3	잡	496	496		공	하남시				변경없음
92	상일동	427-3	잡	347	347	427-3	잡	347	347		공	하남시				변경없음
93	상일동	428-8	대	288	288	428-8	대	288	288		공	하남시				변경없음
94	상일동	427-4	잡	3	3	427-4	잡	3	3		공	하남시				변경없음
95	상일동	432-17	답	13	13	432-17	답	13	13		공	하남시				변경없음
96	상일동	403-13	도	1,255	1,255	403-13	도	1,255	1,255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97	상일동	399-9	구	31	31	399-9	구	31	31		공	강동구				변경없음
98	상일동	12-2	도	17,508	84	12-2	도	17,508	84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99	상일동	산10-5	임	132	132	산10-5	임	132	132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100	상일동	산8-9	임	22	22	산8-9	임	22	22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101	상일동	산10-7	도	57	57	산10-7	도	57	57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02	상일동	436-25	대	22	22	436-25	대	22	22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03	상일동	436-18	대	12	12	436-18	대	12	12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04	상일동	442-11	도	73	73	442-11	도	73	73		공	강동구				변경없음

교통광장 167호선 토지조서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상일동	399-11	구	134	134	399-11	구	134	134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	상일동	423-4	대	142	142	423-4	대	142	142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3	상일동	400-3	답	730	730	400-3	답	730	730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	상일동	402-4	잡	9	9	402-4	잡	9	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	상일동	403-12	전	260	260	403-12	전	260	260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6	상일동	393-5	도	503	503	393-5	도	503	503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570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 2. ~ 2025. 1. 16.(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관련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이안건설 이앤씨 (김승호)	건축공사업 01-5364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99, 401호(오금동)	사업자 국세청 폐업 - 사업자등록번호: 592-87-02380 - 폐업일: 2024. 8. 5.	법 제8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9항	등록말소 (2025. 1. 24.)	법 제83조 제12호
(주)유엔종합건설 (공재섭)	건축공사업 01-4295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0길 3-17, 2층(가락동, 태경빌딩)	사업자 국세청 폐업 - 사업자등록번호: 277-87-01008 - 폐업일: 2024. 6. 30.	법 제8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9항	등록말소 (2025. 1. 24.)	법 제83조 제12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에 의거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인영(직인 도안)이 잘못 표기되어 변경함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24. 12. 26.
3.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등록직인 : 3개

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등록일자	비고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소방재난본부 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2.0㎝		2024.12.26.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소방재난본부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2.0㎝		2024.12.26.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소방재난본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1.8㎝		2024.12.26.	

나. 폐기직인 : 3개

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폐기일자	비고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재난본부 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2.0㎝		2024.12.26.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재난본부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2.0㎝		2024.12.26.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재난본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1.8㎝		2024.12.2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	주식회사 컴포텔소방전기	제 서울(은평) 2024-0002 호 (2024.12.13.)	정우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3길 10, 4층	02) 352-61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소방시설관리업담당(☎02-6981-60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4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석대인	인천광역시 서구 두루물로48번길 2* (오류동)	위반일시: 2024-10-05 12:28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1643 위반내용: 차량의 높이 초과(실측값: 4.17m, 초과값: 0.17m,87우218*)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11-28 납기일: 2025-01-31
정재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22 107동 120*호 (사동)	위반일시: 2024-10-10 16:39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481-6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8m, 초과값: 0.28m,서울98바721*)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11-28 납기일: 2025-01-31
백경욱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31-4 *층 (송월동1가)	위반일시: 2024-10-08 14:34 위반장소: 마포구 마포동 350-5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 36.55t, 초과값: 4.55t,006라615*)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11-28 납기일: 2025-01-31
조운기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2159번길 1* (조남동)	위반일시: 2024-11-04 14:27 위반장소: 마포구 망원동 463-2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8m, 초과값: 0.28m,전북83사872*)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11-28 납기일: 2025-01-31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신기봉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4가길 55 10*호 (화곡동)	위반일시: 2024-11-04 20:30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481-72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75m, 초과값: 0.25m,서울15가718*)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4-11-28 납기일: 2025-01-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1.2. ~ 2025.1.15.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영성 종합건설 (홍종배)	건축 공사업 01-47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 707호 (제일빌딩)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 - 담보권 실행으로 보증가능금액 실효 (2024.8.6.)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5.1.24. ~ 2025.6.23.)	법 제83조 제3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9호

정비사업 사업성 보정계수 산출을 위한 2024년 서울특별시 평균 공시지가(재건축/재개발)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5호(2024.9.26.)로 고시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2024년 서울특별시 평균 공시지가(재건축/재개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2024년 서울특별시 평균 공시지가(재건축/재개발) 공고

2. 공고내용

구 분	재건축	재개발	비 고
2024년 평균 공시지가	7,274,646원/㎡	5,969,319원/㎡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8, 재건축) 또는 주거정비과(☎02-2133-7206, 재개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 여 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4호

시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철거) 영장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76 시유재산 및 인근에 사다리 등이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어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무단적치물(사다리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송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 고 명: 시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철거) 영장 공시송달
○ 공고내용: 행정대집행(철거) 영장(붙임)
○ 공시송달 기간: 2025. 1. 3.~2025. 1. 9. (7일)
○ 효력발생시기: 2025. 1. 10.
○ 공고방법: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 게재
○ 공고사유: 무단적치물 소유자 파악 불가능(송달 불가능)
○ 공고대상: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76 시유재산 무단점유 사다리, 체인자물쇠, 접이식의자 등
○ 기타사항: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서울시는 배상(보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행 후 행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변상금을 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내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시 재산관리과(☎02-2133-329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호

행정대집행(철거)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477호로 2024년 12월 26일까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1-876 시유지와 인접지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사다리, 체인자물쇠, 접이식 의자 등을 자진철거하도록 계고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철거)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행정대집행(철거)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서울시는 배상(보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철거) 실행 후 행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 행정대집행(철거)에 따른 소요비용과 변상금을 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2025년 1월 10일 ~ 2025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	6급	이영주	용역 투입, 차량 대여 보관장소 대여 등 소요비용 추후 청구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서울특별시교육청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940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신청사 건립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금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조례 제2조의2)

- ‘2025년 12월 31일’ 에서 ‘2027년 12월 31일’ 로 연장

◈ 서울특별시조례 제9409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722”을 “7,876”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88”을 “74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876**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25**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40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74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691**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 늘봄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154명 (7,722명 → 7,876명)

○ 교육전문직원

: 증 154명 (588명 → 742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특정직 정원 조정: 증 154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증 154명

구 고 시

◈ 광진구고시 제2024-4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광진)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용마도시자연공원은 내무부 고시 제413호(1958.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59호(2021.8.26.)로 최종 결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제168호(2020.2.20.)로 열람 공고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0-46호(2020.5.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87호(2020.7.23.)로 실시계획 (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1-185호(2021.11.18.)로 실시계획 (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59호(2022.12.22.)로 실시계획 (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124호(2023.12.27.)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용마도시자연공원(광진) 조성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25년 1월 2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14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사업의 명칭 : 용마도시자연공원(광진) 조성
다. 사업의 면적 : 7,071㎡
라. 사업의 시행자 :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변경사유 : 사업기간 변경
바. 사업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4.12.31.일까지
  ○ 변 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5.12.31.일까지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공원녹지과 ☏450-77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고시 제2025-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취소 고시

행정소송 종결('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취소' 소송)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2-240호(2022.12.29.)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취소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도 봉 구 청 장

1. 취소 사유
 - 행정소송 확정판결 내용 반영

2.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폐지)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공공지	도봉구 창동 609-8호, 609-9호	282	감)282	0	2022.12.29. (도봉구고시 제2022-240호)	

 나. 결정(폐지)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면적: 감 282㎡	• 행정소송 종결에 따라 사건토지(도봉구 창동 609-8, 609-9, 282㎡)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취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붙임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091-3553)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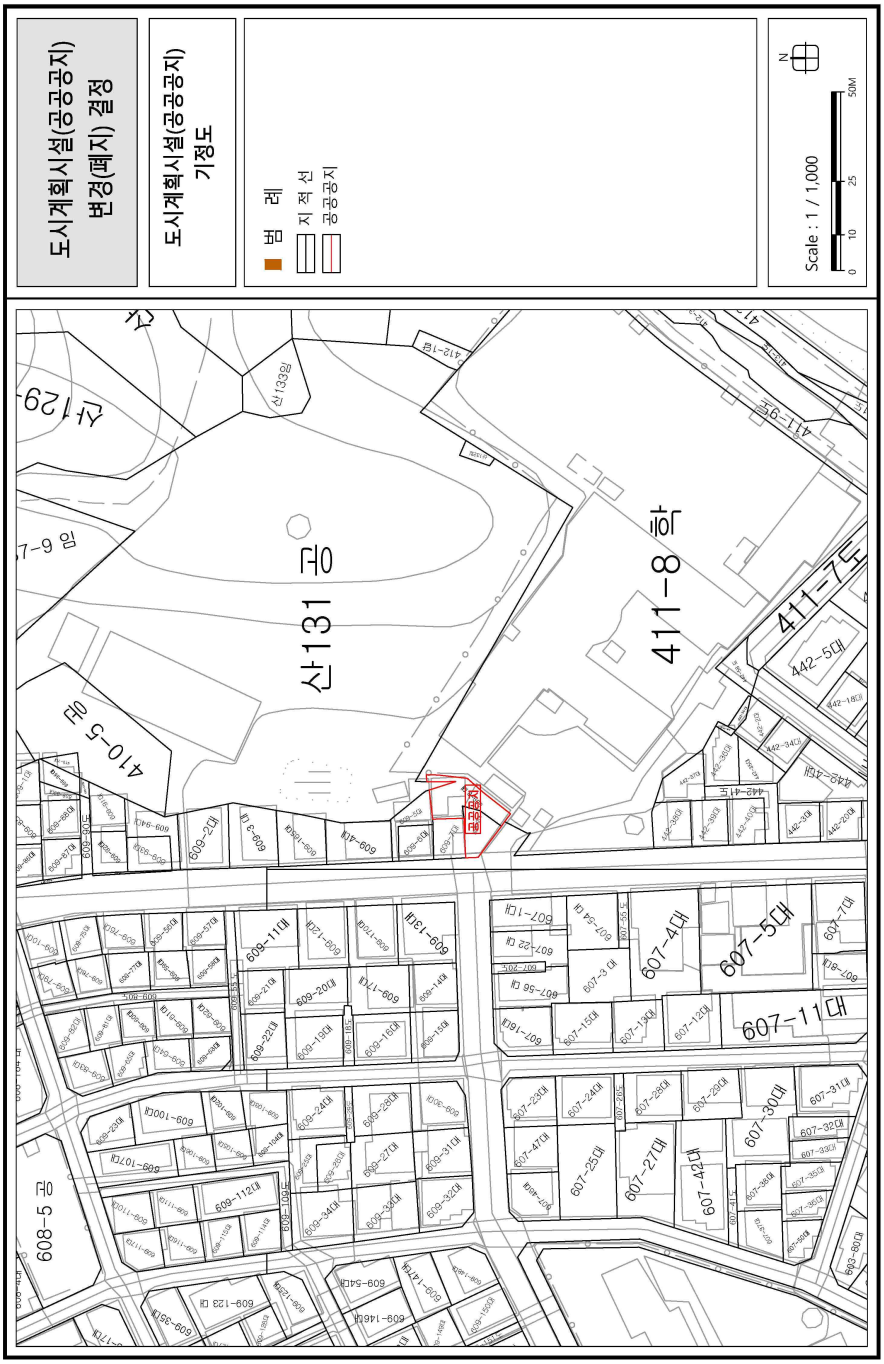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결정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기정도
범 례
지 적 선
공공공지
Scale : 1 / 1,000
0 10 25 50M
N
산131 묘
411-8 학
411-7도
442-5대
607-4대
607-5대
607-11대
608-5 묘
410-5 묘
609-2대
609-4대
609-5 대
609-111대
609-121대
609-131대
609-141대
609-146대
609-151대
609-171대
609-211대
609-221대
609-241대
609-251대
609-271대
609-281대
609-311대
609-321대
609-341대
609-351대
609-541대
609-951대
609-1001대
609-1071대
609-1231대
607-1대
607-7대
607-8대
607-12대
607-13대
607-14대
607-15대
607-16대
607-19대
607-20대
607-21대
607-22대
607-23대
607-24대
607-25대
607-26대
607-27대
607-28대
607-30대
607-31대
607-32대
607-33대
607-35대
607-36대
607-38대
607-42대
607-47대
607-54대
607-56대
603-6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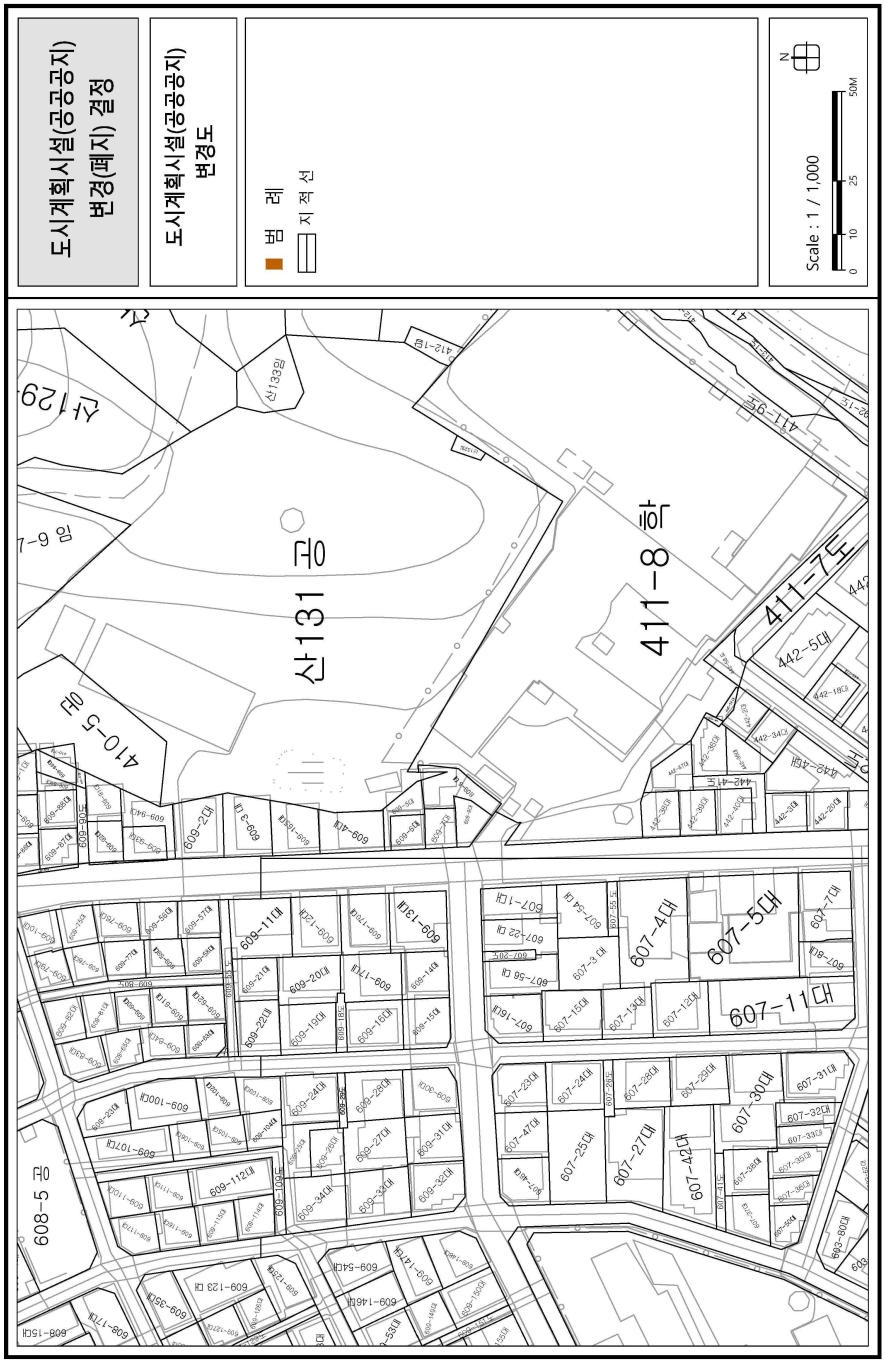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결정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도
범 례
지 적 선
Scale : 1 / 1,000
0 10 25 50M
N
산131 구
411-8 학
411-7도
442-5대
410-5 유
608-5 유
607-4대
607-5대
607-11대
607-27대
607-42대
607-30대
609-4대
609-13대
609-17대
609-22대
609-28대
609-31대
609-34대
609-54대
609-111대
609-112대
609-123 대
609-146대
609-100대
609-107대
609-35대
609-15대
607-1 대
607-3 대
607-15대
607-16대
607-22 대
607-54 대
607-56 대
607-7대
607-8대
607-23대
607-24대
607-25대
607-28대
607-31대
607-32대
607-33대
607-35대
607-36대
607-47대
607-48대
608-6대
609-3 대
609-2 대
411-9도
442-21대
442-18대
442-34대
442-41대
442-38대
442-39대
442-40대
산133임
412-1임
임 6-1

◈ 노원구고시 제202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1(2023.11.16.)호로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 공고 제2024-1762(2024.10.1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된 노원구 월계동 85번지 일원에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49)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월 2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 명 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3-가1, 소로1-가1, 소로2-가1, 소로2-가2, 소로2-가3, 소로3-가1, 완충녹지 : 완충녹지①, 완충녹지②) 조성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3	가1	12	국지도로	541 (541)	월계동 85-7	월계동 106-20	일반도로	-	• 중복결정 - 유통업무설비 16.0㎡
소로	1	가1	10~13	국지도로	572 (572)	월계동 106-3	월계동 106-3	일반도로	-	
소로	2	가1	10	국지도로	227 (227)	월계동 106-3	월계동 106-21	일반도로	-	
소로	2	가2	10	국지도로	198 (198)	월계동 106-3	월계동 85-7	일반도로	-	
소로	2	가3	10	국지도로	176 (176)	월계동 154	월계동 163-2	일반도로	-	• 중복결정 - 유통업무설비 211.3㎡
소로	3	가1	6~7	국지도로	273 (34)	월계동 152-6	월계동 154-7	일반도로	노원구고시 제9호 (93.2.18.)	

- 녹지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①	녹지	완충녹지	월계동 154번지 일원	1,811.1	-	
②	녹지	완충녹지	월계동 85-7번지 일원	4,893.2	-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38개월 이내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따로 붙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사완료 후 관리청(노원구)에 기부채납(무상귀속)

아. 인가에 따른 조건이행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사업을 위한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인·허가 관련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미래도시과(☎ 2116-06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 중로3-가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편입(m)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196,473	6,827.5						
1	월계동	106-3	철도	40,637.0	6.1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36634.1/40637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4002.9/40637
2	월계동	106-20	철도	11,680.0	1,226.3	국토교통부					-
3	월계동	158-2	답	2,495.0	142.7	국토교통부					-
4	월계동	106-21	철도	2,190.0	1,081.4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
5	월계동	87-1	철도	2,054.0	45.8	노원구					-
6	월계동	85	철도	87,033.0	36.9	국토교통부					-
7	월계동	84-5	철도	1,178.0	242.6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				1139/1178
						한국철도공사	〃				39/1178
8	월계동	85-7	철도	49,206.0	4,045.7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				49058/49206
						한국철도공사	〃				148/49206

○ 소로1-가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편입(m)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40,637	6,643						
1	월계동	106-3	철도	40,637.0	6,643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36634.1/40637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4002.9/40637

○ 소로2-가1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71,073.0	2,340.9						
1	월계동	106-21	철도	2,190.0	102.0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
2	월계동	106-20	철도	11,680.0	253.9	국토교통부					-
3	월계동	158-2	답	2,495.0	106.1	국토교통부					
4	월계동	106-19	철도	3,658.0	285.9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				
5	월계동	106-18	철도	3,097.0	183.9	국토교통부					
6	월계동	106-3	철도	40,637.0	1,035.3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36634.1/40637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4002.9/40637
7	월계동	106-17	철도	7,316.0	373.8	국토교통부					

○ 소로2-가2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90,152.0	2,070.4						
1	월계동	85-7	철도	49,206.0	1,680.3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49058 /49206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148 /49206
2	월계동	87-6	대	234.0	58.3	노원구					-
3	월계동	87-7	대	75.0	16.0	노원구					-
4	월계동	106-3	철도	40,637.0	315.8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				36634.1/40637
						한국철도공사	〃				4002.9 /40637

○ 소로2-가3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56,982.0	2,442.6						
1	월계동	154-7	철도	6,524.0	404.0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
2	월계동	154	철도	4,660.0	1,679.4	국토교통부					
3	월계동	158	답	1,655.0	345.4	국토교통부					
4	월계동	154-8	철도	3,506.0	5.7	국토교통부					
5	월계동	106-3	철도	40,637.0	8.1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36634.1/40637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4002.9 /40637

○ 소로3-가1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12,434.0	240.7						
1	월계동	154-7	철도	6,524.0	218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2	월계동	154	철도	4,660.0	15.0	국토교통부					
3	월계동	163-2	철도	1,250.0	7.7	노원구					

나. 녹 지

○ 완충녹지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99,467.0	1,811.1						
1	월계동	154-7	철도	6,524.0	204.7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2	월계동	163-2	철도	1,250.0	170.2	노원구					
3	월계동	154	답	4,660.0	1,396.1	국토교통부					
4	월계동	85	철도	87,033.0	40.1	국토교통부					

○ 완충녹지②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153,341.0	4,893.2						
1	월계동	106-20	철도	11,680.0	1,149.5	국토교통부					
2	월계동	106-21	철도	2,190.0	284.3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	월계동	87-1	철도	2,054.0	93.0	노원구					
4	월계동	85	철도	87,033.0	259.8	국토교통부					
5	월계동	84-5	철도	1,178.0	101.0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1139/ 1178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39/ 1178
6	월계동	85-7	철도	49,206.0	3,005.6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				49058 /49206
						한국철도공사	〃				148 /49206

◈ 서초구고시 제2025-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82-50호(1982.2.3.)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251호(1984.5.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87-126호(1987.3.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2호(2018.7.12.)로 변경결정된 동덕여자중·고등학교(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부정형 토지에 대하여 토지 정형화를 위한 학교용지 매수요청에 따라 용도 변경(교육용 → 수익용) 승인된 토지(교육부 '24.6.20)에 대하여 용지 처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중·고등학교 (동덕여자중·고)	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	35,047.4	감) 330.0	34,717.4	1982.2.3. (서고50)	

□ 건축물의 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 고
60 이하	150 이하	4층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교	○ 면적축소 - 35,047.4㎡→34,717.4㎡ (감)330.0㎡	○ 학교용지 매수요청에 따라 용도 변경(교육용 → 수익용)된 토지(교육부 '24.6.20)에 대하여 용지 처분을 위한 면적 변경하고자 함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4.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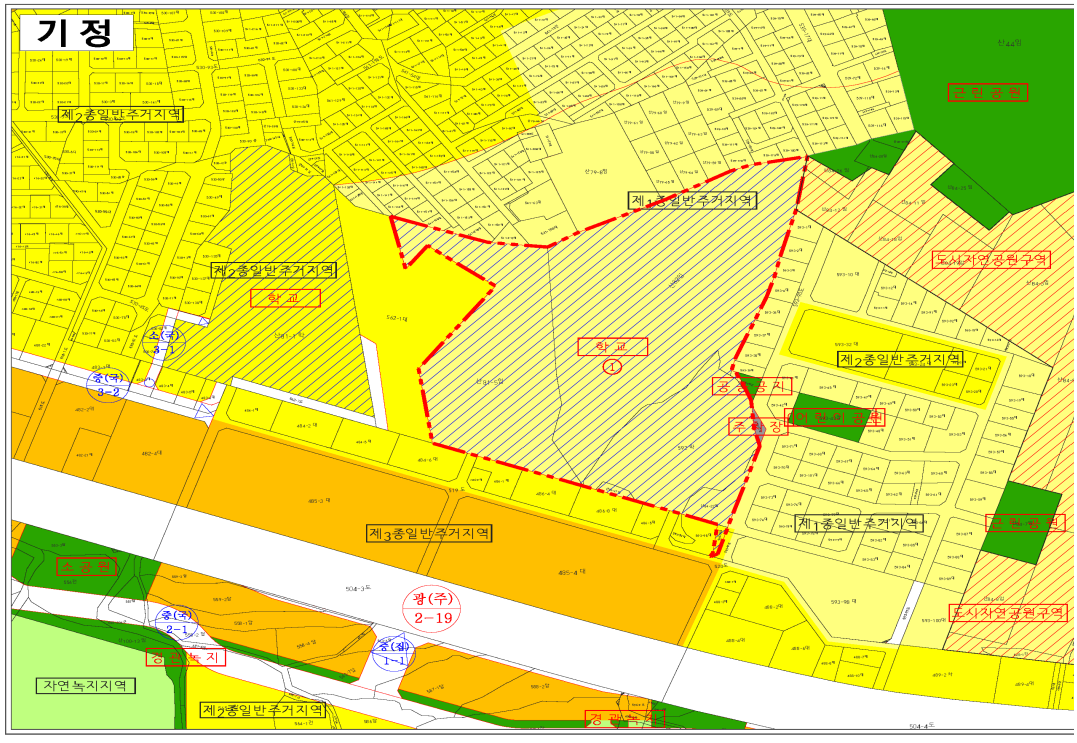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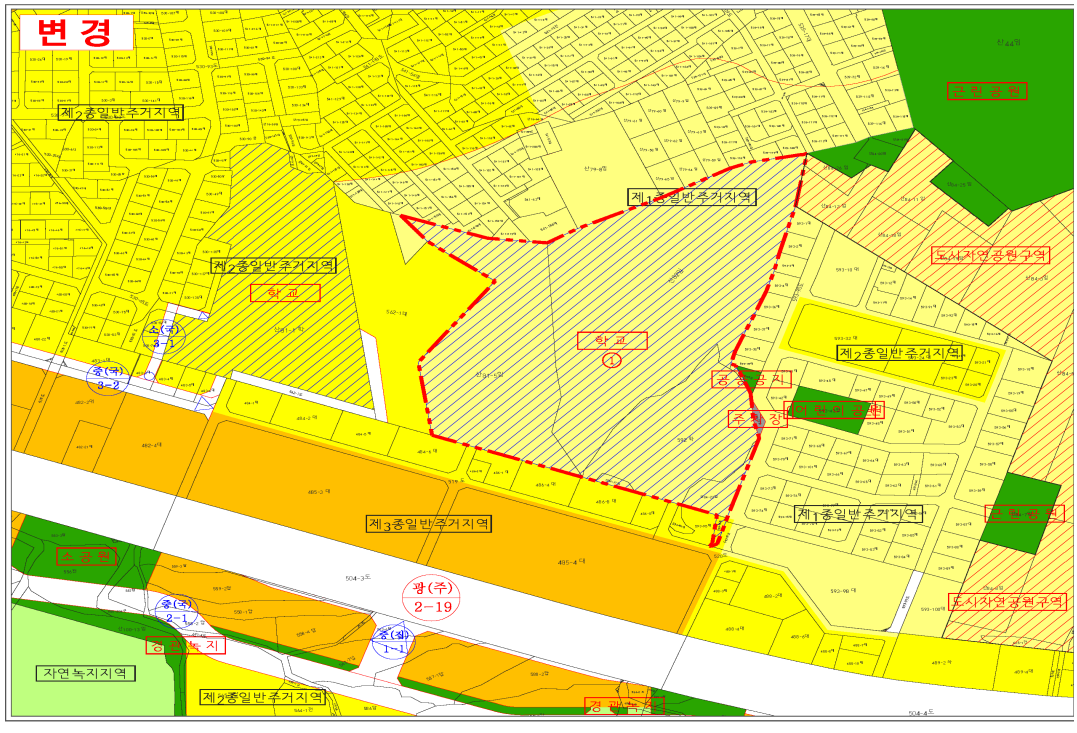

◈ 송파구고시 제2025-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송파구 고시 제2024-80호(2024. 10. 4.)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되고, 송파구 공고 제2024-2023호(2024. 11. 7.)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 된 잠실동 230-3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송 파 구 청 장

Ⅰ.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30-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사회복지시설: 송파경찰서 직장어린이집)
- 명칭: 제5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8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울 송파경찰서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328.6㎡
- 규모: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608.17㎡, 건축면적 196.55㎡, 용적률 143.24%, 건폐율 59.8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경찰청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5. 11. 30.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30-3	대	328.6	328.6	경찰청	-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	-	-	-
계				328.6	328.6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0)로 문의 바랍니다.

Ⅱ. 참고사항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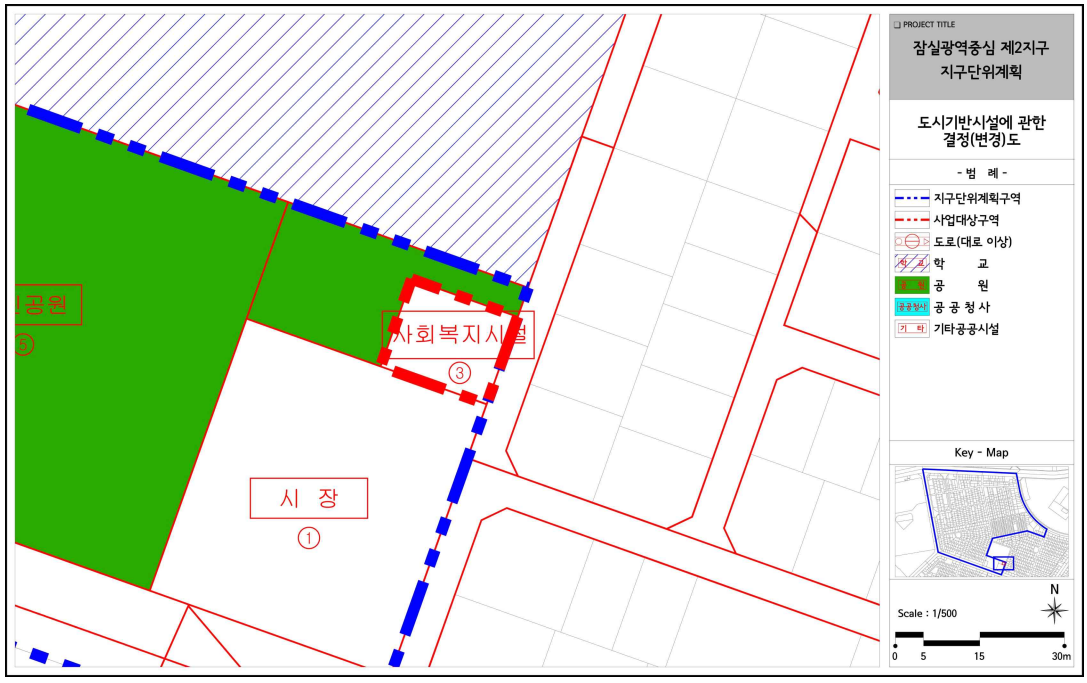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25-1호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 광진구 관내 2024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84), 도로과(☎450-78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월 2일
광 진 구 청 장

가.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2024년)

(단위 : 백만원)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25~' 26년)			2-1단계('27~' 28년)			2-2단계('28년 이후)			
	건수	면적(㎡)	소요예산	건수	면적(㎡)	소요예산	건수	면적(㎡)	소요예산	건수	면적(㎡)	소요예산	
계	23	46,762	307,267	-	-	-	-	-	-	23	46,762	307,267	
도로	12	28,845	160,002	-	-	-	-	-	-	12	28,845	160,002	
공원	4	7,358	61,754	-	-	-	-	-	-	4	7,358	61,754	
문화시설	1	1,900	18,674	-	-	-	-	-	-	1	1,900	18,674	
공공공지	1	750	7,371	-	-	-	-	-	-	1	750	7,371	
주차장	2	5,820	43,666	-	-	-	-	-	-	2	5,820	43,666	
공공청사	1	1,029	7,800	-	-	-	-	-	-	1	1,029	7,800	
사회복지시설	2	1,060	8,000	-	-	-	-	-	-	2	1,060	8,000	

나.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 별첨

다. 관련도서 : 생략

단계별집행계획(23건)

연번	시설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22	'23	'24	'25	'26	'27년 이후	
						계	시군비									
1	도로	위치:구의동 80-25~620-16 규모:폭원4~6m, 연장30m	-	-											-	'30.04.23
2	도로	위치:중곡동 294-16~294-1 규모:폭원6m, 연장165m	-	-											-	'27.12.07
3	도로	위치:자양동 716~구의동 591-29 규모:폭원18m, 연장434m	2027~	35,650					35,650						35,650	'29.06.05
4	도로	위치:자양동 683-6~781-4 규모:폭원18m, 연장408m	2027~	23,247					23,247						23,247	'29.06.05
5	도로	위치:자양동 680-86~680-83 규모:폭원12m, 연장270m	2027~	14,785					14,785						14,785	'29.06.05
6	도로	위치:자양동 779-2~779-24 규모:폭원8m, 연장170m	2027~	4,131					4,131						4,131	'29.06.05
7	도로	위치:자양동 778-18~777-1 규모:폭원6~8m, 연장346m	2027~	2,799					2,799						2,799	'29.06.05
8	공원	위치:자양동 680-81일대(지상) 규모:면적2,820㎡	2027~	27,781					27,781						27,781	'29.06.05
9	문화시설	위치:자양동 680-81일대 규모:면적1,900㎡	2027~	18,674					18,674						18,674	'29.06.05
10	공공공지	위치:자양동 680-81일대 규모:면적750㎡	2027~	7,371					7,371						7,371	'29.06.05
11	주차장	위치:자양동 680-81일대(지하) 규모:면적2,820㎡	2027~	27,716					27,716						27,716	'29.06.05
12	공원	위치:자양동 553-267일대 규모:면적471.8㎡	2027~	7,829					7,829						7,829	'31.01.21
13	도로	위치:구의동 253-53~254-15 규모:폭원8m, 연장197m	2027~	13,236					13,236						13,236	'35.10.02

연번	시설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22	'23	'24	'25	'26	'27년 이후	
						계	시군비									
14	도로	위치:구의동 254-97~254-108 규모:폭원6~10m, 연장430m	2027~	6,239					6,239						6,239	'35.10.02
15	도로	위치:구의동 254-102~254-30 규모:폭원8m, 연장54m	2027~	2,628					2,628						2,628	'35.10.02
16	도로	위치:구의동 254-33~254-114 규모:폭원8m, 연장57m	2027~	5,187					5,187						5,187	'35.10.02
17	공원	위치:구의동 254-104일대 규모:면적1,066㎡	2027~	10,194					10,194						10,194	'35.10.02
18	도로	위치:자양동 582-1~482-1 규모:폭원12m, 연장454m	2027~	52,100					52,100						52,100	'38.08.31
19	주차장	위치:자양동 471일대(지하) 규모:면적3,000㎡	2027~	15,950					15,950						15,950	'38.08.31
20	공원	위치:자양동 471일대(지상) 규모:면적3,000㎡	2027~	15,950					15,950						15,950	'38.08.31
21	공공청사	위치:자양동 462-20 일대 규모:면적1,029㎡	2027~	7,800					7,800						7,800	'38.08.31
22	사회복지시설	위치:자양동 466-12일대(어린이집) 규모:면적860㎡	2027~	6,700					6,700						6,700	'38.08.31
23	사회복지시설	위치:자양동 466-16일대(경로당) 규모:면적200㎡	2027~	1,300					1,300						1,300	'38.08.31
	총 계		307,267						307,267						307,267	

※ 개략산출금액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도로 12건(160,002백만원), 공원 4건(61,754백만원), 문화시설 1건(18,674백만원), 공공공지 1건(7,371백만원), 주차장 2건(43,666백만원)
공공청사 1건(7,800백만원), 사회복지시설 2건(8,000백만원)

◈ 중랑구공고 제2025-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중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중 랑 구 청 장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부문	계			단계별 집행시기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계	2	593	5,100	2	593	5,100	-	-	-
공공공지	2	593	5,100	2	593	5,100	-	-	-

2.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단위:백만원)

시설부문	우선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2025~2029)										비고(실효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위치(또는 사업명)	사업기간	주요내용	총사업비	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시비	구비	민간투자	공공기여	'25	'26	'27	'28	'29	
공공공지	1	신내동 283-4 일대	'27	소공원 조성 A=238㎡	3,300	3,300	-	-	3,300	-		3,000	300	-	-	'29.02.12.
공공공지	2	신내동 278-8 일대	'27	소공원 조성 A=355㎡	1,800	1,800	-	-	1,800	-		1,600	200	-	-	'29.06.18.

3. 본 공고문에 대한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시계획과(2094-2174) 및 공원녹지과(2094-23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강서구공고 제2024-2537호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138호(1997.0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93호 (2001.06.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3호(2020.01.3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호-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38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일
강 서 구 청 장

1. 공원현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봉제산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산 1번지 일대
   다. 면 적 : 370,891.5㎡
2. 조성계획 주요 변경내용
   가. 주요 변경내용 : 봉제산근린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에 따른 공원시설 종류 및 면적 변경
   나. 변경내역
      - 기반시설 : (증) 3,279㎡(14,156㎡ → 17,435㎡)
        도로 (증) 3,245㎡(13,780㎡ → 17,025㎡)
        광장 (증) 34㎡(376㎡ → 410㎡)
      - 편익시설 : (증) 33㎡(2,207㎡ → 2,240㎡)
      - 녹 지 : (감) 3,312㎡(299,760.43㎡ → 296,448.43㎡)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 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5. 열람장소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 02-2600-4182)
6.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인 강서구 공원녹지과(☏ 02-2600-4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1-2번지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건축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건축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370,891.5	71,131.07	8	2,581.29	3,869.55	352	370,891.5	74,443.07	8	2,581.29	3,869.55	352	증 3,312㎡
기사 소계	14,156	14,156				4	17,435	17,435				4	증 3,279㎡
기사 도로	13,780	13,780					17,025	17,025					증 3,245㎡
기사 광장	376	376					410	410					증 34㎡
조경시설	11,888	11,888				38	11,888	11,888				38	
휴양시설	5,834	5,834	2	366	1,370	67	5,834	5,834	2	366	1,370	67	
유희시설	1,992	1,992				72	1,992	1,992				72	
운동시설	10,362	10,362	2	1,784.22	1,844.97	125	10,362	10,362	2	1,784.22	1,844.97	125	
교양시설	24,632.07	24,632.07	1	276.07	499.58	46	24,632.07	24,632.07	1	276.07	499.58	46	
편익시설	2,207	2,207	2	95	95		2,240	2,240	2	95	95		증 33㎡
관리시설	60	60	1	60	60		60	60	1	60	60		
녹지 및 기타 녹지	299,760.43						296,448.43						감 3,312㎡
시설율 (법정 40%)	(71,131.07 / 370,891.5) x 100 = 19.17%						(74,443.07 / 370,891.5) x 100 = 20.07%						
건폐율 (법정 10%)	(2,581.29 / 370,891.5) x 100 = 0.69%						(2,581.29 / 370,891.5) x 100 = 0.69%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370,891.5	71,131.07		8	2,581.29	3,869.55	352			370,891.5	74,443.07		8	2,581.29	3,869.55	352	증 3,312㎡
기반시설	소 계			14,156	14,156					4			17,435	17,435					4	증 3,279㎡
	도 로		전지역	13,780	13,780							전지역	17,025	17,025						증 3,245㎡
	광 장	가	2개소	376	376					4	가	2개소	410	410					4	증 34㎡
		가-5	화곡동 산22-21임	239	239					1	가-5	화곡동 산22-21임	239	239					1	
		가-6	화곡동 산5-15임	137	137					3	가-6	화곡동 산5-15임	171	171					3	증 34㎡
조경시설	소 계			11,888	11,888					38			11,888	11,888					38	
	잔디광장	나	2개소	9,306	9,306					8	나	2개소	9,306	9,306					8	
		나-1	화곡동 산47-16공	9,116	9,116					1	나-1	화곡동 산47-16공	9,116	9,116					1	
		나-3	화곡동 산22-86임	190	190					7	나-3	화곡동 산22-86임	190	190					7	
	조각공원	다	등촌동 산23-4임	506	506					10	다	등촌동 산23-4임	506	506					10	
	미니수목원	라	화곡동 산22-102임	337	337						라	화곡동 산22-102임	337	337						
	산마루공원	마	화곡동 산1-1임	751	751					20	마	화곡동 산1-1임	751	751					20	
	조경녹지	바	화곡동 산42-10임	102	102						바	화곡동 산42-10임	102	102						
	치유의숲	머	화곡동 산48-3임	886	886						머	화곡동 산48-3임	886	88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 계			5,834	5,834	R.C조	2	366	1,370	67			5,834	5,834	R.C조	2	366	1,370	67	
	휴게소	사	12개소	5,107	5,107					63	사	12개소	5,107	5,107					63	
		사-1	화곡동 산22-89임	1,337	1,337					24	사-1	화곡동 산22-89임	1,337	1,337					24	
		사-2	등촌동 산89-6임	392	392					8	사-2	등촌동 산89-6임	392	392					8	
		사-5	화곡동 산47-16공	321	321					2	사-5	화곡동 산47-16공	321	321					2	
		사-6	화곡동 산42-10임	285	285					1	사-6	화곡동 산42-10임	285	285					1	
		사-8	화곡동 산5-5	506	506					12	사-8	화곡동 산5-5	506	506					12	
		사-9	화곡동 산5-6임	187	187					3	사-9	화곡동 산5-6임	187	187					3	
		사-10	등촌동 산5-12임	398	398					3	사-10	등촌동 산5-12임	398	398					3	
		사-11	화곡동 산41-16임	249	249					10	사-11	화곡동 산41-16임	249	249					10	
		사-13	화곡동 680-50도	224	224						사-13	화곡동 680-50도	224	224						
		사-14	화곡동 680-10도	325	325						사-14	화곡동 680-10도	325	325						
		사-15	등촌동 산86임	745	745						사-15	등촌동 산86임	745	745						
		사-16	화곡동 산204-3임	138	138						사-16	화곡동 산204-3임	138	138						
	경로당	1	화곡동 산47-16공	160	160	R.C조	1	46	90		1	화곡동 산47-16공	160	160	R.C조	1	46	9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연면적		
	노인복지회관	2	화곡동 산41-16임	567	567	R.C조	1	320	1,280	4	2	화곡동 산41-16임	567	567	R.C조	1	320	1,280	4	
유희시설	소 계			1,992	1,992					72			1,992	1,992					72	
	어린이 놀이터	아	5개소	1,992	1,992					72	아	5개소	1,992	1,992					72	
		아-1	화곡동 산47-16공	208	208					3	아-1	화곡동 산47-16공	208	208					3	
		아-2	화곡동 산22-73임	911	911					21	아-2	화곡동 산22-73임	911	911					21	
		아-6	등촌동 산86임	323	323					6	아-6	등촌동 산86임	323	323					6	
		아-7	화곡동 산22-86임	107	107					1	아-7	화곡동 산22-86임	107	107					1	
		아-8	화곡동 산53-4임	443	443					41	아-8	화곡동 산53-4임	443	443					41	
운동시설	소 계			10,362	10,362		2	1,784.22	1,844.97	125			10,362	10,362		2	1,784.22	1,844.97	125	
	모험놀이시설	자	화곡동 476-13임	1,914	1,914					18	자	화곡동 476-13임	1,914	1,914					18	
	배드민턴장	차	화곡동 산47-16공	657	657					8	차	화곡동 산47-16공	657	657					8	
	족구장	카	화곡동 산47-16공	519	519						카	화곡동 산47-16공	519	519						
	다목적 운동장	파	화곡동 산47-16공	651	651					3	파	화곡동 산47-16공	651	651					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다목적 체육관	7	2개소	4,059	4,059		2	1,784.22	1,844.97	29	7	2개소	4,059	4,059		2	1,784.22	1,844.97	29	
		7-1	화곡동 산22-32	1,285	1,285	파형강판조	1	811.80	872.55	16	7-1	화곡동 산22-32	1,285	1,285	파형강판조	1	811.80	872.55	16	
		7-2	화곡동 산22-80	2,774	2,774	철골조	1	972.42	972.42	13	7-2	화곡동 산22-80	2,774	2,774	철골조	1	972.42	972.42	13	
	체력단련장	하	8개소	2,562	2,562					67	하	8개소	2,562	2,562					67	
		하-1	화곡동 42-125대	1,360	1,360					44	하-1	화곡동 42-125대	1,360	1,360					44	
		하-2	화곡동 204-3임	397	397					6	하-2	화곡동 204-3임	397	397					6	
		하-3	화곡동 42-125대	106	106					5	하-3	화곡동 42-125대	106	106					5	
		하-4	화곡동 산42-10임	64	64					9	하-4	화곡동 산42-10임	64	64					9	
		하-5	화곡동 산47-16공	46	46					3	하-5	화곡동 산47-16공	46	46					3	
		하-6	등촌동 산87-5임	247	247						하-6	등촌동 산87-5임	247	247						
		하-7	화곡동 산5-5임	167	167						하-7	화곡동 산5-5임	167	167						
		하-8	화곡동 산5-5임	175	175						하-8	화곡동 산5-5임	175	17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양평교육지원청	소계				24,632.07	24,632.07		1	276.07	499.58	46			24,632.07	24,632.07		1	276.07	499.58	46	
	자연체험습쉼터		거	1개소	23,447.07	23,447.07		1	276.07	499.58	26	거	1개소	23,447.07	23,447.07		1	276.07	499.58	26	
		조경녹지	거-1	화곡동 산42-6외	19,792	19,792					14	거-1	화곡동 산42-6외	19,792	19,792					14	
		광장	거-2	화곡동 산43-20	1,576	1,576						거-2	화곡동 산43-20	1,576	1,576						
		파고라	거-3	화곡동 산42-6	42	42					1	거-3	화곡동 산42-6	42	42					1	
		육각정자	거-4	화곡동 산42-6	25	25					1	거-4	화곡동 산42-6	25	25					1	
		어린이놀이터	거-5	화곡동 산41-6	731	731					1	거-5	화곡동 산41-6	731	731					1	
		감성놀이마당	거-6	화곡동 산43-20	163	163					5	거-6	화곡동 산43-20	163	163					5	
		다목적운동장	거-7	화곡동 산42-6	842	842					4	거-7	화곡동 산42-6	842	842					4	
		봉제산책쉼터	거-8	화곡동 산41-6	276.07	276.07	철근콘	1	276.07	499.58		거-8	화곡동 산41-6	276.07	276.07	철근콘	1	276.07	499.5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봉수대	너	화곡동 산42-1임	783	783					20	너	화곡동 산42-1임	783	783					20	
	유아동네 숲터	서	2개소	402	402						서	2개소	402	402						
		서-1	화곡동 산48-3임	237	237						서-1	화곡동 산48-3임	237	237						
		서-2	화곡동 산86임	165	165						서-2	화곡동 산86임	165	165						
편익시설	소계			2,207	2,207		2	95	95				2,240	2,240		2	95	95		KIO 33㎡
	주차장	더	4개소	1,621	1,621						더	5개소	1,654	1,654						KIO 33㎡
		더-1	화곡동 산47-16공	593	593	아스콘					더-1	화곡동 산47-16공	593	593	아스콘					
		더-2	화곡동 산42-7임	529	529	투수블럭					더-2	화곡동 산42-7임	529	529	투수블럭					
		더-3	화곡동 산41-11임	319	319	투수블럭					더-3	화곡동 산41-11임	319	319	투수블럭					
		더-4	화곡동 42-114대	180	180	잔디블럭					더-4	화곡동 42-114대	180	180	잔디블럭					
		더-5	화곡동 산5-15임								더-5	화곡동 산5-15임	33	33	투수블럭					KIO 33㎡
	약수터	러	화곡동 산5-7임	23	23						러	화곡동 산5-7임	23	2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장실	3	5개소	425	425	R.C조	2	95	95		3	5개소	425	425	R.C조	2	95	95		
		3-1	화곡동 산47-16공	310	310	R.C조	1	35	35		3-1	화곡동 산47-16공	310	310	R.C조	1	35	35		
		3-2	화곡동 산22-83임	60	60	R.C조	1	60	60		3-2	화곡동 산22-83임	60	60	R.C조	1	60	60		
		3-3	화곡동 42-134대	20	20						3-3	화곡동 42-134대	20	20						
		3-4	화곡동 산22-32임	20	20						3-4	화곡동 산22-32임	20	20						
		3-5	화곡동 산23-4임	15	15						3-5	화곡동 산23-4임	15	15						
	전망대	버	2개소	138	138						버	2개소	138	138						
		버-1	화곡동 산42-14임	115	115						버-1	화곡동 산42-14임	115	115						
		버-2	화곡동 산210임	23	23						버-2	화곡동 산210임	23	23						
관리시설	소계			60	60		1	60	60				60	60		1	60	60		
	관리사무소	6	화곡동 산47-16공	60	60	R.C조	1	60	60		6	화곡동 산47-16공	60	60	R.C조	1	60	60		
녹지및기타	녹지		전지역	299,760.43								전지역	296,448.43							감 3,312㎡

3. 도로조서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6,738	13,780				
변경					8,370	17,025				
당초	소로	소 계			941	3,058				
변경					941	3,058				
당초		3	1	4.0	153	482	진입도로	등촌동 산23-36임	휴게소 (사-6)	
당초		3	2	6.0	274	1,653	진입도로	화곡동 산41-15임	산책로 58	
당초		3	3	3.5	12	42	진입도로	산책로 27	배드민턴장 (차-3)	
당초		3	5	2.0	214	427	진입도로	어린이놀이터 (아-2)	모험놀이시설 (자)	
당초		3	6	1.5	91	136	진입도로	산책로 73	모험놀이시설 (자)	
당초		3	8	1.5	69	104	진입도로	등촌동 산87-5임	산책로 40	
당초		3	9	3.0	128	214	진입도로	화곡동 산22-24임	다목적체육관 (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소 계			5,797	10,722				
변경					7,429	13,967				
당초		3	1	2.0	202	403	산책로	도자구역	화곡동 산211임	
당초		3	2	1.5	171	253	부진입 도로	등촌동 366-157도	산책로 1	
당초		3	3	1.5	73	110	등산로	산책로 2	체력단련장 (하-2)	
당초		3	4	1.5	200	303	등산로	체력단련장 (하-2)	산책로 7	
당초		3	5	1.5	46	60	산책로	도자구역	체력단련장 (하-2)	
당초		3	6	1.5	51	77	등산로	도자구역	도자구역	
당초		3	7	2.5	35	99	부진입 도로	도자구역	체력단련장 (하-1)	
당초		3	10	1.5	2	3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13	1.5	203	313	산책로	도자구역	소로 3-1	
당초		3	14	1.5	94	135	부진입 도로	화곡동 42-114대	체력단련장 (하-3)	
당초		3	15	2.0	11	23	등산로	체력단련장 (하-3)	산책로 16	
당초		3	16	3.0	62	171	등산로	체력단련장 (하-1)	조각공원 (다)	
당초		3	17	1.5	193	282	산책로	도자구역	자연학습원 (거)	
당초		3	18	1.5	18	26	등산로	도자구역	산책로 20	
당초		3	19	3.0	31	115	등산로	산책로 20	조각공원 (다)	
당초		3	20	3.0	82	230	등산로	산책로 19	봉수대 (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21	3.0	95	288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22	
당초		3	22	3.0	560	1,679	등산로	도자구역	봉수대 (너)	
변경		3	22	3.0	559	1674	등산로	도자구역	봉수대 (너)	
당초		3	23	1.0	22	22	등산로	도자구역	산책로 22	
당초		3	24	3.0	7	23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22	
당초		3	26	2.3	50	115	산책로	도자구역	배드민턴장 (차-3)	
당초		3	27	1.5	368	545	산책로	휴게소 (사-1)	산책로 22	
당초		3	28	2.0	99	198	산책로	산책로 22	도자구역	
당초		3	29	1.5	205	307	부진입 도로	등촌동 산15-3임	산책로 30	
당초		3	30	1.5	170	253	부진입 도로	등촌동 산86임	산책로 22	
당초		3	31	1.5	13	20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27	
당초		3	32	1.5	21	32	등산로	산책로 34	다목적체육관 (7)	
당초		3	34	1.5	92	138	산책로	휴게소 (사-1)	모험놀이시설 (자)	
당초		3	37	1.5	96	144	산책로	도자구역	도자구역	
당초		3	38	1.5	18	27	등산로	도자구역	산책로 22	
당초		3	39	1.5	126	188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30	
당초		3	41	1.5	112	191	등산로	휴게소 (사-10)	산책로 22	
당초		3	42	1.5	36	58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41	
당초		3	44	1.5	33	50	산책로	도자구역	휴게소 (사-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45	1.5	39	58	부진입 도로	광장 (가-6)	휴게소 (사-2)	
당초		3	46	1.5	58	87	등산로	휴게소 (사-10)	휴게소 (사-2)	
당초		3	47	1.5	88	132	부진입 도로	도자구역	휴게소 (사-2)	
당초		3	49	3.5	17	64	산책로	배드민턴장 (차-3)	도자구역	
당초		3	50	2.0	51	102	산책로	산책로 14	화곡동 42-114	
당초		3	52	1.5	133	199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1	
당초		3	53	2.0	194	388	부진입 도로	도자구역	화곡동 산211임	
당초		3	54	1.5	2	3	산책로	잔디광장 (나-1)	산책로 18	
당초		3	55							(도자구역)
당초		3	56	2.0	15	29	산책로	주차장 (더-1)	산책로 57	
당초		3	57	2.0	26	50	산책로	화곡동 산47-16공	잔디광장 (나-1)	
당초		3	58							(도자구역)
당초		3	59	2.0	242	485	산책로	휴게소 (사-1)	별빛공원 (서)	
당초		3	60	1.5	33	52	산책로	산책로 27	휴게소 (사-1)	
당초		3	61	1.5	86	129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아-8)	산책로 7	
당초		3	62	2.0	58	115	산책로	주차장 (더-1)	산책로 14	
당초		3	63	1.5	228	342	산책로	산책로 27	도자구역	
당초		3	64	1.5	4	7	산책로	산책로 22	도자구역	
당초		3	65	1.5	27	40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4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66	3.0	127	376	산책로	체력단련장 (하-7)	화곡동 488-47대	
당초		3	67	2.0	3	6	산책로	산책로 66	휴게소 (사-8)	
당초		3	68	1.5	81	123	산책로	휴게소 (사-8)	도자구역	
변경		3	68							(폐지)
당초		3	70	1.5	23	35	산책로	휴게소 (사-8)	도자구역	
당초		3	71	2.0	2	4	산책로	체력단련장 (하-7)	도자구역	
당초		3	72	2.0	104	208	산책로	별빛공원 (서)	잔디광장 (나-3)	
당초		3	73	1.8	143	257	부진입도로	자연학습체험장	산책로 17	무장애데크
당초		3	74	1.8	149	268	산책로	산책로 17	산책로 17	무장애데크
당초		3	75	1.8	109	196	산책로	산책로 53	산책로 17	무장애데크
당초		3	76	1.8	3	5	산책로	산책로 52	책쉼터	무장애데크
신설		3	77	1.8	71	137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45	무장애데크
신설		3	78	1.8	144	266	산책로	산책로 45	산책로83	무장애데크
신설		3	79	1.8	378	688	산책로	산책로 83	산책로 45	무장애데크
신설		3	80	1.8	240	493	산책로	산책로 45	산책로 65	무장애데크
신설		3	81	1.8	193	345	산책로	산책로 65	산책로 22	무장애데크
신설		3	82	1.8	706	1318	산책로	산책로 22	산마루공원 (마)	무장애데크
신설		3	83	1.5	137	207	산책로	산책로 47	도자구역	

조성계획도[변경전]

봉제산근린공원

SCALE=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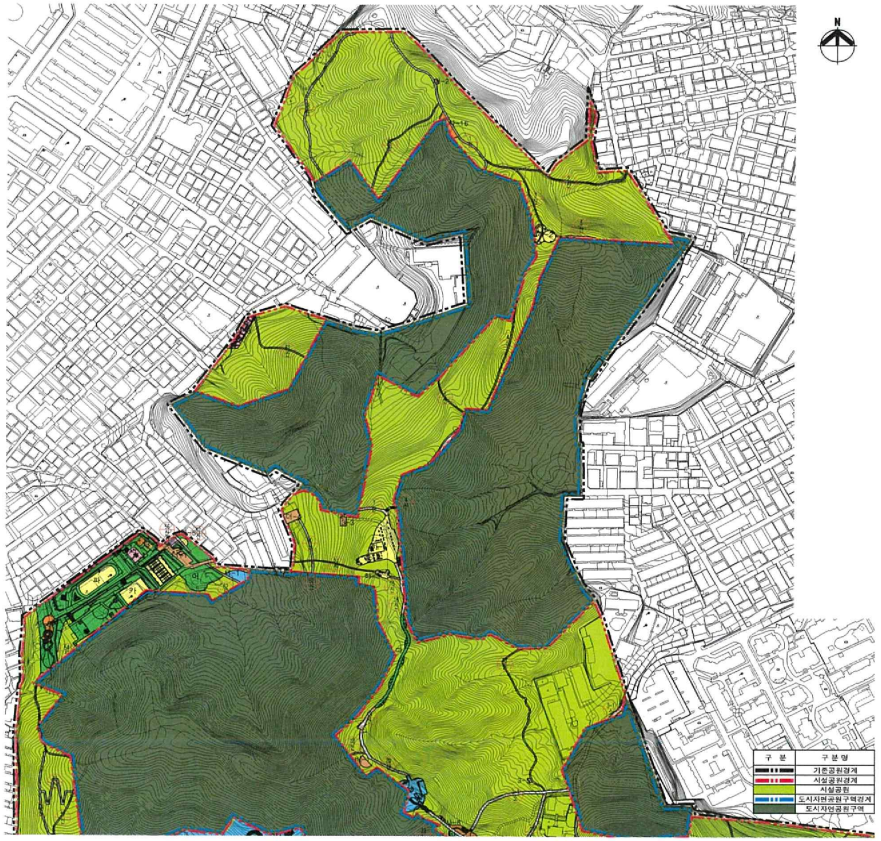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370,891.3	71,131.07	352	
기반시설	소 계		14,156	14,156	4	
	도 로	(소)	13,769	13,769		
	광 장	가	376	376	4	
		가-5	239	239	1	
		가-6	137	137	3	
환경시설	소 계		11,888	11,688	38	
	잔디광장	나	9,306	9,306	8	
		나-1	9,116	9,116	1	
		나-3	190	190	7	
	조각공원	다	506	506	10	
	미니수목원	라	337	337		
	산마루공원	마	751	751	20	
	조경녹지	바	102	102		
	치유텃숲	머	886	886		
휴양시설	소 계		5,634	5,634	67	
	휴 게 소	사	5,107	5,107	63	
		사-1	1,337	1,337	24	
		사-2	392	392	6	
		사-5	321	321	2	
		사-6	285	285	1	
		사-8	506	506	12	
		사-9	187	187	3	
		사-10	398	398	3	
		사-11	249	249	10	
		사-13	224	224		
		사-14	325	325		
		사-15	745	745		
		사-16	136	136		
	경로당	1	160	160		
	노인복지회관	2	567	567	4	
유희시설	소 계		1,992	1,992	72	
	어린이놀이터	이	1,992	1,992	72	
		이-1	208	208	3	
		이-2	911	911	21	
		이-6	323	323	6	
		이-7	107	107	1	
		이-8	443	443	41	

조성계획도[변경전]

봉제산근린공원

SCALE=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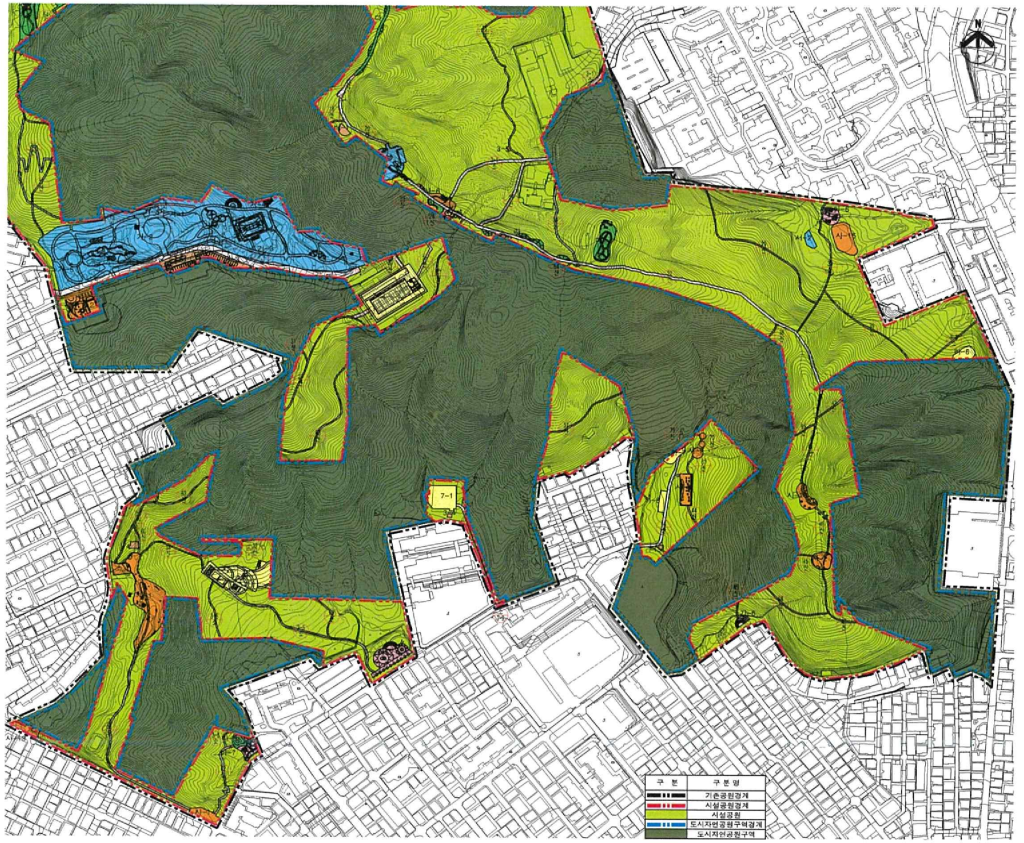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운동시설	소 계		10,362	10,362	125	
	모험놀이시설	자	1,914	1,914	18	
	배 드 민 턴 장	차	657	657	8	
	족구장	카	519	519		
	다목적운동장	파	651	651	3	
	다목적체육관	7	4,059	4,059	29	
		7-1	1,285	1,285	16	
		7-2	2,774	2,774	13	
	체 력 단 련 장	하	2,562	2,562	67	
		하-1	1,360	1,360	44	
		하-2	397	397	6	
		하-3	106	106	5	
		하-4	64	64	9	
		하-5	46	46	3	
		하-6	247	247		
		하-7	167	167		
		하-8	175	175		
교양시설	소 계		24,632.07	24,632.07	46	
	지면체험학습원	거	23,447.07	23,447.07	26	
		거-1	19,792	19,792	14	
		거-2	1,576	1,576		
		거-3	42	42	1	
		거-4	25	25	1	
		거-5	731	731	1	
		거-6	163	163	5	
		거-7	842	842	4	
		거-8	276.07	276.07		
	봉수대	너	783	783	20	
	무아몰네슬터	서	402	402		
		서-1	237	237		
		서-2	165	165		
편익시설	소 계		2,207	2,207		
	주 차 장	더	1,621	1,621		
		더-1	593	593		
		더-2	529	529		
		더-3	319	319		
		더-4	180	180		
	망 수 터	러	23	23		
	화 장 실	3	425	425		
		3-1	310	310		
		3-2	60	60		
		3-3	20	20		
		3-4	20	20		
		3-5	15	15		
	전 망 대	버	138	138		
		버-1	115	115		
		버-2	23	23		
관리시설	소 계		60	60		
	관리사무소	5				
		6	60	60		
녹지및기타	소 계		239,760.43			
	녹 지		239,760.43			

조성계획도[변경후]

봉제산근린공원

SCALE=1/2,000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370,891.5	74,443.07	352	중1 3,312
기반시설	소 계		17,435	17,435	4	중1 3,279
	호 로	㈜	17,025	17,025		중1 3,245
	광 장	가	410	410	4	중1 34
		가-5	239	239	1	
		가-6	171	171	3	중1 34
환경시설	소 계		11,888	11,668	38	
	전다원장	나	9,306	9,306	8	
		나-1	9,116	9,116	1	
		나-2	190	190	7	
	조각공원	다	506	506	10	
	미니수목원	라	337	337		
	산마루공원	마	751	751	20	
	조경녹지	바	102	102		
	치유해송	머	886	886		
공간시설	소 계		5,834	5,834	67	
	휴 게 소	사	5,107	5,107	63	
		사-1	1,337	1,337	24	
		사-2	392	392	8	
		사-5	321	321	2	
		사-6	285	285	1	
		사-8	506	506	12	
		사-9	187	187	3	
		사-10	398	398	3	
		사-11	249	249	10	
		사-13	224	224		
		사-14	325	325		
		사-15	745	745		
		사-16	138	138		
	경로당	1	160	160		
	노인복지회관	2	567	567	4	
유희시설	소 계		1,992	1,992	72	
	어린이놀이터	아	1,992	1,992	72	
		아-1	208	208	3	
		아-2	911	911	21	
		아-6	323	323	6	
		아-7	107	107	1	
		아-8	443	443	41	

조성계획도[변경후]

봉제산근린공원

SCALE=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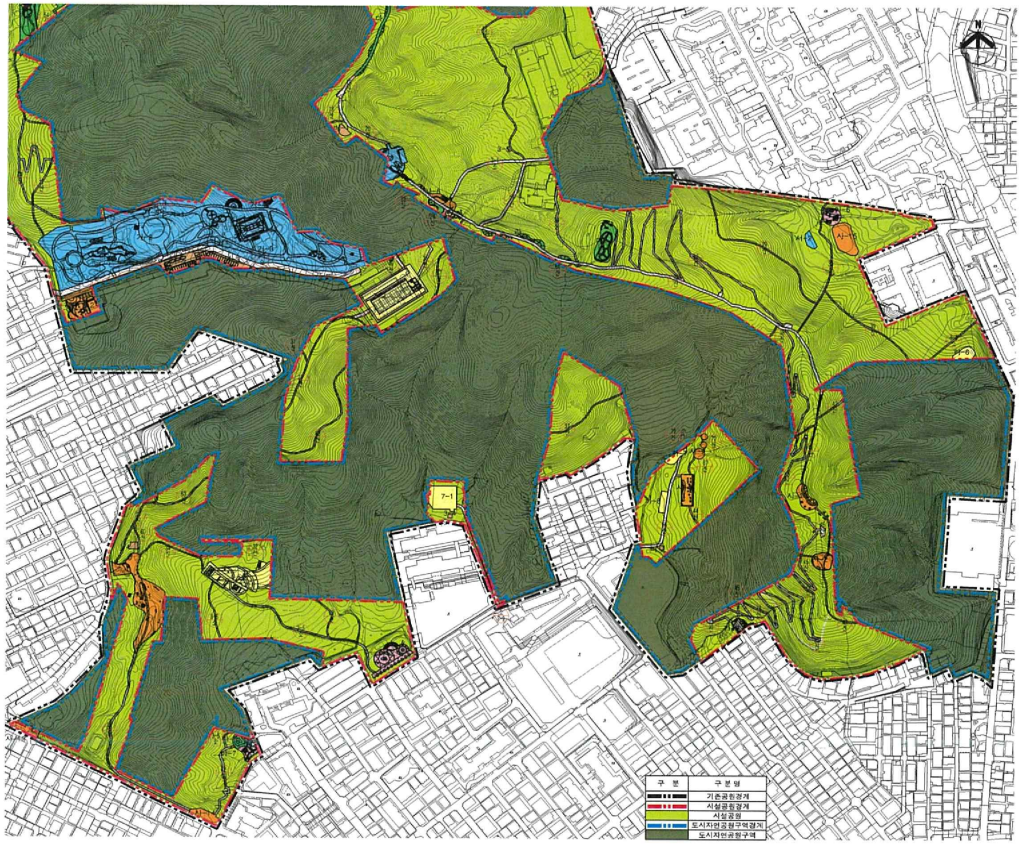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운동시설	소 계		10,362	10,362	125	
	모험놀이시설	차	1,914	1,914	18	
	배 드 민 턴 장	차	657	657	8	
	축구장	카	519	519		
	다목적운동장	파	651	651	3	
	다목적체육관	7	4,059	4,059	29	
		7-1	1,285	1,285	16	
		7-2	2,774	2,774	13	
	체 력 단 련 장	하	2,562	2,562	67	
		하-1	1,360	1,360	44	
		하-2	397	397	6	
		하-3	136	136	5	
		하-4	64	64	9	
		하-5	46	46	3	
		하-6	247	247		
		하-7	167	167		
		하-8	175	175		
교양시설	소 계		24,632.07	24,632.07	46	
	자연체험학습원	거	23,447.37	23,447.37	26	
		거-1	19,792	19,792	14	
		거-2	1,576	1,576		
		거-3	42	42	1	
		거-4	25	25	1	
		거-5	731	731	1	
		거-6	163	163	5	
		거-7	642	642	4	
		거-8	276.07	276.07		
	분수대	너	783	783	20	
	유아물놀이터	서	402	402		
		서-1	237	237		
		서-2	165	165		
편의시설	소 계		2,240	2,240		증1.33
	주 차 장	더	1,664	1,664		증1.33
		더-1	593	593		
		더-2	529	529		
		더-3	319	319		
		더-4	160	160		
		더-5	33	33		증1.33
	약 수 터	러	23	23		
	화 장 실	3	426	425		
		3-1	310	310		
		3-2	60	60		
		3-3	20	20		
		3-4	20	20		
		3-5	15	15		
	전 망 대	버	138	138		
		버-1	115	115		
		버-2	23	23		
관리시설	소 계		60	60		
	관리사무소	5				
		6	60	60		
녹지및기타	소 계		296,448.43			감1,312
	녹 지		296,448.43			

◈ 구로구공고 제2025-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구 로 구 청 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 건, ㎡, 백만원)

시설명	사업개요			단계별 집행계획					
	건수	규모	사업비	1단계 (' 25~ '27)		2-1단계 (' 28~ '29)		2-2단계(' 30~)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총 계	46	153,370	94,166	10	23,850	7	67,163	29	3,153
도 로	27	68,013	30,799	7	23,850	4	5,490	16	1,459
공 원	8	27,870	-	-	-	1	-	7	-
공공공지	3	8,466	61,867	-	-	2	61,673	1	194
사회복지시설	2	2,946	1,500	-	-	-	-	2	1,500
공공청사	1	3,286	-	-	-	-	-	1	-
녹 지	2	9,865	-	-	-	-	-	2	-
광 장	1	5,370	-	1	-	-	-	-	-
문화시설	1	2,525	-	1	-	-	-	-	-
체육시설	1	25,029	-	1	-	-	-	-	-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붙임 참조

다. 관계도면: 생략

라.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860-22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25	'26	'27	'28	'29	'30년이후	
		총 계	46건			153,370	94,166	700	84,466	-	84,466	9,000	7,750	10,410	5,690	67,163	-	3,153	
		도로 소계	27건			68,013	30,799	700	21,099	-	21,099	9,000	7,750	10,410	5,690	5,490	-	1,459	
		도로 1단계	7건			8,161	23,850	700	14,150	-	14,150	9,000	7,750	10,410	5,690	-	-	-	
1	도로	고척동 76-321 ~ 고척동 76-232	'24~	8	85	680	4,750		4,750		4,750		4,750						2041.01.08 (2021.02.25)
2	도로	오류동 36-8 ~ 오류동 6-2	'25~	6	90	540	5,760		-			5,760		2,730	3,030				2041.04.23
3	도로	오류동 25-41 ~ 오류동 38-29	'25~	6	50	300	3,240		-			3,240		1,470	1,770				2041.04.23
4	도로	개봉동 73-7 ~ 개봉동 70-92	'24~	10	210	2,100	4,900		4,900		4,900		1,000	3,010	890				2020.07.01 (2017.12.20)
5	도로	항동 12-29 ~ 항동 222	'24~	12	75	900	5,200	700	4,500		4,500		2,000	3,200					2043.12.14. (2024.05.02.)
6	도로	오류동 115-9 ~ 오류동114	'27~	12	293	3,516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28.05.30
7	도로	남부순환로 ~ 신구로유수지	'26~	2.5	50	125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44.07.19
		도로 2단계	20건			59,852	6,949	-	6,949	-	6,949	-	-	-	-	5,490	-	1,459	
8	도로	온수동 44-6 ~ 온수동 109-17	'27~	12	311	3,732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28.05.30.
9	도로	온수동 59-18 ~ 온수동 118-10	'27~	12	86	1,410	5,490		5,490		5,490					5,490			2028.05.30.
10	도로	천왕동 10-43 ~ 천왕동 6-1	'29~	6~8	288	1,838	1,391		1,391		1,391							1,391	2031.12.05.
11	도로	천왕동 6-5 ~ 천왕동 7-7	'29~	4	21	84	68		68		68							68	2031.12.05.
12	도로	고척동 318-14 ~ 고척동 271-71	'29~	12	95	1,140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0.05.14.
13	도로	개봉동 463 ~ 개봉동 466	'29~	8	70	560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0.05.14.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25	'26	'27	'28	'29	'30년이후	
14	도로	고척동 164-133 ~ 고척동 316	'29~	8	95	760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0.05.14.
15	도로	고척동 268-1 ~ 개봉동 153-55	'29~	20	655	13,100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0.05.14.
16	도로	고척동 60-14 ~ 고척동 57-7	'29~	10	349	3,490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6.11.11.
17	도로	구로동 448-118 ~ 구로동 424-13	'27~	8	133	1,064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6.04.01.
18	도로	구로동 65 ~ 구로동 440	'27~	8	27	216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6.04.01.
19	도로	신도림동 419 ~ 신도림동 281-132	'28~	35	301	10,535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20	도로	신도림동416-40 ~ 신도림동394-1	'28~	23	39	897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21	도로	신도림동 287-7 ~ 신도림동276-57	'28~	12	680	8,160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22	도로	신도림동396-22 ~ 신도림동296-90	'28~	12	431	5,172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23	도로	신도림동396-277~신도림동286-3	'28~	10	241	2,410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24	도로	신도림동397-24~ 신도림동396-248	'28~	10	110	1,100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25	도로	신도림동299-3~ 신도림동271-8	'28~	10	236	2,360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26	도로	신도림동 300-1 ~ 신도림동 324-4	'28~	8	68	544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27	도로	신도림동 643-1 ~ 신도림동 643-1	'28~	8	160	1,280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공원 소계	8건			27,870	-	-	-	-	-	-	-	-	-	-	-	-	
28	근린공원	고척동 266-1 일대	'28~			996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0.05.14.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25	'26	'27	'28	'29	'30년이후	
29	근린공원	고척동 316-17 일대	'28~			17,464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0.05.14.
30	소공원	고척동 57-65 일대	'28~			852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6.11.11.
31	소공원	구로동 440번지 일대	'27~			1,651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6.04.01.
32	문화공원	오류동 156-15	'28~			1,561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5.07.31.
33	소공원	신도림동 396-4 일대	'28~			2,595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34	소공원	신도림동 416-13 일대	'28~			1,667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35	소공원	신도림동 300-5 일대	'28~			1,1084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공공공지 소계	3건			8,466	61,867	-	61,867	-	61,867	-	-	-	-	61,673	-	194	
36	공공공지	오류동 331-25 일원	'28~			6,892	48,536		48,536		48,536					48,536			2028.05.30.
37	공공공지	오류동 326-13 일원	'28~			1,487	13,137		13,137		13,137					13,137			2028.05.30.
38	공공공지	천왕동 6-1번지	'28~			87	194		194		194							194	2034.12.05.
		사회복지시설 소계	2건			2,946	1,500	-	1,500	-	1,500	-	-	-	-	-	-	1,500	
39	사회복지시설	천왕동 6-7 일대	'28~			696	1,500		1,500		1,500							1,500	2034.12.05.
40	사회복지시설	신도림동 396-40 일대	'28~			2,250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공공청사 소계	1건			3,286	-	-	-	-	-	-	-	-	-	-	-	-	
41	공공청사	개봉동 465-9 일대	'28~			3,286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0.05.14.
		녹지 소계	2건			9,865	-	-	-	-	-	-	-	-	-	-	-	-	
42	연결녹지	신도림동 293-4 일대	'28~			3,635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연번	시설 구분	사업명(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실효시기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25	'26	'27	'28	'29	'30년이후	
43	연결녹지	신도림동 285 일대	'28~			6,230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32.10.26.
		광장 소계	1건			5,370	-	-	-	-	-	-	-	-	-	-	-	-	
44	교통광장	온수동 51-8	'27~			5,370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28.05.30.
		문화시설 소계	1건			2,525	-	-	-	-	-	-	-	-	-	-	-	-	
45	문화시설	구로동 689-7	'26~			2,525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44.07.19.
		체육시설 소계	1건			25,029	-	-	-	-	-	-	-	-	-	-	-	-	
46	체육시설	구로동 689-7	'26~			25,029	비재정		-			비재정		비재정					2044.07.19.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0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식회사 감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30	수상 1,471㎡ (간접 1,621㎡)	유선장 (아리랑하우스)	2025. 1. 1. ~ 2025. 3. 31.	2024. 12. 24.
			둔치 34.3㎡	상·하수도 관로	2025. 1. 1. ~ 2025. 12. 31.	
			유선 13척 (동력 3, 무동력 10)	유선사업 운영	2025. 1. 1. ~ 2025. 12. 31.	
			유선 38척	동절기 비운항 선박 계류	2025. 1. 1. ~ 2025. 12. 3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식회사 감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24	수상 1,471.88㎡ (간접 732.88㎡)	감지원 본선 (서운호) 점용	2024. 12. 23. ~ 2025. 3. 31.	2024. 12. 23.
			한강호, 한수25호	공사용 선박(2척) 운항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내 한강 (월드컵대교)	7.0㎡ - 고무보트 1척	드론활용 교량시설물 외관조사 용역중 고무보트사용	' 24. 12. 27. ~ ' 24. 12. 31.	' 24. 12. 2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0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광장티엔비	서울시 강동구 선사로 6길 **(*층)	서울시계내 한강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678번지상 한강)	(선박11척) 3,185㎡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25. 01. 01. ~ '25. 03. 31.	'24. 12. 26.
		서울시계내 한강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57 한강)	(선박13척) 3,72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버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1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441 일대(마곡)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205-8(망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여의도)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80-1(잠원) -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86(옥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126-1(뚝섬)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잠실)	6,000㎡ (각 1,000㎡)	한강버스 선착장 건축공사를 위한 자재 적치	2024.12.2. ~ 2025.3.31.	2024. 12.2.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동부수도사업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04-5	8㎡	상수도 맨홀 보수 공사	2024.11.12. ~ 2024.12.13. 중 1일	2024. 12.2.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도시기반시설 본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294-6,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12-6외1,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32-5외1	32,646㎡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상황실, 자재야적장, 양화선착장)	2025.1.1. ~ 2025.12.31.	2024. 12.1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 115	한강철교 북단 하부 (이촌동)	15.37㎡	한강철교 정밀안전점검 등 구조물 점검 용역 중 고소점검차 임시점용	2024.12.9. ~ 2024.12.13.	2024.12.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0-9	1,816㎡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목적 업무용 가설 사무실	2025.1.1. ~ 2025.12.31.	2024. 12.18.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29	26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623번지	408.96㎡	성수2호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작업	2024.12.10. ~ 2024.12.20. 중 4일 (주말제외)	2024. 12.1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광진구청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117 광진구청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27-6, 627-6, 627-8 자양고자차도	405㎡	자양고가차도 하부공간 보도블록 자재 창고	2025. 1.1. ~ 2025. 12.31.	2024. 12. 1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식회사 감지원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223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64-2 (행주대교 남단 강서야적장)	1,000㎡	㈜ 감지원 주변 준설공사를 위한 준설토 야적 목적	2024.12.16. ~ 2025.1.31.	2024. 12.1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식회사 더스텔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05길48 5층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4-20	2,502㎡	뚝섬 유선장 대체건조	2025.1.1. ~ 2025.12.31.	2024. 12.2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영등포구청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성수하늘 다리 하부 보행로 일부 (영등포구 양화동 1-4)	54㎡	해맞이객 인파 밀집 방지 안전관리 종합상황실 및 구급차 배치	2024.12.31. ~ 2025.1.1.	2024. 12.2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해양소년단 서울연맹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5, 6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35 (양화한강공원 내)	수상 366.5㎡	수상훈련장	2025. 1. 1. ~ 2025. 12. 31.	2024. 12. 27.
			수상 412.5㎡	일반 조종면허시험장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식회사 감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24번지	둔치 97.69㎡	대체건조 공사 (도교부설치)를 위한 점용	2024. 12. 28. ~ 2025. 3. 31.	2024. 12. 2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4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 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레버리클럽서울 (대표 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길 **-**, *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 일대 (여의도 한강공원내)	수상(15,000㎡), 둔치(7,374㎡)	유선 및 수상레저사업, 마리나업	2025.1.1.~ 2025.3.31.	2024.12.27.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7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2-116, 482-225번지
  - 면 적 : 300.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열수송관 매설
  - 내 역 : 열배관(600A×2열)

5. 점용기간 : (당초) 2020.03.02. ~ 2024.12.31.
(변경) 2025.01.01. ~ 2029.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7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아리수본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16번지 일원
   - 면 적 : 126,255.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취수(풍납취수장)
   - 내 역 : 침사지(16m×55.6m), 도수관로(D2400mm),
     펌프시설(1300HP×5대, 650HP×1대)

5. 점용기간 : 2024.12.30. ~ 2029.12.29.
   ※ 하천수사용허가증(한강 제37-2호)을 받아 사용중이던 시설물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 호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 · 대상 · 지역 등 변경 고시안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라 한강본류에서의 유어행위 제한 시기 · 대상 · 지역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1.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 대상 등 제한사항
 가.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 : 2025. 1. . ~ 2029. 12. 31
 나. 유어행위 제한대상
  1)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
  2) 자망어업, 투망어업, 연승어업, 정치망어업
  3)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 낚시전용공간에서 낚시행위 제외)
  4) 떡밥 ·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5) 훌치기 낚시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6) 은어 등「내수면어업법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7)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8)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9)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

2.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지역
 나. 위 치
  1)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2)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교량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도로 옆 보행인통행로 포함)
 다. 유어행위 금지 지역 : 다음의 좌표값에 해당하는 지역

구 분	연번	구 역	경위도 좌표 (도/분/초)			비 고
			구분	위도	경도	
뚝 섬 1지역	1	자양2동 잠실수중보 ~ 청담대교 상류 67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1′ 38″	127° 05′ 20″	
			종점	37° 31′ 36″	127° 04′ 38″	
뚝 섬 2지역	2	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m ~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1′ 40″	127° 04′ 31″	구간 연장
			종점	37° 32′ 06″	127° 03′ 08″	

구 분	연번	구 역	경위도 좌표 (도/분/초)			비 고
			구분	위도	경도	
뚝 섬 3지역	3	서울숲 회전 고가시설 ~ 중랑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2′ 29″	127° 01′ 48″	
			종점	37° 32′ 40″	127° 01′ 53″	
이 촌 1지역	4	중랑천 합류부 ~ 동호대교 북단 하류 3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2′ 23″	127° 01′ 08″	구간 연장
			종점	37° 32′ 16″	127° 00′ 59″	
이 촌 2지역	5	동호대교 북단 하류 800m ~ 한남대교 북단 상류 380m사이의 전망데크	시점	37° 31′ 57″	127° 00′ 47″	
			종점	37° 32′ 01″	127° 00′ 48″	
이 촌 3지역	6	노들섬 전체, 한강대교 북단 상류 900m (거북선선착장) ~ 한강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1′ 14″	126° 57′ 39″	
			종점	37° 31′ 01″	126° 58′ 11″	
밤 섬 지 역	7	밤섬 전체 및 마포대교 북단 상류 650m ~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2′ 34″	126° 54′ 57″	
			종점	37° 37′ 01″	126° 56′ 51″	
망 원 1지역	8	양화대교 북단 교량 ~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하류 5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2′ 58″	126° 54′ 09″	
			종점	37° 32′ 47″	126° 54′ 26″	
망 원 2지역	9	성산대교 북단 상류 600m 교량 ~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3′ 08″	126° 53′ 54″	구간 연장
			종점	37° 33′ 21″	126° 53′ 37″	
망 원 3지역	10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 ~ 당산철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2′ 33″	126° 54′ 57″	신규
			종점	37° 32′ 38″	126° 54′ 38″	
난 지 1지역	11	홍제천교 ~ 성산대교 북단 하류 1,300m (조종면허시험장 하류 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3′ 48″	126° 52′ 55″	
			종점	37° 33′ 33″	126° 53′ 32″	
난 지 2지역	12	가양대교 북단 상류 800m (난지캠핑장 끝 호안 하류 측) ~ 가양대교 북단 하류4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생태습지원 연접한 내수면 포함)	시점	37° 34′ 32″	126° 51′ 43″	
			종점	37° 34′ 12″	126° 52′ 13″	

구 분	연번	구 역	경위도 좌표			비 고
			구분	위도	경도	
난 지 3지역	13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 ~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9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3′ 49″	126° 52′ 48″	신규
			종점	37° 33′ 51″	126° 52′ 42″	
잠 실 지 역	14	잠실5동 잠실수중보 ~ 잠실수중보 하류 1,3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1′ 14″	127° 05′ 38″	구간 연장
			종점	37° 31′ 05″	127° 04′ 49″	
잠 원 지 역	15	동호대교 남단 하류 300m(리버시티) ~ 한남대교 남단 하류 1,000m(요트 클럽 하류1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1′ 05″	127° 00′ 26″	
			종점	37° 31′ 49″	127° 01′ 18″	
반 포 1지역	16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상류 200m (전망데크)~하류 500m(임시선착장)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0′ 47″	127° 00′ 04″	
			종점	37° 30′ 33″	126° 59′ 36″	
반포 2지역	17	동작대교 남단 상류 450m(서래섬 하류 100m) ~ 동작대 교 남단 하류 28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0′ 24″	126° 59′ 08″	
			종점	37° 30′ 20″	126° 58′ 40″	
흑 석 지 역	18	한강대교 남단 상류 1,360m(한강현대아파트 114동 앞)~ 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0′ 25″	126° 58′ 17″	구간 연장
			종점	37° 30′ 55″	126° 57′ 11″	
여의도 1지역	19	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 ~ 서강대교 남단 하류 370m 사이의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1′ 12″	126° 56′ 38″	구간 연장
			종점	37° 32′ 03″	126° 55′ 07″	
여의도 2지역	20	여의도동 샛강 내수면 전역(상.하류 합류부 및 연접한 내 수면 포함)	시점	37° 31′ 11″	126° 56′ 41″	
			종점	37° 32′ 04″	126° 54′ 37″	
양 화 1지역	21	당산철교 남단 상류 370m(여의도 샛강 하류 합류부)~당 산철교 남단 60m(해양소년단 수상훈련장)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2′ 06″	126° 54′ 34″	
			종점	37° 32′ 17″	126° 54′ 16″	
양 화 2지역	22	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600m ~ 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사이의 한 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3′ 12″	126° 52′ 45″	구간 연장
			종점	37° 32′ 41″	126° 53′ 37″	
양화3· 강서1 지역	23	염창동 안양천 합류부 하류 150m~ 마곡철교 남단 하류 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3′ 20″	126° 52′ 28″	
			종점	37° 34′ 46″	126° 49′ 59″	
강 서 2지역	24	방화대교 남단 하류 50m~ 행주대교 남단 상류400m 사 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시점	37° 35′ 27″	126° 48′ 29″	
			종점	37° 35′ 06″	126° 49′ 12″	

라. 유어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1)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 복원행위

2)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생태계의 보전. 복원행위, 조수보호 및 수렵 관련 법률에 의한 서식지 조사 등은 제외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가.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별 부과기준

연번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단위:원)		
		1차	2차	3차
1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자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위반자)	500,000	700,000	1,000,000
2	은어포획, 낚시대 4대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위반자)	500,000	700,000	1,000,000
3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하천법」 제46조 위반자)	1,000,000	2,000,000	3,000,000
4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 명령 위반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 위반자)	1,000,000	1,000,000	1,000,000

나. 근거규정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제27조제2항제1호
-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제2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 및 제55조제2항제1호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4.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나. 기 타

- 유어행위의 시기. 대상. 지역 등 제한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외 문의사항이있으시면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 02-3780-0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1. 규제사무명</td><td>한강본류 내수면 유어 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 고시</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td><td></td><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운영부장 김세정, 환경수질과장 권형택, 담당 정명준</td></tr>
<tr><td>4. 근거법령명등</td><td colspan="5">· 내수면어업법 제18조
· 하천법 제46조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td><td colspan="2">관 련 규제수</td><td colspan="2">2</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 피규제집단 : 낚시행위자
· 이해관계자 : 한강 이용 시민</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 고시일 ~ 2029.12.31
※ 2029.12.31 이후 금지구역 재조정</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제한 시기 조정
– 변경전 : 2020. 1. 1 ~ 2024. 12. 31
– 변경후 : 고시일 ~ 2029. 12. 31
·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금지구역 확대
– 조정내역 : 낚시금지구역 구간 연장 및 신규 지정</td></tr>
</table>

연번	구분	구역	
		변경전	변경후
1	뚝섬 2지역	청담대교 북단 교량 ~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m ~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2	이촌 1지역	중랑천 합류부 ~ 동호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중랑천 합류부 ~ 동호대교 북단 하류 3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3	망원 2지역	망원동 성산대교 북단 교량 ~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성산대교 북단 상류 600m ~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4	잠실 지역	잠실5동 잠실수중보 ~ 잠실수중보 하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잠실5동 잠실수중보 ~ 잠실수중보 하류 1,3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5	흑석 지역	한강대교 남단 상류 760m(원불교 회관 앞) ~ 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한강대교 남단 상류 1,360m(한강현대아파트 114동 앞) ~ 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6	여의도 1지역	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 ~ 서강대교 남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 ~ 서강대교 남단 하류 37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7	양화 2지역	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550m(양화선착장) ~ 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600m ~ 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8	망원 3지역	신규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 ~ 당산철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9	난지 3지역	신규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 ~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9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한강버스 선착장 조성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규제사항으로, 서울시민의 보행권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한강본류 낚시금지 구역에 대한 지정이 필요함.

○ 다수 시민 이용시설인 수상시설물(유선상의 카페,편의점,오리배시설물 등) 분포지역 인근 낚싯대 설치 및 미끼 투척등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함.

○ 보행로 인접 낚시구역으로 시민과 마찰, 위험제기 민원 다수발생구역, 호안 급경사 등의 위험지역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한강 낚시 이용시민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관부서 및 단체, 한강시민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안)을 마련하였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대체수단 및 기존 규제수단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유어행위 금지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에게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 일반 시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산책로확보를 위한 규제사항으로, 서울시민의 보행권 확보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상시설물(유선상의 카페, 편의점 등) 인근 낚시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제사항으로, 수상시설물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강 낚시위험지역에서의 낚시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사항으로, 낚시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최소 50만원의 과태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강 이용시민의 보행 안전과 낚시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 · 절차의 명확성 등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제한을 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유어행위 제한)에 의하면 시장은 한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와 한강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로,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금지구역을 정하는 경우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하천법 제46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등에 따르면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낚시통제구역 등에 대해 규제할 수 있음.

○ 또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기한 내에서 시행할 예정임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기존 미래한강본부 조직·인력을 통해 대체 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금지행위의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민원을 처리할 예정임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7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에스케이텔레콤(주)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5길1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초)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78 외 14필지
(변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78 외 20필지
- 면 적 : (당초) 50.8㎡ (변경) 75.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이동통신용 통신주 설치
- 내 역 : 이동통신용 지주 13EA, 가림막휀스 36경간, EPL관매설 735.2m
※ 서울 제1575-2호, 제1575-3호, 제1576호, 제1577호, 제1578호, 제1579호, 제1580호, 제1610호, 제1611호를 서울 제1580-2호로 통합 연장하여 관리하고자 함

5. 점용기간 : 2024.09.30. ~ 2029.09.29.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